

월간  
**재정포럼** 3월호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 2010년 3월호 제165호

- 현안분석** • 우리나라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탈루율 추이 분석 / 박명호
-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분석/ 고 선
  - 주택시장과 경제위기: 주택금융과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 노영훈

**해외동향** • 불법취득 정보의 구매와 탈세자 처벌

**정책토론티포트** • 이명박 정부 2년의 조세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 외

CONTENTS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b>권두칼럼</b>	02 국가부채 논란, 규모보다 관리능력이 관건 · 추창근
<b>현안분석</b>	06 우리나라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탈루율 추이 분석 · 박명호 26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분석 · 고 선 45 주택시장과 경제위기: 주택금융과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 노영훈
<b>해외동향</b>	62 불법취득 정보의 구매와 탈세자 처벌 · 김유찬
<b>정책토론티포트</b>	74 이명박 정부 2년의 조세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 87 공공기관 선진화 우수사례 워크숍
<b>공공정책포럼</b>	101 국가고용전략과 공공기관의 역할
<b>주요국 조세동향</b>	107 미국의 2011년 예산안
<b>정책흐름</b>	119 2010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123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추진 125 2010년 1월 산업활동동향 요약 129 성실납세하면 혜택도 많습니다 134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136 2010년 법인세 성실신고를 도와드립니다
<b>재정통계</b>	149 지방세 세목별 부과 및 징수
<b>이슈 &amp; 포커스</b>	157 고용친화적 세제개편 절실 외



## 국가부채 논란, 규모보다 관리능력이 관건



추창근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

우리나라 국가부채를 둘러싼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숨겨진 나랏빚이 많은 데 공식 통계에는 잡히지 않아 그 위험성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 반면, 국제기준에 비춰 별로 걱정할 만큼 부채규모가 크지 않은데도 지나치게 부풀려 국제사회나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위기감만 조장하고 있다는 반론도 많다. 이른바 PIIGS(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로 불리는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불거지자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과연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인가에 대한 의문 제기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우리의 공식적인 국가부채 규모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확정채무를 합한 것으로 지난해 366조원에 GDP(국내총생산)의 35.6%, 올해는 407조 2천 억원으로 늘어나 GDP의 36.1%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주요 선진국과 최근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그리스나 이탈리아 등에 비해 양호한 편이고,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정도도 아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GDP 대비 평균 부채비율은 75% 정도이고, 그리스는 112.6%, 이탈리아는 114.6%에 이른다.

### 국가부채 논란, 핵심은 공기업 부채

그런데도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자꾸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름아닌 공기업이 안고 있는 빚 때문이다. 현재 377조원에 이르는 297개 공공기관 부채까지 국가채무로 계산하면 모두 700조원을 넘는다. GDP에 대한 부채비율이 단번에 2배 이상으로 높아져 OECD 회원국 평균치 75%와 거의 다를 바 없어지고, 나라살림의 건전성에 충분히 의구심이 생겨날 만한 수치다. 여기에 정부 보증채무와 4대 공적연금의 책임준비금 부족액까지 합친 넓은 의미에서의 '사실상 국가부채'가 이미 1,300조원에 육박해 GDP의 126.6%에 이른다는 일부의 주장도 없지 않다.

결국 논란의 핵심은 공기업 부채인 것이다. 국제적으로 국가채무 산정기준

은 다양하다. IMF(국제통화기금)에서는 GFSM(정부회계계정) 기준을 사용하는데 2001년에 변경됐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다. 정부의 공식 통계는 바뀌기 이전의 IMF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선진국과 같은 발생주의가 아닌 현금주의 방식으로 계산하고 있다. 공기업 채무가 국가부채 계산에서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2012년부터 국가채무 통계방식을 IMF가 제시한 발생주의의 새 기준으로 전면 개편하고 공기업 부채도 적극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 경우 중앙 및 지방정부 외에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상당수 공기업이 채무 산정대상에 포함돼 부채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옳은 방향이다. 물론 국가부채 산정에 공기업의 부채를 모두 합산하는 것은 무리이고 다른 선진국들도 그런 식으로 계산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그동안 실제 나라가 책임지는 정부보증채무나 준정부기관 채무 등까지 제외됨으로써 부채규모 자체가 과소계상되는 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이로 인한 착시(錯視)효과가 나라의 채무관리를 등한하게 만드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해 왔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 잠재적 국가채무에 대한 경각심 가져야

무엇보다 마땅히 국가부채로 간주해야 할 공기업 채무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그렇다. 총수입에서 자체적인 영리사업에 따른 수입의 비중이 큰 시장형 공기업이라면 당연히 국가채무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지만, 비영리사업을 하는 공기업의 부채라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도로·항만·사회간접자본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공기업이 정부를 대신해 떠맡는 경우, 예를 들어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맡긴 수자원공사를 비롯해 주택토지공사 등이 대규모 국책사업을 진행하면서 급증하고 있는 부채는 이들이 감지 못하게 되면 결국 정부가 감당해야 할,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빚이다.

게다가 지난 2002년 133조 6천억원, GDP 대비 18.5%에 불과했던 국가채무가 2007년 298조원(GDP의 30.7%), 올해 407조원 이상으로 규모가 몇년 사이 3배나 늘어나는 등 그 증가속도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것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지난 2년 동안 재정확대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감안해도 그렇다. 나랏빚의 급증은 단기적으로 국가신용도를 떨어뜨려 외환위기의 빌미가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누적될 경우 경제성장 둔화와 재정파탄의 위험성까지 키우게 될 수밖에 없다.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식 통계든, 비공식 통계든 명목상의 국가부채가 어느 정도인가가 아니라 그 빚을 우리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이다.  
 .....

.....  
 선제적 국가부채 관리가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국가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제운용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재정위기의 가능성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식 통계든, 비공식 통계든 명목상의 국가부채가 어느 정도인가가 아니라 그 빚을 우리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냐의 문제이다. 지금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잠재적 국가부채에 어느 때보다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안될 이유다.

국가부채는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보다 지출을 더 많이 한 결과로서의 재정 적자다. 이 적자가 한번 늘어나기 시작하면 여간해서 줄이기 힘들다. 재정지출의 수요는 늘어나기만 하지 줄지는 않는 관성(慣性)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두거나 빚을 내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세금을 늘리기 어려우니 불가피하게 부채를 키우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국가부채가 늘어날 요인이 너무 많다. 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함께 고령화·저출산·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정부가 세금 걷는 것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공공·의료복지 등의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돈 쓸 곳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머지 않아 재정위기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선제적 국가부채 관리가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우선 국제기준에 맞는 부채규모의 산정을 말할 것도 없고 공기업 채무, 정부보증 채무,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등 부문별 채무가 얼마인지, 단기채무와 장기채무는 각각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제운용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재정위기의 가능성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중기재정제도 확립, 지출 구조 합리화, 재정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공적연금제도 개편 등의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재정부담을 키우는 공공부문 비대화와 비효율을 확실히 제거하는 것도 필수적인 과제다. 우리 재정건전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서둘러야 할 일이다. 한번 재정이 불안한 나라로 지목되면 건잡을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KIPF**

\* 이 일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 현안분석 |

- 우리나라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탈루율 추이 분석  
박명호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분석  
고 선 · 한국조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
- 주택시장과 경제위기: 주택금융과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노영훈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편집자 주)

# 우리나라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탈루율 추이 분석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ecpmh@kipf.re.kr)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문제가 국세행정의 핵심 과제로 재부각되었다.

## I. 서론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말미암아 세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세출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sup>1)</sup>.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법에 의해 마땅히 국가의 재정수입으로 들어와야 하지만 탈세 등으로 과세망에서 벗어나는 세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탈세로 인한 세수손실에 대한 관심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사건으로 더욱 높아지고 있다.

먼저, 지난 9월 정기 국정감사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07년 기준 27.6%로 OECD 국가 중 3위에 해당한다는 Schneider(2007)의 연구결과가 인용·공개되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특히 탈세로 인한 지하경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한편 국세청은 9월 26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10차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2005년 12월 이후 10차례의 조사 결과, 조사대상자의 소득탈루율이 평균 48%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우나, 단란주점, 여관 등 일부 업종의 소득탈루율은 85%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문제가 국세행정의 핵심 과제로 재부각되었다.

그 동안 우리나라 정부는 현금 거래 등으로 과세망에 포착되지 않는 경제활동을 양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중에서도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제도 활성화 정책은 과표 양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1) 박형수(2009)에 따르면 2009년 우리나라 관리대상 수치 적자규모가 51조원(GDP 대비 5.0%),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35.6%에 달하는 등 국가 재정건전성이 외환위기 직후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표 양성화 정책에 대하여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부정하게 발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sup>2)</sup>. 이는 경제활동으로 인한 과표는 노출되지만 세수는 늘지 않는 현상, 즉, 과표 양성화는 제고되지만 납세순응도는 제고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가계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소득탈루율을 추정하고, 최근 그 비율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소득 축소보고 경향을 파악할 수 있고, 이에 기초하여 현금영수증 등 과표 양성화 정책의 효과도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Ⅱ장에서는 분석에 사용되는 자료 및 분석 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제Ⅲ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 및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 추이를 분석한다. 제Ⅳ장에서는 결과를 요약하며 시사점을 도출한다.

## II. 분석자료와 분석방법

###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자료는 2006~2008년까지의 통계청 가계조사자료이다. 가계조사는 1942년부터 실시된 법정 국가기본 통계조사로서 1963년부터는 매년 통계청이 조사하고 있다. 지난 60여 년간 2인 이상의 도시 비농가 가구만을 조사하던 도시가계조사가 2003년부터 조사대상을 읍면지역 비농가 2인 이상 가구까지 확대되면서 가계조사로 불리고 있다. 그리고 2006년부터는 1인 가구까지 조사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가계조사의 목적은 전국에 거주하는 가구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여 개별 가구의 생활 실태와 변동사항을 파악하는 것이다. 가계조사의 조사방법은 매월 조사개시 전에 조사표인 가계부를 조사대상 가구에 배부하여 가구에서 매일매일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세부적인 금액과 품목명을 직접 기입하는 가계부 기장방식이다. 하지만 표본에 선정된 가구가 매일매일 가계수입과 지출에 관한 세부항목들을 빠짐없이 기록해야 하는 조사상의 어려움으로 2003년도의 경우 가계부 회수율이 월평균 약 80%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sup>3)</sup>.

가계조사의 가구분류 방식은 가구주가 종사하는 직종에 따라 크게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외가구로 분류한다. 그리고 근로자 가구는 사무직[공무원; 공무원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가계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소득탈루율을 추정하고, 최근 그 비율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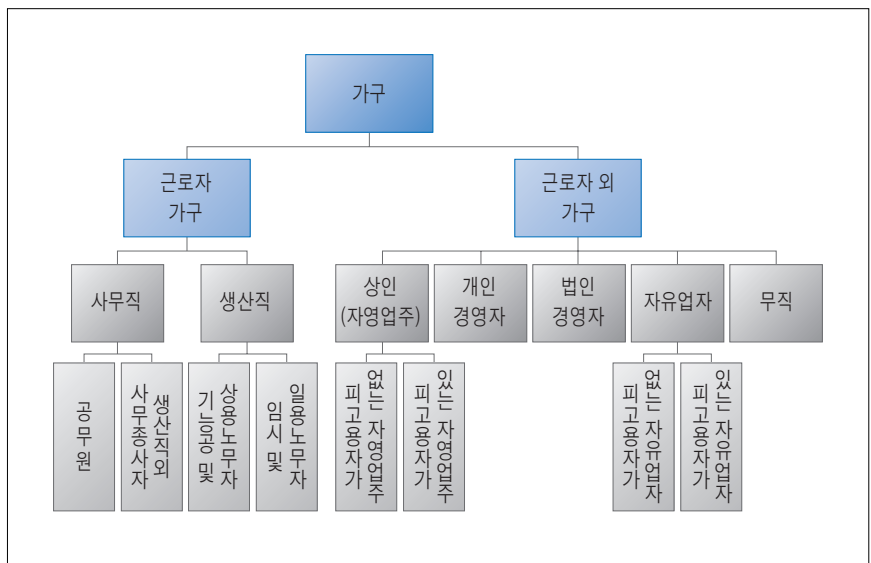
2) 9월 2일자 서울신문 탐사보도 “강남 고급음식점 카드강 성형”에서는 실제 업소의 명의를 카드단말기가 아닌 허위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통해 세금을 탈세하는 현상을 보도하였다(<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902001006&spage=1>).

3) 통계청, 「가계조사개요」.

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자료는 2006~2008년까지의 통계청 가계조사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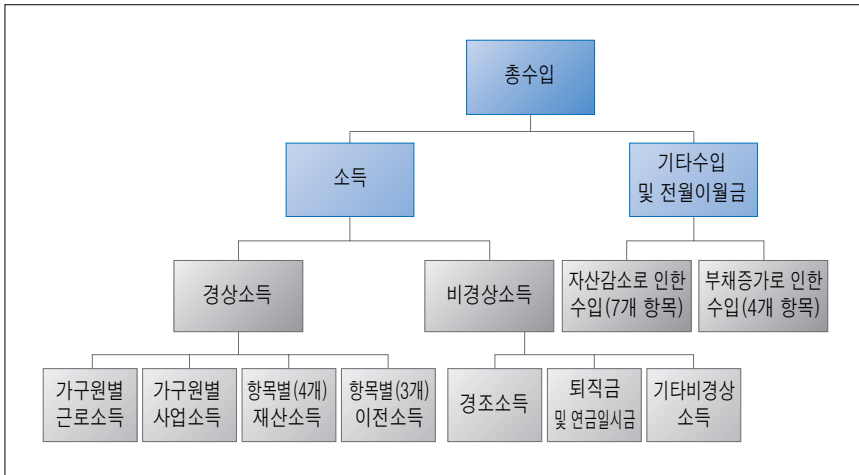
외 사무종사자와 생산직[기능공 및 사용노무자; 임시 및 일용노무자]으로 분류하고 있다. 근로자외가구는 상인(자영업주)[피고용자가 없는 자영업주; 피고용자가 있는 자영업주], 개인경영자, 법인경영자, 자유업자[피고용자가 없는 자유업자; 피고용자가 있는 자유업자], 무직으로 분류하고 있다(그림 II-1 참조).

[그림 II-1] 가구 분류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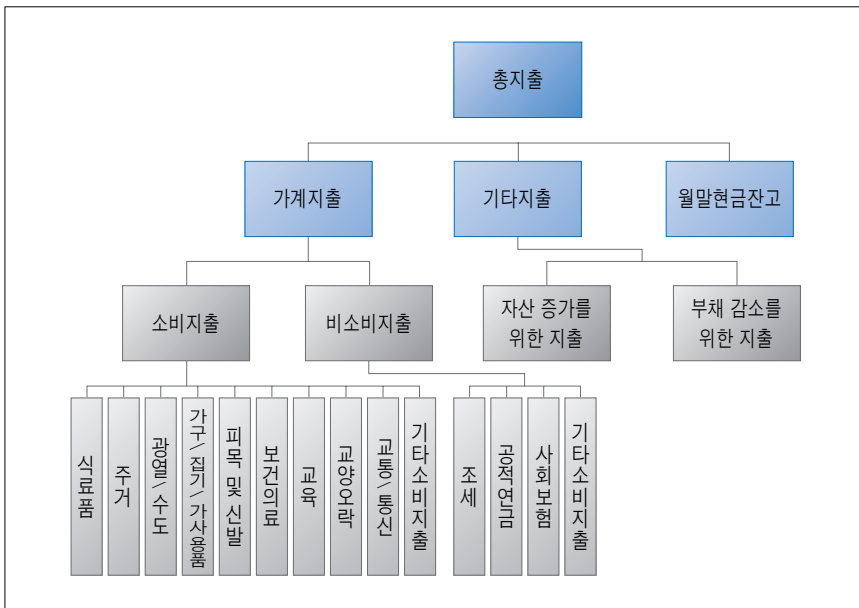
가계조사에서 가계수지가 분류되는 방식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구의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유형 및 항목별·가구 구성원별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서 가구 구성원은 가구주, 배우자, 기타 가구원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수입유형은 크게 소득과 기타 수입 및 전월 이월금으로 구분되며, 소득은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 기타 수입은 자산감소로 인한 수입과 부채증가로 인한 수입으로 구분된다. 경상소득은 다시 가구원별 근로소득, 가구원별 사업소득, 항목별(4개) 재산소득, 항목별(3개) 이전소득으로 분류된다. 비경상소득은 3개의 항목, 자산감소로 인한 수입은 7개의 항목, 부채증가로 인한 수입은 4개의 항목으로 보다 세분류되고 있다(그림 II-2 참조).

[그림 II-2] 가계조사 가구 수입 분류표



통계청의 가계조사자료는 우리나라 가구에 대한 다양한 소득정보와 소비지출정보를 담고 있어서 분석자료로 선택되었다.

[그림 II-3] 가계조사 가구 지출 분류표



가구의 지출에 대해서는 가계지출, 기타 지출, 월말현금잔고로 대분류하고 있고, 가계지출은 다시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로 중분류되며, 소비지출은 식료품, 주거, 광열/수도, 가구/집기/가사용품, 피복 및 신발, 보건의료, 교육, 교양

본 연구에서는 소득과 식료품 지출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을 추정하는 Pissarides and Weber(1989)의 추정 기법을 사용한다.

오락, 교통/통신, 기타 소비지출로 소분류된다. 그리고 개별 소분류 항목들은 다시 많은 세부 구성항목들로 나뉘지고 있다. 한편 비소비지출은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기타 비소비지출로 소분류된다. 개별 소분류 항목들은 다시 여러 가지의 세부 항목들로 분류되고 있다. 기타 지출은 자산증가를 위한 지출과 부채 감소를 위한 지출로 구분된다(그림 II-3] 참조).

##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소득과 식료품 지출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을 추정하는 Pissarides and Weber(1989)의 추정 기법을 사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과 소비에 대한 응답행태의 차이에 주목한 Pissarides and Weber의 기본적인 가정을 따른다.

먼저, 소득에 대한 응답행태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경향에 주목한다.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소득원이 과세관청에 대부분 노출되기 때문에 신고소득과 실제소득의 차이가 거의 없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원이 과세당국에 덜 노출되므로 신고소득이 실제소득보다 작은 경향이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우리나라의 가계조사와 같은 서베이 조사에서 자신들의 소득을 은폐할 뚜렷한 동기가 없기 때문에 서베이 조사에 응답한 소득과 실제소득은 차이가 없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실제소득보다 과세관청에 신고한 소득이 작으므로 과세관청과 전혀 관계없는 기관이 행하는 서베이 조사라 할지라도 실제소득을 드러낼 유인이 없다고 본다. 이는 서베이 조사에서 신상정보를 보호할 것을 약속하였지만 혹시라도 과세관청에 실제소득의 축소신고가 밝혀짐으로써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경우 서베이 조사 시 과세관청에 신고한 소득보다 소득을 높게 응답할 유인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서베이 조사에 응답한 소득은 신고소득과 동일하고 실제소득보다는 작다고 가정한다.

한편 소비지출, 특히 식료품 지출에 대한 응답행태의 경우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 사실대로 정확하게 응답한다고 가정한다. 이는 자영업자가 매주 또는 격주로 가계부식 조사에 기입하면서 탈루한 세금 때문에 사소한 식료품에 대한 지출액을 체계적으로 숨길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소득 및 지출에 대한 응답행태에 대한 가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정 1: 근로자는 소득을 과세관청에 정확하게 신고하기 때문에 서베이 조사에 응답한 소득이 실제소득과 같다. 그러나 자영업자는 과세소득을 축소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서베이 조사에서 응답한 소득은 신고소득과 같으며 실제소득보다는 작다.

가정 2: 식료품 지출의 경우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 정확하게 서베이 조사에 응답한다.

Pissarides and Weber(1989)의 추정기법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 소득 및 식료품 지출에 대한 응답 형태의 차이를 이용한다.

이와 같은 두 가지 가정에 기초하여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소득-지출 관계인 식료품 지출함수를 추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sup>4)</sup>.

가구  $i$ 가 서베이 조사에 응답한 소득수준을  $Y_i'$ , 실제소득을  $Y_i$ , 소비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일종의 항상소득을  $Y_i^p$  라고 정의하자<sup>5)</sup>. 그러면 이 세 가지 소득들 간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Y_i = k_i Y_i', k_i \geq 1, \tag{1}$$

$$Y_i = p_i Y_i^p \tag{2}$$

여기서  $k_i$ 는 응답한 소득수준과 실제소득의 관계를 나타내는 확률변수이다. 따라서 근로자 가구의 경우 응답한 소득수준과 실제소득이 같다고 가정하였으므로 1이 된다. 그러나 자영업자 가구의 경우 응답한 소득이 실제소득보다 작다고 가정하였기에 1보다 큰 수를 갖는다. 한편  $p_i$ 는 항상소득과 실제소득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확률변수이다. 이와 같은  $k_i$ 와  $p_i$ 는 각각 로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ln k_i$ 와  $\ln p_i$ 의 평균을 각각  $\mu_k$ ,  $\mu_p$  라고 하면  $\ln k_i$ 와  $\ln p_i$ 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ln k_i = \mu_k + v_i \sim N(\mu_k, \sigma_v^2), \tag{3}$$

$$\ln p_i = \mu_p + u_i \sim N(\mu_p, \sigma_u^2). \tag{4}$$

여기서  $v_i$ 와  $u_i$ 는 각각 평균이 0이고 분산은  $\sigma_v^2$ ,  $\sigma_u^2$ 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를 나타낸다.  $k_i$ 와  $p_i$ 의 평균을 각각  $\bar{k}$ ,  $\bar{p}$ 라고 한다면,  $\ln \bar{k}$ 와  $\ln \bar{p}$ 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4) 이하에서는 Pissarides and Weber(1989)의 추정방법을 정리·소개한다.

5) Pissarides and Weber(1989)에서는  $Y^p$ 를 소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식료품 지출의 경우, 이러한 "소득"은 실제 소득보다 변동 폭 즉, 분산이 작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항상소득"으로 부르고 있다.

동 분석에서는, 과세소득을 축소하여 신고할 수 있는 자영업자는 소득을 축소하여 설문에 응답하고, 실제소득이 노출되는 근로자는 설문응답시 실제소득을 제공한다고 가정한다.

$$\ln \bar{k} = \mu_k + \frac{1}{2} \sigma_v^2, \tag{5}$$

$$\ln \bar{p} = \mu_p + \frac{1}{2} \sigma_u^2 \tag{6}$$

이때 가정 1에 의거하여 근로자 가구의 경우  $\mu_k = 0$ 이고  $\sigma_v^2 = 0$ 이지만 자영업자 가구는  $\mu_k > 0$ 이고  $\sigma_v^2 > 0$ 이 된다. 그리고  $p_i$ 의 평균인  $\bar{p}$ 는 근로자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 간에 동일하지만  $\sigma_v^2$ 는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이 더 심한 변동을 겪는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자영업자 가구의  $\sigma_v^2$ 가 더 크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식 (6)에 의하면 자영업자 가구의  $\mu_p$ 는 근로자 가구의  $\mu_p$ 보다 작게 된다.

한편 가구  $i$ 가  $j$ 재에 대한 지출에 대하여 서베이 조사에 응답한 소비수준을  $C_{ij}$ 라고 한다면 이와 연계된 지출함수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ln C_{ij} = Z_i \alpha_j + \beta_j \ln Y_i^P + \epsilon_{ij} \tag{7}$$

여기서  $Z_i$ 는 가구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의 벡터이며,  $\beta_j$ 는  $j$ 재의 소득에 대한 지출 탄력성을 나타낸다. 그리고  $\epsilon_{ij}$ 는 백색잡음과정(white noise)을 따르는 오차항이다.

식 (7)에 식 (1)~(4)에서 기술된 실제소득, 응답소득, 항상소득 간의 관계<sup>6)</sup>를 반영하면 지출함수식 (7)은 다음과 같이 다시 쓸 수 있다.

$$\ln C_{ij} = Z_i \alpha_j + \beta_j \ln Y_i^r - \beta_j (\mu_p - \mu_k) - \beta_j (u_i - v_i) + \epsilon_{ij} \tag{8}$$

이때  $j$ 재를 식료품으로 정의하고, 식료품 지출과 연계된 식 (8)을 추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표기된 회귀방정식을 실제로 추정한다.

$$\ln C_{ij} = Z_i \alpha_j + \beta_j \ln Y_i^r + \gamma_j SE_i + \eta_i \tag{9}$$

이 식에서  $SE$ 는  $i$ 가구가 자영업자 가구일 경우에는 1, 근로자 가구일 경우에는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를 의미한다. 자영업자 가구와 근로자 가구의 분산이 다르기 때문에  $\epsilon_{ij}$ ,  $u_i$ ,  $v_i$ 로 구성된 오차항  $\eta_i$ 는 정의상 이분산성을 갖는다.

한편 조사에 응답한 소득  $Y_i^r$ 은 식료품 지출과 내생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도구변수들(instrumental variables)을 사용하여 다음의 같이 표기된

6) 식 (1)~(2)에 따르면, 로그-항상소득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ln Y_i^P = \ln Y_i^r + \ln k_i - \ln p_i$  위의 식에 식 (3)~(4)를 대입한 결과를 식 (7)에 대입하면 식 (8)이 된다.

축약형 회귀식(reduced-form regression)으로부터 추정된다.

$$\ln Y_i' = Z_i \delta_1 + X_i \delta_2 + \zeta_i \tag{10}$$

여기서  $X_i$ 는 도구변수이고 오차항  $\zeta_i$ 는 항상소득의 오차,  $u_i$  및  $v_i$  등 3가지 확률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식 (10)을 추정하여 얻은  $Y_i'$ 의 추정치를 식료품 지출함수 식 (9)를 추정할 때 사용하여 2단계 추정방식(2SLS)을 사용한다. 또한 소득 및 소비에 있어서 자영업자 가구와 근로자 가구 간의 분산이 다르다는 전제하에 식 (9)와 식 (10)을 2단계 추정방식(2SLS)으로 추정할 때 이분산성(heteroscedasticity)을 고려한다.

한편 자영업자 가구와 근로자 가구의 가구 특성( $Z_i$ )과 조사에 응답한 소득수준( $Y_i'$ )이 동일하다는 조건하에서 두 종류(자영업자 대 근로자)의 가구 간의 식료품 지출 추정치의 차이는 식 (9)에 따르면 상수항의 변동을 나타내는  $\gamma$ 가 된다. 이에 반하여 식 (8)에서는 가구 특성( $Z_i$ )과 조사에 응답한 소득수준( $Y_i'$ )이 동일한 자영업자 가구와 근로자 가구 간의 식료품 소비 추정치의 차이가  $-\beta_j$  ( $\mu_p - \mu_k$ )항에 반영된다. 즉, 자영업자 가구와 근로자 가구 간의 소득에 대한 응답태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mu_k$ 의 차이와 자영업자 가구가 더 큰 소득 불확실성을 가졌다는 사실과 연계된  $\mu_p$ 의 차이의 합<sup>7)</sup>에 소득으로부터의 한계소비성향을 곱한 것이 된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gamma_j &= [-\beta_j(\mu_{pSE} - \mu_{kSE})] - [-\beta_j(\mu_{pEE} - \mu_{kEE})] \tag{11} \\ &= \beta_j[\mu_{kSE} - (\mu_{pSE} - \mu_{pEE})] \\ &= \beta_j\left[\mu_{kSE} + \frac{1}{2}(\sigma_{uSE}^2 - \sigma_{uEE}^2)\right] \end{aligned}$$

이때 하첨자 SE와 EE는 각각 자영업자 가구와 근로자 가구를 나타내는 기호이다. 식 (11)의 두 번째 등호는 가정 1에 의해  $\mu_{kEE} = 0$ 이라는 사실을 이용한 것이고, 세 번째 등호는 식 (6)과  $\bar{p}$ 가 자영업자 가구와 근로자 가구에 동일하다는 가정에 의거한다.

한편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적인 과소 소득신고율의 크기를 나타내는  $\bar{k}$ 는 식 (5)와 식 (11)을 결합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추정시 식료품 지출과 응답소득 간의 내생성 문제를 고려하여 2단계 최소사승추정법(2SLS)을 활용한다.

7) 조사에 응답한 소득이 같더라도 평균적으로 자영업자 가구와 근로자 가구의 항상소득은  $(\mu_{kSE} - \mu_{kEE}) - (\mu_{pSE} - \mu_{pEE})$ 만큼의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

자영업자의 평균적인  
과소소득신고율의 크기를  
나타내는  $\bar{k}$ 는 상한과 하한이  
존재하는 구간으로 추정된다.

$$\begin{aligned} \ln \bar{k} &= \mu_{kSE} + \frac{1}{2} \sigma_{vSE}^2 \\ &= \frac{\gamma_j}{\beta_j} + \frac{1}{2} [\sigma_{vSE}^2 - (\sigma_{uSE}^2 - \sigma_{uEE}^2)] \end{aligned} \quad (12)$$

이때 식 (12)의 두 번째 등호에서 우변의 첫 번째 항은 식 (9)과 식 (10)을 2단계 추정방식(2SLS)으로 추정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 항은 정보의 부족으로 하나의 추정치로 계산할 수 없다. 그렇지만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소득함수 회귀식인 식 (10)을 추정하여 얻을 수 있는 잔차의 분산( $\sigma_{YSE}^2, \sigma_{YEE}^2$ )을 이용하면 두 번째 항의 범위(range)를 구할 수 있다.

식 (10)의 오차항  $\zeta_i$ 의 구성요소 가운데 항상소득의 오차는 자영업자 가구와 근로자 가구 간에 동일하며  $u_i$  및  $v_i$ 와 각각 통계적으로 독립적이라고 전제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도출할 수 있다.

$$\sigma_{YSE}^2 - \sigma_{YEE}^2 = \sigma_{uSE}^2 + \sigma_{vSE}^2 - 2cov(u, v)_{SE} - \sigma_{uEE}^2 \quad (13)$$

여기서 주목할 것은 식 (13)을 만족시키는  $\sigma_{vSE}^2$ 와  $\sigma_{uSE}^2$ 의 관계이다. 다른 분산 및 공분산( $\sigma_{YSE}^2, \sigma_{YEE}^2, \sigma_{uEE}^2, cov(u, v)_{SE}$ )의 값이 주어졌다면  $\sigma_{vSE}^2$ 와  $\sigma_{uSE}^2$ 은 서로 음의 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sigma_{vSE}^2$ 가 그것의 최소값인 0으로 접근할 때  $\sigma_{uSE}^2$ 은 최대값을 갖게 된다. 반대로  $\sigma_{uSE}^2$ 가 그것의 최소값인  $\sigma_{uSE}^2$ 에 접근<sup>8)</sup>할 때  $\sigma_{vSE}^2$ 는 최대값을 갖게 된다. 이런  $\sigma_{vSE}^2$ 와  $\sigma_{uSE}^2$ 의 관계와 식 (12)로부터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 축소보고율을 나타내는  $\ln \bar{k}$ 의 하한은  $\sigma_{vSE}^2 = 0$ 일 때이며,  $\ln \bar{k}$ 의 상한은  $\sigma_{uSE}^2 = \sigma_{uEE}^2$ 일 때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로부터  $\ln \bar{k}$ 의 구간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ln \bar{k} \in \left[ \frac{\gamma}{\beta} - \frac{1}{2} (\sigma_{uSE}^2 - \sigma_{uEE}^2), \frac{\gamma}{\beta} + \frac{1}{2} \sigma_{vSE}^2 \right] \quad (14)$$

한편 식 (13)으로부터  $\sigma_{uSE}^2 = 0$ 인 하한에서는 다음의 식이 성립함을 알 수 있다.

$$\sigma_{uSE}^2 - \sigma_{uEE}^2 = \sigma_{YSE}^2 - \sigma_{YEE}^2 + 2cov(u, v)_{SE} = \sigma_{YSE}^2 - \sigma_{YEE}^2 \quad (15)$$

8) 항상소득 기준 소득변동성은 자영업자 가구에서 더 크다( $\sigma_{uSE}^2 \geq \sigma_{uEE}^2$ )는 가정에 기초한다.

식 (15)의 두 번째 등호는  $\sigma_{vSE}^2 = 0$ 일 때,  $cov(u, v)_{SE} = corr(u, v)_{SE} \sigma_{uSE} \sigma_{vSE}$

= 0이기 때문에 성립한다. 한편 식 (13)으로부터  $\sigma_{uSE}^2 = \sigma_{uEE}^2$  인 상한에서는 다음의 식이 성립함을 알 수 있다.

$$\begin{aligned} \sigma_{vSE}^2 &= \sigma_{YSE}^2 - \sigma_{YEE}^2 + 2cov(u, v)_{SE} = \sigma_{YSE}^2 - \sigma_{YEE}^2 + 2corr(u, v)_{SE} \sigma_{UEE} \sigma_{vSE} \quad (16) \\ &\leq \sigma_{YSE}^2 - \sigma_{YEE}^2 + 2corr(u, v)_{SE} \sigma_{YEE} \sigma_{vSE} \end{aligned}$$

식 (15)의 두 번째 등호는  $\sigma_{uSE}^2 = \sigma_{uEE}^2$  라는 전제에서 비롯된 것이고, 마지막 부등호는  $\sigma_{uSE}^2 \leq \sigma_{uEE}^2$ <sup>9)</sup>이기 때문에 성립한다. 이런 결과들을 이용하여  $\ln \bar{k}$ 의 구간을 다시 쓰면 다음과 같다.

$$\ln \bar{k} \in \left[ \frac{\gamma}{\beta} - \frac{1}{2}(\sigma_{YSE}^2 - \sigma_{YEE}^2), \frac{\gamma}{\beta} + \frac{1}{2}(\sigma_{YSE}^2 - \sigma_{YEE}^2) + corr(u, v)_{SE} \sigma_{YEE} \sigma_{vSE} \right] \quad (17)$$

이때  $\ln \bar{k}$ 의 상한에는 관측되지 않는 정보인  $corr(u, v)_{SE}$ 가 포함되어 있다. 소득탈루율을 나타내는  $\ln \bar{k}$ 의 구간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corr(u, v)_{SE}$ 의 값에 대한 추가적인 가정이 필요하다.

먼저, 자영업자 가구의  $u_i$ 와  $v_i$ 가 통계적으로 독립이라고 가정( $corr(u, v)_{SE}$ )한다면  $\ln \bar{k}$ 의 구간을 나타내는 식 (17)은 다음과 같이 된다.

$$\ln \bar{k} \in \left[ \frac{\gamma}{\beta} - \frac{1}{2}(\sigma_{YSE}^2 - \sigma_{YEE}^2), \frac{\gamma}{\beta} + \frac{1}{2}(\sigma_{YSE}^2 - \sigma_{YEE}^2) \right] \quad (18)$$

여기서  $u_i$ 와  $v_i$ 가 통계적으로 독립이라는 가정이 의미하는 바는 올해 실제소득이 항상소득보다 훨씬 크게 또는 훨씬 작게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자영업자 가구의 실제소득과 조사에 응답한 소득 간의 차이는 전년도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즉, 자영업자 가구는 소득변동성과 상관없이 소득탈루율을 일정하게 유지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한편  $u_i$ 와  $v_i$ 가 통계적으로 독립이라는 가정이 거짓이고,  $cov(uv)_{SE} > 0$ 가 사실<sup>10)</sup>이라면 위의 식 (18)로 추정된  $\ln \bar{k}$ 의 상한은 과소추정의 문제가 존재한다. 특히, 소득 축소보고율의 상한은  $cov(u, v)$ 가 증가하면 커지기 때문에  $corr(u, v)_{SE} = 1$ 일 때  $\ln \bar{k}$ 의 상한이 가장 큰 값을 갖게 된다. 만약  $corr(u, v)_{SE} = 1$ 이라고 가정한다면 식 (16)으로부터  $\sigma_{vSE}$ 의 값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소득탈루율을 나타내는  $\bar{k}$ 의 구간은 소득변동성과 소득신고 형태의 상관관계 수준에 의존한다.

9) 등호는 항상소득 오차항의 분산이 근로자인 경우 0일 때 성립한다.

10)  $cov(u, v)$ 가 양의 값을 갖는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영업자가 일시적으로 항상소득보다 높은 소득이 실현된 해는 항상소득 수준에 기초하여 신고한다. 이는 항상소득 수준으로 신고하더라도 과세관청의 감시망을 벗어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결과 보고소득과 실제소득의 격차는 커진다. 반면, 일시적으로 항상소득보다 낮은 소득이 실현된 해는 실현된 소득에 기초하여 신고한다. 만약 이보다 낮게 신고하는 경우 과세관청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고소득과 실제소득의 격차는 줄어든다. 이런 경우에는  $cov(u, v) \geq 0$ 이 성립한다.

가구원 구성, 가구주 성별 등과 같은 가구 특성에 따른 소비행태의 이질성을 통제하기 위해 가구주는 남성이고, 배우자가 존재하며, 가구원 수의 변동이 없는 가구 등을 분석대상 가구로 선정하였다.

$$\sigma_{vSE}^2 = \sigma_{YSE}^2 - \sigma_{YEE}^2 + 2\sigma_{YEE}\sigma_{vSE} \Rightarrow \sigma_{vSE} = \sigma_{YEE} + \sigma_{YSE} \quad (19)$$

$corr(u, v)_{SE} = 1$ 이라는 가정하에서 식 (19)를 식 (17)에 대입하면  $\ln \bar{k}$ 의 구간은 아래의 식 (20)과 같다.

$$\ln \bar{k} \in \left[ \frac{\gamma}{\beta} - \frac{1}{2}(\sigma_{YSE}^2 - \sigma_{YEE}^2), \frac{\gamma}{\beta} + \frac{1}{2}(\sigma_{YSE}^2 + \sigma_{YEE}^2) \right] \quad (20)$$

### III. 모형의 추정결과와 소득탈루을 추이

#### 1. 모형의 추정결과

본 연구에서는 2006년~2008년도 가계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식료품의 소비 함수인 식(9)와 응답된 소득함수인 식 (10)을 이분산성이 교정된 2단계 추정방법(Heteroscedasticity-corrected 2SLS)을 통해 추정하고 있다.

추정에 사용할 자료를 추출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배우자가 없거나 함께 동거하고 있지 않는 가구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도 제외한다. 그리고 가구주의 연령이 20세 미만이거나 65세를 초과하는 가구도 제외한다. 또한 1년 내내 가구주의 소득이 없는 경우도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연중 가구원 수의 변동이 있거나 연중 취업인원의 정보가 없는 가구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재산소득의 합계액보다 조세·공적연금·사회보험 명목으로 지출한 합계액이 더 큰 가구도 분석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분석대상을 선별하는 기준을 설정한 이유는 가구원 구성, 가구주의 성별 등과 같은 가구 특성에 따른 가구 소비행태의 이질성을 통제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표본추출 기준을 적용한 결과 2006년에는 1,543가구, 2007년 1,553가구, 2008년에는 1,484가구가 분석대상으로 남았다. 각 연도의 자영업자 가구는 각각 524가구(34.0%), 506가구(32.6%), 473가구(31.9%)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최종 분석대상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에서 사용할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아래의 <표 III-1>에 제시하였다. 여기서 자영업자 가구는 매일 조사되는 가계조사 자료상에서 제공된 '가구구분' 정보를 활용하여 정의한다. 본 분석에서는 1년 중 7개월 이상을 가구주가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로 응답한 가구를 자영업자 가구로 정의하였다<sup>11)</sup>.

11) Pissarides and Weber(1989)에서는 연간 총소득(total income)에서 사업소득(income from self-employment)이 차지하는 비중이 25% 이상인 가구를 자영업자 가구로 정의하고 있다.

〈표 Ⅲ-1〉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기술 통계량

변수	2006년						2007년						2008년					
	전체		근로자가구		지영자가구		전체		근로자가구		지영자가구		전체		근로자가구		지영자가구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가구원수	3.69	0.95	3.68	0.93	3.70	0.99	3.64	0.93	3.65	0.92	3.63	0.93	3.68	0.95	3.71	0.95	3.62	0.94
가구구성																		
동거미혼자녀수	1.61	0.90	1.61	0.89	1.60	0.91	1.58	0.89	1.59	0.89	1.56	0.89	1.61	0.91	1.63	0.91	1.57	0.92
동거취학자녀수	1.07	0.95	1.03	0.94	1.16	0.97	1.14	0.96	1.13	0.97	1.15	0.96	1.13	0.95	1.13	0.95	1.12	0.96
비동거학업자녀수	0.06	0.27	0.05	0.26	0.07	0.29	0.07	0.28	0.07	0.29	0.06	0.25	0.07	0.29	0.07	0.30	0.06	0.25
취업원수	1.58	0.62	1.55	0.61	1.64	0.63	1.57	0.61	1.54	0.58	1.65	0.64	1.59	0.61	1.56	0.58	1.66	0.66
홀벌이기구	0.38	0.49	0.36	0.48	0.44	0.50	0.40	0.49	0.37	0.48	0.45	0.50	0.36	0.48	0.35	0.48	0.39	0.49
부부맞벌이기구	0.44	0.50	0.47	0.50	0.36	0.48	0.43	0.50	0.47	0.50	0.36	0.48	0.46	0.50	0.48	0.50	0.41	0.49
기타맞벌이기구	0.07	0.26	0.06	0.24	0.09	0.29	0.07	0.26	0.06	0.23	0.10	0.30	0.07	0.26	0.06	0.24	0.10	0.30
특별시거주	0.10	0.31	0.10	0.30	0.11	0.31	0.11	0.31	0.10	0.30	0.11	0.32	0.12	0.33	0.13	0.33	0.11	0.31
기타도시거주	0.72	0.45	0.74	0.44	0.68	0.47	0.72	0.45	0.73	0.44	0.70	0.46	0.72	0.45	0.73	0.45	0.70	0.46
자산	0.73	0.44	0.72	0.45	0.74	0.44	0.75	0.44	0.74	0.44	0.75	0.43	0.75	0.44	0.74	0.44	0.76	0.43
대용	0.93	0.54	0.93	0.52	0.95	0.58	0.96	0.57	1.00	0.54	0.88	0.62	0.98	0.56	1.02	0.54	0.90	0.60
주거	0.29	0.46	0.27	0.45	0.33	0.47	0.24	0.43	0.20	0.40	0.34	0.47	0.25	0.44	0.24	0.43	0.27	0.45
형태	0.55	0.50	0.58	0.49	0.51	0.50	0.62	0.49	0.66	0.47	0.52	0.50	0.60	0.49	0.63	0.48	0.55	0.50
가	43.56	8.72	42.74	8.84	45.16	8.27	44.62	8.51	43.75	8.51	46.43	8.22	44.51	8.69	43.49	8.56	46.67	8.58
구	0.59	0.49	0.54	0.50	0.67	0.47	0.57	0.49	0.53	0.50	0.67	0.47	0.55	0.50	0.51	0.50	0.64	0.48
주	0.10	0.30	0.11	0.31	0.09	0.29	0.11	0.31	0.12	0.32	0.09	0.29	0.12	0.32	0.12	0.33	0.11	0.32
배우자	0.74	0.44	0.70	0.46	0.80	0.40	0.11	0.31	0.13	0.33	0.08	0.28	0.69	0.46	0.67	0.47	0.73	0.44
	0.10	0.29	0.10	0.30	0.09	0.28	0.16	0.37	0.18	0.38	0.13	0.34	0.12	0.33	0.13	0.33	0.11	0.32
전문학사	17.26	0.57	17.32	0.55	17.16	0.60	17.31	0.54	17.40	0.50	17.14	0.57	17.35	0.61	17.44	0.50	17.15	0.75
ln(가처분소득)	15.10	0.40	15.08	0.39	15.12	0.41	15.10	0.39	15.10	0.39	15.10	0.40	15.17	0.39	15.18	0.38	15.16	0.40
ln(식료품지출)	1.543		1.019		524		1.553		1047		506		1.484		1011		473	
표본크기																		

본 분석에서는  
 식료품 지출 변수를 외식비를  
 제외한 식료품비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소득변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및 재산소득의 합계에서  
 세금 등을 제외한 일종의  
 가처분소득으로 정의되었다.

식료품의 소비지출의 경우 자영업자 가구가 외식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  
 기 때문에 외식비용을 제외한 연간 식료품 지출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조사에  
 응답한 소득은 가구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및 재산소득의 합계에서 조세, 공적  
 연금, 사회보험을 제외한 일종의 연간 가처분소득을 사용하였다.

자영업자 가구와 근로자 가구의 가처분소득 및 식료품 지출 규모를 살펴보  
 면, 평균 가처분소득은 분석기간 내내 근로자 가구가 자영업자 가구보다 높은  
 반면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표준편차는 자영업자 가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  
 다. 한편 식료품 지출은 가처분소득과 달리 자영업자 가구가 높은 연도(2006년  
 및 2007년)도 존재하는 등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구구성과 관련된 변수 중 비동거 학업자녀수와 취업 인원수는 조사기  
 간(1달)마다 차이가 존재하여 연평균 값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가구원수 변동이  
 없도록 표본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특정 조사월의 동거 자녀수 및 동거 취학 자  
 녀수를 사용하였다. 가구유형과 관련된 변수 중 홀벌이 가구는 가구주만 소득이  
 있는 가구를 뜻하며, 부부맞벌이 가구는 가구주와 배우자만 소득이 있는 가구를  
 말한다. 그리고 기타 맞벌이 가구는 가구주와 배우자가 아닌 가구원만이 소득이  
 있는 경우를 나타낸다.

위에서 설명한 자료와 변수들을 갖고 식료품 지출함수 추정식 (9)에서 사용  
 된 가구특성 변수인  $Z_i$ 와 소득함수 추정식 (10)에서 사용된 도구변수인  $X_i$ 의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추정에 사용된 설명변수

회귀식	설 명 변 수
식료품 지출함수	가구원수, 동거미혼자녀수, 동거취학자녀수, 취업인원수, 홀벌이가구, 부부맞벌이가구, 기타맞벌이가구, 특별시거주, 기타도시거주, 주택소유여부, 자동차 보유대수, 자영업자가구 더미
소득함수	식료품 지출함수 설명변수들, 가구주 연령, 가구주 연령의 제곱, 가구주 교육더미들, 배우자 교육더미들, 비동거 학업자녀수, 단독주택 거주더미, 아파트 거주더미

### 가. 소득함수의 추정결과

조사에 응답된 소득함수의 추정결과는 아래의 <표 III-3>에 제시되어 있다.  
 그 결과에 따르면 가구구성과 관련된 변수 중 비동거 학업자녀수와 취업 인원수  
 의 경우 전 분석기간에 걸쳐 5% 유의수준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효

과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비동거 학업자녀 수가 1명 증가한다면 가처분소득은 약 11~23%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취업인원수가 1명 증가하면 가처분소득은 31~4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거주지역 관련 변수들의 경우 비도시 지역 거주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서울지역 거주가구보다 0.9~14% 정도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전 분석기간에 걸쳐 5% 유의수준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났다.

부의 대용변수로 사용된 주택소유 여부나 자동차 보유대수는 대체로 전 분석기간에 걸쳐 1% 또는 유의수준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지닌 것으로 추정되었다<sup>12)</sup>.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가처분소득이 5~15%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자동차 보유대수가 1대 늘면 가처분소득은 17~24%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구주 특성 관련 변수 중 연령변수들은 전 분석기간에 걸쳐 1% 유의수준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추정되었다. 특히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가처분소득은 연령에 따라 증가하지만 그 증가폭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학사 이상인 경우 고졸 이하나 전문학사 이하인 가구보다 가처분소득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고졸 이하 가구와의 차이는 전 분석기간에 걸쳐 1% 유의수준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배우자의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가구의 응답된 가처분소득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거형태와 관련된 변수의 경우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대체로 전 분석기간에 걸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가처분소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sup>13)</sup>.

1단계 추정식인 소득함수의 추정결과,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비동거 학업자녀수나 취업인원수가 많을수록, 서울에 거주하고, 주택 및 자동차를 보유하고, 아파트에 살고, 가구주의 나이가 많을수록 가구의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 2006년의 경우만 10% 유의수준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3) 오피스텔 등 기타 주거형태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의 가처분 소득은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6~16%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과 2008년의 경우 1% 유의수준 하에서, 2007년의 경우 10% 유의수준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드러났다. 기타 주거형태에서 거주하는 가구와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는 가구의 가처분 소득의 차이는 분석연도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 소득함수의 추정결과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추정치	Robust 표준 오차	p값	추정치	Robust 표준 오차	p값	추정치	Robust 표준 오차	p값
가구구성									
가구원수	-0.081	0.040	0.040	0.002	0.037	0.960	-0.019	0.033	0.562
미혼자녀수	0.058	0.041	0.156	0.049	0.040	0.216	0.036	0.035	0.301
취학자녀수	0.070	0.018	0.000	0.003	0.019	0.894	0.025	0.021	0.224
연평균비등거학업자녀수	0.105	0.047	0.024	0.232	0.042	0.000	0.199	0.047	0.000
연평균취업인원수	0.422	0.031	0.000	0.317	0.031	0.000	0.449	0.052	0.000
가구유형 더미									
홀벌이가구	0.074	0.048	0.126	0.063	0.049	0.201	0.084	0.085	0.322
부부맞벌이가구	-0.021	0.038	0.583	0.002	0.037	0.946	-0.013	0.059	0.831
기타맞벌이가구	0.164	0.055	0.003	0.151	0.051	0.003	0.223	0.067	0.001
거주지역 더미									
특별시거주 더미	0.103	0.045	0.023	0.144	0.045	0.001	0.092	0.043	0.034
기타 도시거주 더미	0.023	0.032	0.470	0.068	0.030	0.025	-0.001	0.034	0.974
부의 대응변수									
주택소유 여부	0.053	0.028	0.060	0.114	0.028	0.000	0.146	0.027	0.000
자동차 보유대수	0.239	0.022	0.000	0.202	0.020	0.000	0.166	0.024	0.000
자영자 더미	-0.186	0.026	0.000	-0.218	0.026	0.000	-0.266	0.033	0.000
가구주 특성									
연령	0.095	0.019	0.000	0.086	0.015	0.000	0.083	0.016	0.000
연령 제곱	-0.001	0.000	0.000	-0.001	0.000	0.000	-0.001	0.000	0.000
교육더미									
고졸이하	-0.171	0.030	0.000	-0.199	0.032	0.000	-0.209	0.033	0.000
전문학사	-0.059	0.039	0.126	-0.041	0.040	0.298	-0.091	0.046	0.049
배우자 특성									
교육더미									
고졸이하	-0.068	0.035	0.056	-0.113	0.041	0.006	-0.125	0.038	0.001
전문학사	-0.099	0.043	0.021	-0.055	0.042	0.198	-0.041	0.041	0.316
주거형태 더미									
단독주택	-0.004	0.034	0.915	-0.075	0.036	0.034	0.067	0.039	0.083
아파트	0.141	0.030	0.000	0.059	0.030	0.053	0.157	0.034	0.000
상수항	14.687	0.397	0.000	14.767	0.345	0.000	14.832	0.355	0.000
F-test <sup>1)</sup>	22.71			30.39			28.42		
표본 크기	1,543			1,553			1,484		

주: 1) 1단계 추정에서 사용된 도구변수들의 F-test 값을 의미함.

## 나. 식료품 지출함수의 추정결과

식료품 지출함수의 추정결과는 아래의 <표 III-4>에 나타난다. 그 결과에 따르면 식료품 지출의 가치분소득에 대한 탄력성은 전 분석기간에 걸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약 0.14~0.18 정도로 나타났다. 즉,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응답된 가치분소득이 1% 증가할 때 식료품 지출은 0.14~0.18% 정도 증가하여 비탄력적인 것으로 측정되었다. 한편 자영업자 더미변수의 추정치는 전 분석기간에 걸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값을 가지며, 그 크기도 매년 약 0.05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전 분석기간에서 소득수준이나 다른 가구특성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자영업자 가구가 식료품 지출을 5% 정도 더 많이 함을 의미한다.

한편 가구구성 변수 중 가구원수는 전 분석기간에 걸쳐 1% 유의수준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가구원수가 1명 증가할 때 식료품 지출은 약 12~16%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가구 내의 취업 인원수가 많은 경우 대체로 식료품 지출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음의 효과는 특히 2007년 2008년의 경우 1% 유의수준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부의 대용변수로 사용한 주택 소유여부 변수도 전 분석기간에 걸쳐 1% 유의수준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식료품 지출은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약 8~14% 정도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거주지역 관련 변수들의 경우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비도시 지역보다 서울 또는 기타 도시지역에 거주할수록 식료품 지출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서울보다는 기타 도시지역에 거주할 때 식료품 지출액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2단계 추정식인 식료품 지출함수를 추정한 결과, 전 분석기간에서 소득수준이나 다른 가구특성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자영업자 가구의 식료품 지출이 5% 정도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자영업자의 소득신고  
행태와 소득변동성이 서로  
독립인 경우 소득탈루율은  
대략적으로 2006년 26.4~31.0%,  
2007년 21.0~26.7%, 2008년  
5.8~32.9%로 추정되었다.

〈표 Ⅲ-4〉 식료품 지출함수 추정결과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추정치	Robust 표준 오차	p값	추정치	Robust 표준 오차	p값	추정치	Robust 표준 오차	p값
가구구성									
가구원수	0.151	0.025	0.000	0.120	0.034	0.000	0.164	0.027	0.000
미혼자녀수	-0.080	0.028	0.004	-0.036	0.036	0.311	-0.097	0.029	0.001
취학자녀수	0.021	0.014	0.127	-0.011	0.014	0.424	0.021	0.013	0.108
연평균 취업인원수	-0.022	0.030	0.453	-0.097	0.027	0.000	-0.111	0.029	0.000
가구유형 더미									
홀벌이가구	0.097	0.041	0.019	0.042	0.042	0.314	-0.033	0.043	0.443
부부맞벌이가구	-0.009	0.033	0.789	-0.061	0.034	0.067	-0.078	0.035	0.027
기타맞벌이가구	0.138	0.047	0.004	0.087	0.046	0.062	0.036	0.048	0.456
거주지역 더미									
특별시거주 더미	-0.007	0.036	0.857	0.076	0.038	0.045	0.061	0.038	0.108
기타 도시거주 더미	0.039	0.025	0.123	0.108	0.025	0.000	0.087	0.025	0.001
부의 대용변수									
주택소유 여부	0.081	0.021	0.000	0.138	0.021	0.000	0.114	0.022	0.000
자동차 보유대수	0.035	0.025	0.159	0.001	0.023	0.962	0.009	0.021	0.680
자영자 더미	0.047	0.024	0.050	0.050	0.024	0.039	0.053	0.025	0.038
ln(소득)	0.140	0.062	0.023	0.183	0.051	0.000	0.184	0.047	0.000
상수항	12.082	1.015	0.000	11.516	0.837	0.000	11.541	0.756	0.000
R <sup>2</sup>	0.2148			0.2373			0.2042		
표본 크기	1,543			1,553			1,484		

## 2.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탈루율 추이

위의 추정결과에 바탕을 두고 Pissarides and Weber(1989)의 기법에 따라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탈루율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추정에 필요한 추정치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 Ⅲ-5〉와 같다. 자영업자 가구의 축약형 소득함수 잔차항의 분산은 전체 분석기간 동안 근로자 가구의 경우보다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Ⅲ-5〉 이분산성을 고려한 추정치 요약

	$\beta$	$\gamma$	$\gamma/\beta$	$\sigma_{YSE}^2$	$\sigma_{YEE}^2$
2006년 (N=1,543)	0.140 (0.062)	0.047 (0.024)	0.338	0.233	0.168
2007년 (N=1,553)	0.183 (0.051)	0.050 (0.024)	0.273	0.223	0.147
2008년 (N=1,484)	0.184 (0.047)	0.053 (0.025)	0.285	0.375	0.148

주:  $\beta$  와  $\gamma$  는 식료품 지출함수를 이분산성을 고려한 2SLS로 추정한 후 얻은 로그-소득의 계수 및 자영업자 더미 계수의 추정치이고,  $\sigma_{\gamma}^2$  은 축약형 소득함수 회귀식(reduced-form income regression)에서 구한 잔차의 분산이다.

자영업자의 소득신고 행태와 소득변동성 간의 상관계수가 1이면, 소득탈루율은 2006년 26.4~52.1%, 2007년 21.0~47.2%, 2008년 15.8~54.3%로 추정되었다.

위의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소득탈루율을 산출하면 아래의 〈표 Ⅲ-6〉 및 〈표 Ⅲ-7〉과 같다. 〈표 Ⅲ-6〉의 결과는 자영업자 가구의  $u_i$  와  $v_i$  가 통계적으로 독립이라고 가정( $corr(u, v)_{SE} = 0$ )한 경우이다.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신고 행태가 소득변동성에 독립인 경우,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소득탈루율 구간은 2006년 26.4~31.0%, 2007년 21.0~26.7%, 2008년 5.8~32.9%로 추정되었다. 평균 소득탈루율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소득탈루율 수준은 2006년 28.7%, 2007년 23.8%, 2008년 24.3%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도는 2006년도보다 평균 소득탈루율이 감소하였지만 2008년도는 2007년도보다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6〉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소득탈루율 추이 :  $corr(u, v)_{SE} = 0$ 인 경우

구분	$\ln \bar{k}$		$\bar{k}$		평균 소득탈루율 $1 - 1/\bar{k}$		평균 소득보고율	
	하한	상한	하한	상한	하한	상한	하한	상한
2006년	0.306	0.371	1.358	1.449	26.36%	30.98%	69.02%	73.64%
2007년	0.235	0.311	1.265	1.365	20.96%	26.73%	73.27%	79.04%
2008년	0.172	0.399	1.188	1.490	15.82%	32.87%	67.13%	84.18%

한편 자영업자 가구 소득신고 행태가 소득변동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특히  $corr(u, v)_{SE} = 1$ 인 경우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소득탈루율 구간을 추정하는 결과는 아래의 〈표 Ⅲ-7〉과 같다. 제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균 소득탈루율

심층분석 결과, 우리나라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소득탈루율은 2006년 대비 2007년에는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나 2008년에는 이러한 감소세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의 하한은 앞서의 경우( $corr(u, v)_{SE} = 0$ )와 동일하지만 상한이 더욱 커짐을 알 수 있다<sup>14)</sup>.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소득탈루율 구간 추정치는 2006년 [26.4%, 52.1%], 2007년 [21.0%, 47.2%], 2008년 [15.8%, 54.3%]로 나타났다. 평균 소득탈루율의 중앙값은 각각 39.2%, 34.0%, 35.0%로 측정되었다. 평균 소득탈루율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corr(u, v)_{SE} = 0$ 인 경우처럼 2006년과 대비하여 2007년 및 2008년도의 평균 소득탈루율은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8년에는 다시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III-7〉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소득탈루율 추이 :  $corr(u, v)_{SE} = 1$ 인 경우

구분	$\ln \bar{k}$		$\bar{k}$		평균 소득탈루율 $1 - 1/\bar{k}$		평균 소득보고율	
	하한	상한	하한	상한	하한	상한	하한	상한
2006년	0.306	0.736	1.358	2.089	26.36%	52.12%	47.88%	73.64%
2007년	0.235	0.638	1.265	1.893	20.96%	47.19%	52.81%	79.04%
2008년	0.172	0.782	1.188	2.187	15.82%	54.27%	45.73%	84.18%

####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Pissarides and Weber(1989)의 방법론을 2006년~2008년 가계조사자료에 적용하여 우리나라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탈루율 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한계상 소득탈루율에 대한 점 추정치를 제공하지 못하고 구간 추정치를 제공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 결과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2006년보다는 2007년의 소득탈루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8년도의 경우는 소득탈루율의 범위가 2006년과 2007년의 범위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개선 여부를 판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소득탈루율의 중앙값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도의 소득탈루율은 2007년의 경우보다 다소 높아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자영업자의 소득탈루 행태가 소득변동성과 독립적인 경우( $corr(u, v)_{SE} = 0$ ), 평균 소득탈루율의 중앙값은 2006년 28.7% 수준에서 2007년 23.8%로 약 5%p 하락하였다가 2008년도에는 24.3%로 2007년 대비 다소 증가(0.5%p)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영업자의 소득탈루 행태가 소득변동성과 독

14) 상한의 증가폭은 축약형 소득함수의 잔차항의 분산들의 크기에 의존한다. 왜냐하면  $corr(u, v)_{SE} = 1$  일 때, 상한의 증가폭은 이기 때문이다.

립적이지 않다면 평균 소득탈루율의 정도는 더욱 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추정결과 및 국세청의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고려할 때, 현금영수증 제도 및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노력을 포함한 정부의 과표양성화 정책들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2008년에는 2007년 대비 소득탈루율이 감소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과표양성화 노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는 여러 가지 가정에 의존함에 주목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본 분석은 제Ⅱ장에서 제시한 자영업자 가구와 근로자 가구 간의 소득신고 및 소비행태에 대한 가정과 소득관련 확률변수들에 대한 가정에 기초한다. 또한 가계조사 등과 같은 서베이 조사에 응답한 소득 수준과 과세관청에 신고한 소득 수준이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본 분석은 의미가 있다. 이런 전제가 합리적인 가정으로 보이지만 조사에 응답한 소득과 과세관청에 신고한 소득 수준이 서로 의미하게 다르다면 본 분석방법을 소득탈루율의 추정방법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자료와 가계조사의 소득자료를 서로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하면 가계조사의 소득자료를 국세청의 소득자료로 대체한 후 본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소득탈루율의 추이를 간접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KIPF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탈루율 추이에 대하여 보다 엄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가계조사의 소득자료를 국세청의 소득자료로 대체한 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김봉근·정철·박명호, 「패널자료를 이용한 자영업자의 소득 축소보고율 분석: 앵겔곡선이동과 실질소득 추정」, 『경제학 연구』, 제56집 제3호, 2008.
- 김형준·박명호, 「지하경제 규모 추정과 정책적 함의」, 강병규 외(편) 『미래 한국의 조세재정정책』, 한국노동연구원, 2007.
- 박형수, 「최근 주요국의 재정건전화 정책 및 우리나라의 정책과제」, 조세·재정브리프, 한국조세연구원, 2009.
- 오운·박명호, 『세무조사제도 개혁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7.

Pissarides and Weber, “An expenditure-based estimate of Britain’s black econom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No. 39, 1989, pp. 17~32.

#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분석



고 선  
한국조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sgo@kipf.re.kr)

정부는 여러 해 전부터  
저소득층 자녀 일부에게  
학교급식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고, 매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 I. 서론

오늘날 우리나라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는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급식제도의 도입은 교육당국이 학생들에 대한 영양공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외줄 뿐만 아니라, 올바른 영양섭취에 대한 교육 등 학교 건강교육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학교급식의 확산은 급식과 관련된 산업의 성장을 통하여 고용을 창출하거나, 학생의 보호자가 도시락 준비를 위해 투입해야 하는 시간 비용을 줄여주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초·중·고등학교에서 급식이 일반화되며, 급식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적절하게 분담하는 문제가 새롭게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급식비용 전액이 공공재원에서 부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부에서는 저소득층을 제외한다면 수혜자가 부담하는 비율이 높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저소득층 자녀의 학교급식비를 공공재원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듯하다. 정부는 여러 해 전부터 저소득층 자녀 일부에게 학교급식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고, 매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저소득층 자녀의 학교급식비 지원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정부의 학교급식비 지원이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비분석 결과를 제시하려 한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우선 학교급식 예산과 지원규모

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여, 우리나라 급식지원 현황에 대한 이해를 도우려고 한다. 한편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학교급식비 지원의 효과 등에 대하여 비록 예비 분석 단계이지만 몇 가지 실증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앞으로 학교급식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함을 보이려고 한다.

이하에서는 우선 우리나라 학교급식 제도의 역사와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겠다. 뒤이어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현황을 정리한 후, 기대효과를 검토하고, 급식비 지원 정책이 가계소비에 미친 영향을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예비적인 수준에서 실증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1993년부터 시작된  
학교급식 확대사업의 성과로  
2002년부터는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게 되었다.

## II. 우리나라 학교급식의 역사와 현황

### 1. 역사

우리나라의 학교급식은 1953년부터 시작되었다<sup>1)</sup>. 첫 급식은 한국전쟁 이후 해외원조 농산물을 이용하여 무상으로 물우유와 빵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며 시작되었다. 김기남(2000)에 따르면 1958년부터 1962년까지는 연 120만명, 1963년부터 1971년까지는 연 200만명의 학생에게 무상으로 급식이 제공되었다. 1973년부터 해외원조가 중단되자, 무상급식 인원은 1976년에 약 15만명으로 줄어들었으나, 자부담 급식은 꾸준히 늘어나 약 120만명에 달하였다. 하지만 1977년 9월 서울의 173개 학교에서 5,575명에게 식중독이 발생하고 한 명이 사망하면서 빵 급식은 전면 폐지되었다.

식중독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학교 급식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고, 오늘날과 같은 급식 제도가 1981년에 처음 제정된 학교급식법을 바탕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처음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던 학교급식은 1993년부터 정부가 전면 실시를 추진하며 본격적으로 확대되었다. 초등학교에서는 1993년부터 1998년까지 급식이 거의 대부분의 학교로 확대되었다. 고등학교에서는 1996년 위탁급식제도 도입과 이후 급식시설비 지원 등에 따라 일부 학교에서 급식이 시작되었다가, 1998년과 1999년 사이에 대부분의 학교에서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중학교 급식은 연계급식 확대사업을 통하여 2002년까지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학교급식이 널리 보급되면서, 필요한 재원은 교육청, 자치단체 및 학부모가 분담하였다. 급식의 도입 및 확대는 정부에서 주도하였지만 재원부담을 모두

1) 이하 우리나라 학교급식의 역사에 대한 내용은 김기남(2000), pp. 17~18에 바탕하여 정리하였다

저소득층 자녀의 중식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은 학교급식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이전부터 실시되어 왔다.

책임질 수는 없었고, 초기에는 소요 경비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결성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도 하였다.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학부모를 비롯한 급식 수혜 학생의 보호자는 급식비 중 식재료비 및 인건비의 일부분을 부담해 왔고, 이는 전체 경비의 약 70%에 해당하였다. 저소득층 학부모에게 급식경비의 납부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었고, 실제로 급식비를 미납하는 경우도 빈번히 있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저소득층 자녀의 학교급식비를 공공재원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도입되었다.

사실 저소득층 자녀의 중식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은 학교급식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이전부터 실시되어 왔다. 결식아동에 대한 중식지원 사업은 1989년에 초등학교생들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되었다. 이 사업은 실제로 결식하거나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선정하여 중식을 학교에서 지원하는 형태였고, 이후 학교급식이 실시되면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급식비를 정부가 대신 지불하여 무료로 급식을 제공받도록 하는 형식으로 바뀌었다. 정부의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사업은 1997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도 도입되었다. 2000년 이후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원과 월평균 가구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일부에게도 급식비 지원 사업이 확대되었다.

저소득 가구 자녀에 대한 중식 또는 급식지원 사업은 최근 더욱 확대되고 있다. 2004년부터는 학기중 급식비 지원과 방학 및 토·공휴일 급식 지원으로 이월화되어 각각 교육부와 복지부가 지원을 담당하게 되었다. 2005년부터는 학기중 급식비 지원 사업이 지방사업으로 이양되어서, 시도 교육청에서 소요재원 확보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을 담당하고 있다.

## 2. 현황

우리나라 학교급식의 현황을 규모와 예산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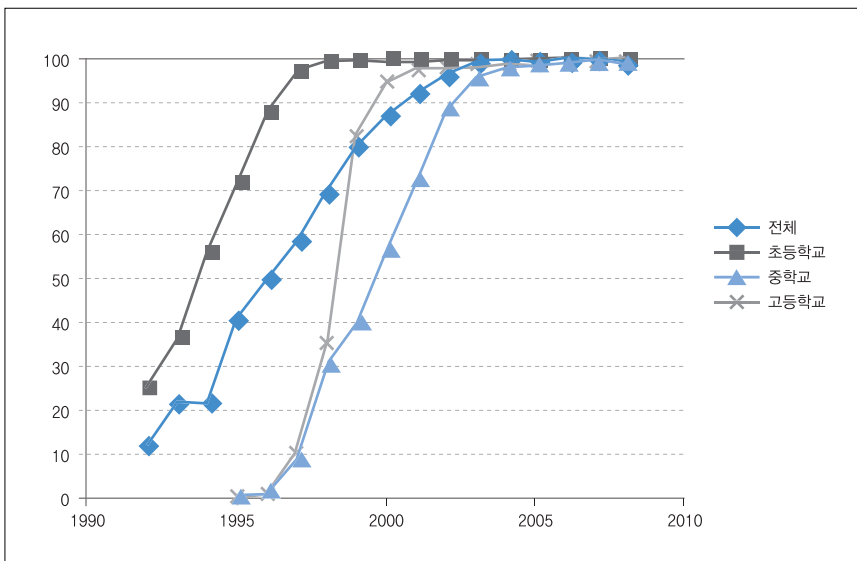
2008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전체 1만 1,094개교 중 학교급식이 제공되는 학교는 99.87%인 1만 1,080개교에 달한다. 초등학교는 전체 5,823개교에서 모두 학교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학교는 전체 3,080개교의 99.87%인 3,076개교, 고등학교

교는 전체 2,191개교의 99.54%인 2,181개교에 학교급식이 도입되어 있다. 이렇게 높은 학교급식 실시율<sup>2)</sup>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쳐 달성되었다. [그림 1]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초등학교는 1990년대 중반에,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2000년대 초반에 100%에 가까운 학교급식 실시율을 달성하였다.

2008년의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총 760만 5,903명의 초·중·고교생 중 97.74%인 743만 4,164명이 학교급식을 이용하고 있다.

[그림 1] 학교급식 실시율

(단위: %)



주: 학교급식 실시율=(급식학교수X100) / 전체 학교수  
 자료: 『교육통계연보』, 1990~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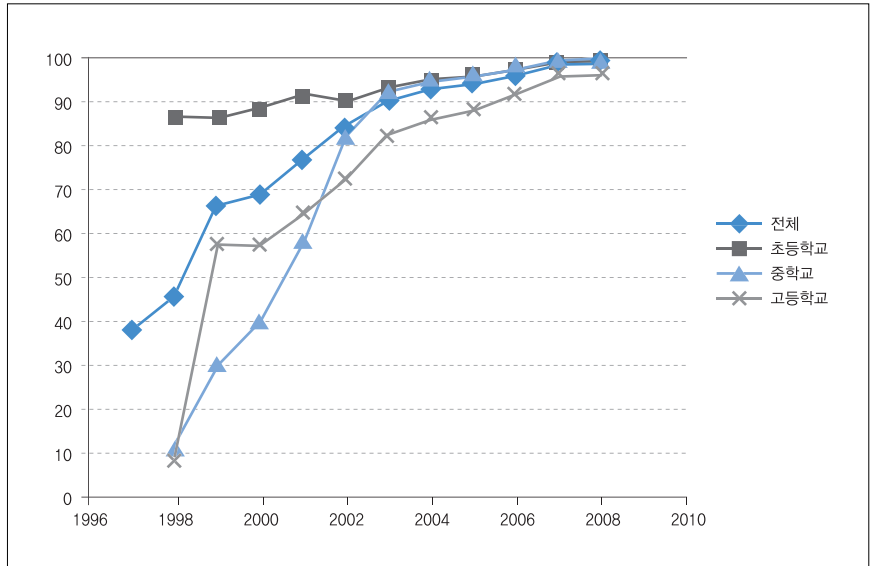
물론 학교급식이 실시되더라도 모든 학생들이 급식제도에 참가하고 있지는 않다. 2008년의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총 760만 5,903명의 초·중·고교생 중 97.74%인 743만 4,164명이 학교급식을 이용하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367만 7,354명 중 98.15%인 360만 9,226명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각각 전체 203만 6,275명 중 98.95%인 201만 4,874명과 전체 189만 2,274명 중 95.66%인 181만 64명이 학교급식에 참가하고 있다.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급식을 선택하지 않고 도시락 등 다른 방법으로 점심식사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학교급식 참가율<sup>3)</sup>은 보통 학교급식 실시율보다 낮게 나타난다.

- 2) 학교급식 실시율은 전체 학교 중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비율이다.
- 3) 학교급식 참가율은 전체 학생 중 학교급식에 참가하는 학생의 비율이다.

2008년에 전체 급식 예산은 4조 3,751억원이었다. 이 중 3분의 2 가량인 2조 9,312억원이 급식을 이용하는 자녀의 보호자에 의하여 지불되었다.

[그림 2] 학교급식 참가율

(단위: %)



주: 학교급식 참가율=(급식참여학생수X100) / 전체 학생수  
 자료: 『교육통계연보』, 1998~2009.

[그림 2]를 살펴보면 학교급식 참가율은 학교급식 실시율과 비슷하게 증가해 왔다. 다만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실시율의 증가와 참가율의 증가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보인다. 이는 도입 초기에 전체가 아닌 학년별로 단계적 도입이 이루어졌거나, 일부 학생들이 급식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 예산

학교급식 예산규모는 <표 1>에 나타난 것처럼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2008년에 전체 급식 예산은 4조 3,751억원이었다. 이 중 3분의 2 가량인 2조 9,312억원이 급식을 이용하는 자녀의 보호자에 의하여 지불되었다. 나머지 중 대부분인 1조 2,385억원은 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하여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하였고, 1,703억원은 시·도 및 시·군·구 자치단체의 지원금이었다. 급식후원금, 발전기금 등의 기타재원은 약 351억원이었다.

〈표 1〉 학교급식 예산 (2004~2008)

(단위: 억원)

	2004	2005	2006	2007	2008
예산규모	29,052	31,710	34,577	41,973	43,751
부담주체별					
보호자부담금	23,075	24,442	26,070	30,101	29,312
교육비특별회계	5,768	6,768	7,543	10,164	12,385
자치단체지원금	206	278	606	1,445	1,703
급식후원금, 발전기금 및 기타	3	222	358	263	351
지출항목별					
식품비	18,827	20,271	21,830	25,606	25,293
운영비	8,677	10,043	11,012	13,471	14,261
- 인건비	6,725	7,843	8,444	10,239	10,654
- 연료비 및 기타	1,952	2,200	2,568	3,049	3,383
- 시설유지비				183	224
시설설비비	1,548	1,396	1,735	2,896	4,197

주: 2004년의 교육비특별회계는 시도교육청 부담 비용임. 2006년 이전에는 시설유지비가 시설설비비에 포함(급식시설비).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급식 실시현황」,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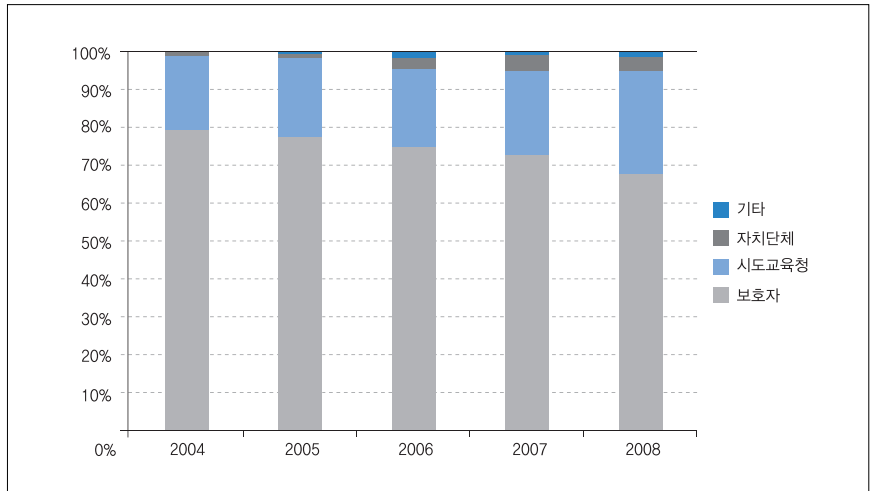
지출항목별로 살펴보면 식품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2008년에는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이 식품비에 해당하였고, 전체 식품비는 2조 5,293억원이었다. 총예산의 약 4분의 1은 인건비로 지출되었는데, 2008년의 인건비는 1조 654억원이었다. 연료비는 3,383억원, 시설유지비는 224억원이었고, 인건비, 시설유지비, 연료비 및 기타비용을 모두 합한 2008년의 총 운영비는 1조 4,261억원이었다. 이외에도 시설설비비로 4,197억원이 지출되었다.

지출항목별로 살펴보면  
 식품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2008년에는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이  
 식품비에 해당하였고,  
 전체 식품비는  
 2조 5,293억원이었다.

보호자의 부담 비율은 2004년의 79.43%에서 2008년 67%로 꾸준히 감소하였지만, 아직까지 전체 비용의 3분의 2가량에 이르고 있다.

[그림 3] 학교급식 참가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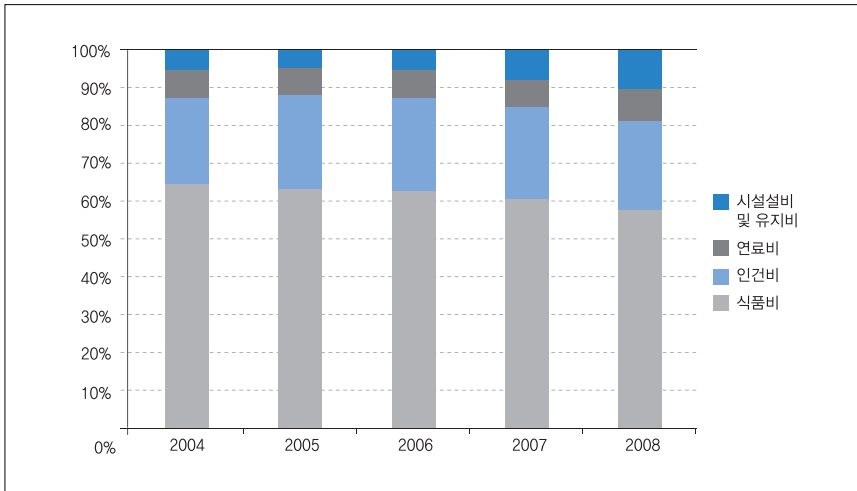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급식 실시현황」, 각 연도

[그림 3]은 학교급식 비용을 부담하는 비율이 각 부담주체별로 어떻게 변해왔는지 보여준다. 보호자의 부담 비율은 2004년의 79.43%에서 2008년 67%로 꾸준히 감소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체 비용의 3분의 2가량으로, 보호자 부담이 전체 급식비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시도교육청의 부담 비율은 2004년의 19.85%에서 2008년의 28.31%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 시도교육청 부담 비율의 변화는 아래에서 살펴볼 지출항목별 비중의 변화와 관련되어 보인다. 자치단체의 지원금 비중도 2004년 0.71%에서 2008년 3.89%로 점차 늘어났다. 자치단체 지원금이 늘어난 것은 자치단체별로 급식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식품비 지원을 확대해 온 결과로 보인다.

[그림 4] 학교급식예산 지출항목별 비율

(단위: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급식 실시현황」, 각 연도

## 시설설비비가

크게 늘어난 주된 이유는

1980년대와 90년대에 도입된

초기 급식시설이 노후화하여

이 시기에 주로 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급식 예산의 지출항목별 비중도 연도별로 변화하였다. [그림 4]에 따르면 식품비의 비중은 2004년 64.8%에서 2008년 57.81%로 감소하였다. 인건비는 2004년 23.15%에서 2008년 24.35%로 소폭 증가하였다. 연료비는 2004년 6.72%에서 2008년 7.73%로 다소 늘어났다. 시설설비 및 유지비는 2004년 5.33%에서 2008년 10.10%로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특히 시설설비비는 실제 예산 금액으로도 2004년 1,548억원에서 2008년 4,197억원으로 늘어났는데,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않았음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히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시설설비비가 크게 늘어난 주된 이유는 1980년대와 90년대에 도입된 초기 급식시설이 노후화하여 이 시기에 주로 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노후 급식시설 교체 사업은 또한 같은 시기에 시도교육청 부담비율이 늘어난 주요 요인 중 한 가지로 생각된다.

### Ⅲ.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교급식비 지원 현황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정부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급식비 지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작되었다가

급식비 지원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시작되었다가 2005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되어, 현재는 시·도교육청이 필요한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에서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다.

2005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되어, 현재는 시·도교육청이 필요한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에서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저소득층 중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자녀, 복지시설 수용학생, 한부모자녀, 소년소녀가장은 전원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는 필요한 경우 신청을 받은 다음 예산범위 안에서 급식비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표 2〉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 수 및 비율

(단위: 명, %)

	전체			초등학교		
	학생수	지원대상	지원율	학생수	지원대상	지원율
2004	7,808,145	407,872	5.22	4,130,263	157,876	3.82
2005	7,799,000	468,288	6.00	4,031,590	193,113	4.79
2006	7,776,211	526,508	6.77	3,925,043	212,247	5.41
2007	7,576,740	578,827	7.64	3,672,207	230,277	6.27
2008	7,419,984	617,303	8.32	3,474,395	241,860	6.96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수	지원대상	지원율	학생수	지원대상	지원율
2004	1,933,855	120,029	6.21	1,744,027	129,967	7.45
2005	2,004,528	142,610	7.11	1,762,882	132,565	7.52
2006	2,075,311	156,674	7.55	1,775,857	157,587	8.87
2007	2,063,159	172,614	8.37	1,841,374	175,936	9.55
2008	2,038,611	177,946	8.73	1,906,978	197,497	10.36

주: 2008년은 4월의 현황 통계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인터넷 공개자료 등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의 규모는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표 2〉에 나온 것처럼, 2004년에는 전체 초·중·고등학생 780만 8,145명 중 5.22%인 40만 7,872명이 학교 급식비를 지원받았고, 2008년에는 전체 741만 9,984명 중 8.32%인 61만 7,303명으로 늘어났다<sup>4)</sup>. 지원대상자의 규모는 각급 학교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초등학생은 2004년 전체 413만 263명 중 3.82%인 15만 7,876명을 지원하다가 2008년에는 전체 347만 4,395명의 6.96%인 24만 1,860명으로 지원대상 학생수가 증가하였다. 중학교 급식지원 대상자는 2004년 전체 193만 3,855명의 6.21%인 12만 29명에서 2008년 전체 203만 8,611명의 8.73%인 17만 7,946명으로, 고등학교 급식지원 대상자는 2004년 전체 174만 4,027명의 7.45%인 12만 9,967명에서 2008년 전체 190만 6,978명의 10.36%인 19만 7,497명으로 확대되었다.

4) 여기에서 2008년 통계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한 4월 현황 통계로, 앞서 제시된 2008학년도 교육통계 수치와 다소 차이가 난다.

〈표 3〉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예산

	예산(백만원)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4	136,391	46,019	44,556	45,815
2005	144,667	49,937	48,177	46,553
2006	175,549	55,196	59,873	60,480
2007	205,952	66,150	67,829	71,973
2008	232,202	72,919	76,455	82,828
	1인당(천원)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4	334	291	371	353
2005	309	259	338	351
2006	333	260	382	384
2007	356	287	393	409
2008	376	301	430	419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꾸준히 커져왔다. 〈표 3〉에 따르면, 2004년에 초등학교 460억 1,900만원, 중학교 445억 5,600만원, 고등학교 458억 1,500만원 등 총 1,363억 9,100만원이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2008년에 초등학교 729억 1,900만원, 중학교 764억 5,500만원, 고등학교 828억 2,800만원 등 총 2,322억 200만원으로 늘어났다. 지원대상 학생 한 사람에게 지원되는 금액도 늘어났다. 2004년에는 1인당 연평균 지원액이 초등학생의 경우 29만 1천원, 중학생은 37만 1천원, 고등학생은 35만 3천원이었는데, 2008년에는 초등학생 30만 1천원, 중학생 43만원, 고등학생 41만 9천원으로 증가하였다. 전체 평균으로는 2004년 33만 4천원에서 2008년 37만 6천원으로 커졌다.

이러한 예산의 재원은 2004년까지는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로 나누어 조달되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당시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개한 저소득층 자녀의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의 재원(財源) 변화를 살펴보면, 2002년에는 전체 예산 1,120억 5,400만원 중 569억 4,500만원이 국고보조금이었고 551억 900만원은 지방비였다. 2003년에는 전체 1,277억 300만원의 예산 중 국고보조금 569억 4,500만원, 지방비 707억 5,800만원 등 지방비의 비중이 커졌고, 이듬해인 2004년에는 전체 1,363억 9,100만원 중 국고보조금 478억 200만원, 지방비 885억 8,900만원으로 지방비의 비중이 더욱 확대되었다. 2005년부터

학교급식비  
미납 학생 수는  
2004년 5,729명에서  
2007년 2만 3,456명  
으로 늘었다.

터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양여되어, 전체 예산 1,447억 5,700만원 중 1,337억 7,400만원이 교육비 특별회계로 지출되었다.

〈표 4〉 학교급식비 미납 학생 수

(단위: 명)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4	5,729	3,293	1,624	812
2005	24,460	12,790	6,436	5,234
2006	17,351	8,579	4,140	4,632
2007	23,456	10,569	5,470	7,417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이와 같이 저소득층에 대한 학교급식비 지원이 확대된 이유는 학교급식비를 미납하는 학생 수가 최근 꾸준히 증가한 점에 대한 우려와 관련이 깊다. 〈표 4〉는 각급 학교별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각 연도별로 학교급식비를 미납한 학생 수를 보여준다. 2004년에는 초등학생 3,293명, 중학생 1,624명, 고등학생 812명 등 총 5,729명이 학교급식비를 미납하였다. 3년 뒤인 2007년에 학교급식비 미납 학생의 수는 더욱 증가하여 초등학생 1만 569명, 중학생 5,470명, 고등학생 7,417명 등 총 2만 3,456명에 달하였다.

학교급식비 미납학생의 증가에 대하여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려 하고 있다. 2007~2011년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 및 2009년도 학교 보건·급식 기본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 2,376억원 및 2011년 2,541억원 등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지방비 총 1조 910억원을 투입하여 전체 학생 수의 약 10%인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 자녀 전체 80만여명에게 학교급식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IV.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교급식비 지원 현황

### 1. 기대효과

정부에 따르면 저소득층 자녀에게 급식비를 지원해주는 목적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에 있다<sup>5)</sup>.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는 이외에도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의무교육

5) 이러한 목적은 교육인적자원부의 2008년도 『학교체육·보건·급식 기본방향』 등에서 제시되고 있다.

의 일환으로서 모든 학생에게 전액 무료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논리도 있고, 온정주의의 측면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반면, 이념과 사상에 따라 정부의 지원보다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경제학 이론 및 기존 연구문헌 역시 정부의 급식비 지원에 대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기대하는 또는 기대하지 못한 효과가 존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우선 성장기 아동에 대한 충분한 영양 공급을 보조한다는 측면에서의 효과는 분명해 보인다. 성장기 아동의 영양 상태는 성인으로 자라난 이후의 건강과 직결되며, 성장기의 영양 부족은 성인이 된 이후 질병에 걸려 생산성이 저하될 가능성을 커지게 한다. 이는 성인으로 자라날 아동 개인은 물론, 장기적으로 경제 전체의 생산성 및 잠재성장력과도 연관된다. 아동 및 청소년기에 교육을 통하여 인지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는 정도 또한 성장기의 영양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인지능력 개발의 성과 역시, 이후 해당 개인의 성공은 물론, 경제의 생산성과 잠재적인 경제성장 동력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영양섭취가 부족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영양공급 보조는 수혜자는 물론 비용을 부담하는 경제 전체에도 일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Fogel, 1997; Cunha et al., 2006; Currie, 2009).

하지만 급식비 지원의 효과는 단순히 해당 아동에 대한 영양보조로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정부의 급식비 지원은 지원대상 아동이 속한 가계에 영양이라는 현물을 공급하여 소득이 증대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즉, 기존에 아동의 영양에 대해 지불하던 일부 비용이, 정부의 현물 공여에 따라 다른 부문의 소비 또는 저축으로 대체될 수 있다. 따라서 급식비 지원은 소득 증가의 방식으로 가계의 최적소비조합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쳐, 가계소비구조가 변화하는 소득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 어떠한 방향으로 어느 정도나 소득효과가 나타날지는 불분명하다. 따라서 실제 소득효과의 방향 및 크기는 자료를 통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sup>6)</sup>.

급식비를 정부가 지원할 경우에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영양보조의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급식비 지원이 가계소비에 영향을 미칠 경우, 정부가 애초에 기대하지 못했던 효과를 수반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부수 효과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만약 급식비 지원으로 인한 소득 증가가 자녀의 교육비와 문구류 지출을 늘리거나 추가적인 영양 섭취 등으로 연결될 경우, 급식비 지원은 청소년기의 적절한 영양 공급 이상으로 더욱 큰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반면에, 급식비 지원에 따른 소득 증가가 주류나 담배 등 가구내 성

정부의 급식비 지원은 지원대상 아동이 속한 가계에 영양이라는 현물을 공급하여 소득이 증대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6) 특히 급식비 지원과 더불어 해당 가구소득이 감소한 경우, 급식비 지원은 소득을 직접 증가시키기보다는 감소의 폭을 줄여줄 것이다. 이때 급식비 지원의 효과는 특정 재화의 소비를 증가시키기보다는 감소의 폭을 상대적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02년도와 2008년도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항목별  
평균 소비 변화를, 급식비  
지원을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으로 나누어 이중차분  
분석으로 살펴볼 때, 급식비  
지원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인의 비권장재화 소비 증가로 이어질 경우, 이는 청소년기의 영양공급 효과와는 별개로 경제 전체에 일부 부정적인 효과를 수반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급식비 지원이 가계소비에 미친 영향을 가계조사자료를 통해 실증 분석하겠다.

## 2. 이중차분 분석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가계 소비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이중차분(Difference-in-Difference) 분석을 하였다. 이중차분 분석이란 동일한 특성을 가진 두 집단이 하나는 정책지원의 대상이 되고 다른 하나는 정책지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 정책지원 전후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변수의 변화가 두 집단 사이에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여 정책지원의 효과를 추정하는 기법이다. 즉, 저소득층 중 급식비를 지원받은 집단에 대하여 지원시기 앞뒤로 가계소비의 각 항목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면, 그 원인이 급식비 지원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같은 시기의 다른 알지 못하는 요인에 따른 것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이때 저소득층 중 급식비를 지원받지 않은 집단에 대하여도 같은 시기에 같은 항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게 되면, 급식비 지원 효과를 제외한 다른 요인들에 따른 변화를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급식비를 지원받은 집단의 소비 변화에서 급식비를 지원받지 않은 집단의 소비 변화를 제하면, 급식비 지원에 따른 소비 변화 효과가 도출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2002년에는 급식확대사업이 종료되며 거의 모든 초·중·고등학생이 급식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당시에도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아직 시작 단계였으며, 특히 차상위계층으로의 확대는 이후 시기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2002년도와 2008년도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항목별 평균 소비 변화를, 급식비 지원을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으로 나누어 이중차분 분석으로 살펴볼 때, 급식비 지원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이중차분 방법을 활용하는 회귀분석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y = \alpha + \beta \cdot free \cdot year + \gamma \cdot free + \delta \cdot year + \theta \cdot X + \epsilon$$

종속변수  $y$ 로는 소비지출, 기타지출, 문구류 지출, 교통통신비 지출 등 항목

별 가구 지출액이 각각 사용되었다. *free* 는 급식비를 지원받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이고, *year* 는 2008년 자료의 경우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이 경우 두 더미변수의 곱의 계수인  $\beta$ 가 이중차분에 따른 급식비 지원의 효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때 급식비 지원의 효과가 아닌 다른 요인들이 추정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다른 변수들을 회귀식의 우변에 추가할 수 있는데,  $x$ 는 이러한 통제변수들의 벡터이다. 실제 추정식에서 통제변수로는 최저생활비 이하 여부 더미, 서울 더미, 자영업자 가구 더미, 가구원수, 여성가구주 여부 더미, 가구주 연령 및 가구주 연령의 제곱, 맞벌이가구 더미, 월세평가액, 비자가 거주여부 더미 등을 추가하였다.

이중차분 회귀분석에는 2002년과 2008년의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sup>7)</sup>. 가계조사 자료는 월 단위로 제공되지만 각 관측치가 몇 월에 해당하는지 분간할 수 없기 때문에, 12개월 모두 조사된 가구로만 한정하여 각 소득 및 지출항목의 연간 총계를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가 한 명 이상인 가구이면서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가구 및 차상위층인 경우로 한정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2002년의 경우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월소득인정액을 추정하여 차상위계층을 분간하는 대신 월평균 가계 지출액이 각 연도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로 한정하였다. 이렇게 하여 2002년에는 233개, 2008년에는 195개의 관측치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급식비를 지원받았는지 여부는 외식비 중 학교급식비 지출액 자료를 이용하여 분간하였다. 통상 연 180일의 수업일수에 대하여 학교급식비가 지원되었고, 우리나라는 3월에 새 학기가 시작되는 학제를 가진 점을 고려하여, 학교급식비를 2개월 이하로 지출한 경우 급식비를 지원받은 가구로, 학교급식비를 7개월 이상 지출한 경우 자부담으로 급식비를 지출한 가구로 간주하였다. 학교급식비 지출 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로 기록된 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실제로도 소수에 불과하였다.

〈표 5〉는 분석에 이용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을 보여준다. 모든 지출액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2005년 가격으로 환산하였고, 편의상 천원 단위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각 연도별 표본의 평균값을 급식비를 지원받은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로 나누어 살펴보면, 소비지출, 기타지출, 문구류지출 및 교통통신비 지출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소비지출의 경우 급식비를 지원받지 않은 집단의 평균값은 2002년과 2008년 사이에 크게 변화하지 않았지만, 급식비를 지원받은 집단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지출의 경우 두 집단 모두 2002년과 2008년 사이에 증가하였으나, 급식비를 지원받지 않은 집단

7) 2003년에 가계조사 분류항목이 변경되었으므로, 실제 분석에서는 2002년과 2003년 이후 자료가 비교 가능하도록 세부항목을 통해 조정하였다.

의 증가폭이 더 컸다. 이와 반대로 문구류 지출은 모두 감소하였으나 급식비를 지원받지 않은 집단에서 감소폭이 더 컸다. 교통통신비의 경우 급식비를 지원받은 집단의 평균값은 별로 변하지 않았지만, 급식비를 지원받지 않은 집단에서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에서도 각 연도 표본별로 지출기준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의 비율이나 여성 가구주 비율, 맞벌이 비율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

〈표 5〉 표본의 기초통계

	2002		2008	
	급식비 미지원	급식비 지원	급식비 미지원	급식비 지원
〈종속변수〉				
소비지출	12480.88 (2549.90)	6223.88 (4588.98)	12030.96 (3441.78)	5124.16 (3943.61)
식료품	4382.18 (1173.36)	1668.08 (1534.41)	3874.67 (1304.09)	1245.04 (1187.56)
주류	47.40 (70.37)	18.82 (36.54)	61.24 (86.88)	23.22 (49.36)
외식	1025.78 (781.16)	508.20 (479.57)	1018.52 (869.52)	462.62 (481.87)
주거	547.34 (908.67)	139.11 (384.99)	481.39 (662.28)	101.22 (207.47)
광열수도	1095.63 (344.49)	443.24 (396.87)	979.03 (421.83)	335.32 (289.67)
가구집기	323.19 (480.90)	176.90 (481.42)	355.84 (536.57)	124.58 (276.11)
의류	564.90 (319.39)	334.39 (372.60)	446.22 (334.70)	235.94 (248.61)
보건	362.40 (406.80)	238.30 (565.19)	460.00 (623.30)	215.35 (403.99)
교육	1769.68 (1189.92)	1265.93 (1573.01)	1873.48 (1448.34)	1065.07 (1608.08)
문구	72.69 (54.77)	18.76 (31.25)	34.52 (29.73)	7.12 (16.86)
교양오락	344.92 (354.42)	226.30 (352.69)	301.21 (263.21)	228.87 (481.25)
교통통신	1691.17 (1035.07)	896.06 (782.22)	1966.15 (1029.30)	881.99 (1063.53)
담배	218.43 (236.46)	72.88 (132.08)	179.68 (279.30)	31.69 (75.76)
비소비지출	1004.81 (955.72)	699.08 (858.83)	796.07 (908.41)	810.24 (967.14)
기타지출	7120.29 (12017.95)	4285.39 (7608.64)	14241.31 (8674.92)	7437.90 (6508.84)

〈표 5〉 표본의 기초통계 (계속)

	2002		2008	
	급식 미지원	급식 지원	급식 미지원	급식 지원
〈통계변수〉				
최저생계비 이하	0.38 (0.49)	0.83 (0.38)	0.52 (0.50)	0.90 (0.30)
서울	0.19 (0.40)	0.13 (0.34)	0.11 (0.31)	0.11 (0.31)
자영업자	0.52 (0.50)	0.42 (0.50)	0.52 (0.50)	0.41 (0.49)
가구원수	4.21 (0.83)	3.78 (0.93)	3.81 (1.05)	3.47 (0.78)
여성가구주	0.25 (0.44)	0.20 (0.40)	0.40 (0.49)	0.33 (0.47)
가구주연령	43.41 (8.44)	46.31 (8.99)	48.12 (12.84)	48.54 (8.51)
맞벌이	0.22 (0.42)	0.24 (0.43)	0.14 (0.35)	0.30 (0.46)
월세평가액	393.95 (262.20)	540.99 (307.53)	317.89 (269.42)	442.93 (315.71)
비자가	0.43 (0.50)	0.34 (0.47)	0.51 (0.50)	0.30 (0.46)

주: 표에 제시된 수치는 각 변수의 표본 평균이고, 괄호 안에 제시된 수치는 표준편차이다. 지출변수들의 단위는 천원이다.

이중차분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6〉에 나타나 있다. 변수 이름 아래에 첫 번째로 나타나는 수치가 바로 이중차분 회귀방정식에 따른 급식비 지원 효과의 추정치이다. 소비지출, 기타지출, 문구류 지출, 교통통신비 지출을 제외하고는 모두 추정계수가 작고 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왔다. 이는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비 지원의 확대가 몇 가지 지출부문을 제외하고는 어떤 한 방향으로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특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식료품비, 주류 소비, 학교급식비를 제외한 외식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비, 의류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등 대부분의 지출부문에서 추정계수가 음수로 나타났다. 이는 비록 표본의 크기가 작고 표준오차가 크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급식비 지원을 받은 저소득층이 오히려 이들 항목의 소비를 2002년과 2008년 사이의 6년간 더 줄여왔을 가능성이 제한적으로 있음을 시사한다. 즉 급식비 지원의 효과로 소비가 줄었다기보다는, 급식비 지원을 받은 집단의 소비상황이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해진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sup>8)</sup>. 이러한 추측이 맞다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교급식비의 지원이 소득과 소비가 감소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가계에 다소나마 시의적절한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비 지원의 확대가  
몇 가지 지출부문을 제외하고는  
어떤 한 방향으로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8) 참고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의 월소득 5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의 변화를 실질가격으로 환산하여 2인 이상 가구에 대하여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살펴보면, 1분위 계층의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지출과 교통비 지출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1분위 계층의 가계지출은 2003년과 비교하여 2008년에 다소 높았으나,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꾸준히 감소하였다.

〈표 6〉 이중차분 회귀분석에 따른 각 지출항목별 급식비 지원 효과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기타지출	식료품	주류	외식	주거	편월수도	가구집기	의류	보건	교육	문구	교양오락	교통통신	담배
급식비*2008년	-1,270.28* [528.18]	143.31 [188.82]	-5,143.20** [1,791.99]	-100.10 [231.89]	-14.72 [14.44]	-167.41 [135.10]	54.35 [127.57]	-19.38 [74.06]	-97.84 [100.15]	-16.96 [66.47]	-37.64 [99.49]	-531.53 [302.14]	24.31** [7.96]	49.34 [83.21]	-421.28* [190.83]	12.99 [43.41]
급식지원	-2,835.28** [412.14]	-101.09 [140.05]	-624.69 [1,557.00]	-1,790.07** [189.84]	-11.76 [8.78]	-201.61 [106.68]	-253.64* [108.34]	-476.61** [65.22]	-9.65 [98.15]	-94.71 [50.07]	-16.57 [91.83]	188.78 [215.28]	-38.52** [7.54]	-48.47 [61.65]	-235.97 [151.44]	-102.82** [32.58]
2008년	1,156.64** [327.45]	88.83 [142.04]	9,600.31** [1,562.34]	11.17 [189.45]	24.59 [13.33]	238.68 [125.14]	-111.91 [126.73]	0.40 [63.99]	104.61 [89.69]	-60.91 [56.77]	50.01 [82.70]	413.46 [231.88]	-32.86** [7.62]	4.64 [55.56]	612.25** [163.51]	-29.54 [41.73]
최저생계비이하	-5,309.52** [311.07]	-479.61** [1,127.83]	-5,826.41** [1,179.91]	-1,257.30** [156.94]	-23.81** [8.69]	-439.78** [81.22]	-179.08* [78.59]	-224.44** [49.81]	-230.03** [80.68]	-208.24** [44.32]	-214.22* [104.17]	-1,034.40** [190.44]	-20.00** [5.35]	-181.66** [50.35]	-971.84** [137.09]	-59.83* [26.25]
서울	536.95 [491.22]	-162.50 [117.71]	-793.74 [1,179.91]	372.19 [233.62]	-2.99 [12.57]	179.43 [94.40]	171.94 [100.38]	55.53 [54.01]	-106.62 [57.28]	14.38 [51.77]	24.09 [70.08]	301.33 [246.90]	16.61* [7.02]	-35.23 [69.57]	-190.68 [109.95]	-68.93* [23.89]
자영업자	87.51 [308.47]	-12.30 [94.67]	-6,353.71** [736.47]	72.32 [121.41]	-7.29 [6.23]	-90.13 [63.60]	-50.20 [56.38]	68.92 [36.24]	-44.67 [50.46]	-31.33 [35.36]	-1.93 [46.85]	84.77 [159.22]	4.70 [3.51]	-4.99 [43.54]	-73.63 [85.68]	-3.21 [18.55]
가구원수	1,561.94** [192.33]	54.91 [49.74]	1,116.56* [445.84]	540.59** [75.47]	11.80** [3.75]	151.76** [34.11]	1.95 [25.29]	144.30** [26.92]	77.42* [30.43]	42.38* [21.32]	45.03 [31.26]	267.96** [96.41]	6.32** [1.80]	25.16 [25.93]	228.07** [47.16]	34.72** [11.86]
여성가구주	-30.92 [383.08]	-316.58** [100.96]	-827.59 [718.54]	94.60 [166.25]	-2.23 [7.60]	-99.18 [70.04]	-11.75 [67.69]	-2.51 [46.29]	89.90 [88.98]	74.68 [40.47]	-128.94* [59.71]	148.62 [181.64]	7.02 [4.28]	-23.31 [47.31]	-185.00 [96.29]	-62.73** [21.86]
가구주연령	-205.41 [109.27]	2.09 [22.65]	-211.29 [251.70]	-88.10* [38.05]	1.01 [1.63]	-29.22 [20.32]	30.87* [14.73]	-19.17 [11.47]	-13.44 [10.37]	-22.53 [14.60]	-48.17** [16.96]	42.61 [40.04]	-1.35 [1.01]	-26.94 [14.47]	-32.99 [26.38]	-1.45 [4.82]
가구주연령의 제곱	1.47 [1.03]	-0.20 [0.21]	0.91 [2.36]	0.65 [0.35]	-0.01 [0.01]	0.12 [0.19]	-0.33* [0.14]	0.17 [0.11]	0.10 [0.10]	0.18 [0.13]	0.58** [0.18]	-0.49 [0.39]	0.01 [0.01]	0.26 [0.15]	0.16 [0.25]	0.01 [0.05]
맞벌이	-700.51* [338.04]	-91.26 [108.55]	138.23 [1,158.85]	-240.45 [133.41]	-6.04 [7.91]	35.41 [80.05]	-160.95** [48.70]	-102.77** [38.90]	-108.26** [36.13]	16.86 [42.87]	-98.10 [53.98]	29.82 [201.08]	-2.32 [4.46]	-59.32 [50.26]	-57.04 [109.48]	-13.94 [23.17]
월세평가액	-0.61 [0.54]	0.16 [0.17]	2.99* [1.50]	0.03 [0.19]	-0.01 [0.01]	-0.06 [0.10]	-0.35 [0.10]	0.10 [0.07]	0.12 [0.07]	-0.07 [0.06]	-0.06 [0.08]	-0.62* [0.28]	-0.01 [0.01]	0.18 [0.08]	0.05 [0.15]	-0.01 [0.03]
비자가	220.89 [355.21]	-379.15** [105.15]	-967.86 [904.79]	143.71 [147.56]	-2.58 [7.67]	-37.08 [74.57]	167.78** [56.86]	48.56 [46.29]	110.73 [58.20]	-48.17 [39.17]	27.63 [59.74]	-235.13 [180.70]	3.56 [3.96]	-6.32 [40.26]	48.48 [102.98]	46.60 [24.20]
상수	14,146.65** [2,978.47]	1,497.07* [625.99]	14,922.19* [6,938.04]	4,988.10** [1,075.64]	1.23 [46.73]	1,653.20** [593.11]	1.87 [372.00]	999.05** [313.04]	424.02 [322.73]	-1,134.15** [394.88]	1,280.64** [413.49]	343.29 [1,132.81]	82.97** [27.14]	928.31** [343.65]	2,321.29** [757.09]	157.01 [135.40]
R <sup>2</sup>	0.718	0.205	0.439	0.666	0.162	0.398	0.223	0.562	0.148	0.221	0.145	0.170	0.397	0.093	0.470	0.236

White 방식으로 조정된 표준오차 이용.  
\*\* p<0.01, \* p<0.05

도움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소비지출과 교통통신비 지출에 대한 효과의 추정계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표 6>에 따르면 급식비 지원을 받았을 경우, 다른 통제변수들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급식비 지원을 받지 않은 차상위계층 및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 가구와 비교하여 2002년과 2008년 사이 소비지출의 증가가 약 127만원 정도 더 적었다<sup>9)</sup>. 기타지출은 514만원이 더 적었고, 교통통신비는 42만 1천원이 더 적었다. 앞서와 같은 방식으로, 이는 급식비 지원의 효과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열악해진 집단에 급식비 지원이 효과적으로 집중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문구류 지출의 경우, 급식비 지원을 받았을 경우 2002년에서 2008년 사이에 오히려 2만 4천원 정도 더 증가하였고, 추정치 액수는 별로 크지 않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5>의 각 집단별 평균값을 함께 고려해 보았을 때, 급식비 지원을 받은 집단의 문구류 지출 감소폭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더 작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교양오락비 지출이나 담배 지출의 추정계수도 양수였지만, 액수가 크지 않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도 않았다.

요약하면,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가계소비에 미친 영향을 예비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가계소비구조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왜곡시켰다는 증거를 찾기는 어려웠다. 오히려 급식비 지원이 상대적으로 소비지출이 더 열악해진 집단을 대상으로 시의적절하게 제공되었을 가능성이 일부 발견되었다. 물론 현재 이용된 자료의 제약 등을 고려할 때, 위에 제시된 결과는 예비 분석 단계 수준으로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정확한 효과의 추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다른 자료를 이용한 보다 엄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V. 맺음말

한국전쟁 이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학교 급식은 이후 부침(浮沈)을 겪다가 2002년에 모든 초·중·고등학교로 확대되었다. 학교급식의 비용은 보호자, 교육당국, 자치단체가 분담하여 지불하고 있는데, 이 중 보호자의 부담비율이 가장 커 2008년에는 전체 비용의 약 67%에 달하였다. 이러한 급식비 지출이 특히 일부 저소득층에게는 어려운 부담이 될 수 있어,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자녀의 급식비를 대신 부담하는 정책을 수 년 전부터 확대 실시해 왔다. 2008년에는 전체 초·중·고등학생의 8.32%인 61만 7,303명이 급식비 전액을 지원받았고,

문구류 지출의 경우, 급식비 지원을 받았을 경우 2002년에서 2008년 사이에 오히려 2만 4천원 정도 더 증가하였고, 추정치 액수는 별로 크지 않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9) <표 5>의 기초통계에 따르면 소비 지출은 실제로 다소 줄었으므로, 급식비 지원을 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127만 원 더 감소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 제시된 분석 결과는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경제 상황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해진 집단에 시의적절하게 제공되었을 가능성도 있음을 부분적으로 시사한다.

소요비용은 각 시도교육청이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조달하여 지불하였다.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영양상태 및 이후 건강과 생산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직접적인 효과는 향후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提高)하는 데에도 분명히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급식비 지원은 가계에 대한 현물공여로서 작용하여 소득효과를 통해 가계의 소비결정과정을 왜곡하고 변화시킬 가능성도 있고, 그 방향은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이 글에서는 2002년과 2008년의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이중차분방식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표본크기가 작은 점 등 자료의 제약이 크기 때문에 주의깊게 해석되어야 하겠지만, 예비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급식비 지원이 가계소비구조를 왜곡시키는 뚜렷한 증거는 찾기 어려웠다. 오히려 이 글에 제시된 분석 결과는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경제 상황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해진 집단에 시의적절하게 제공되었을 가능성도 있음을 부분적으로 시사한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앞으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하여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엄밀한 후속 연구들이 뒤따를 필요가 있겠다. **KIPF**

### <참고문헌>

김기남 (2000), 「우리나라 학교급식의 실시배경과 현황」, 『한국모자보건학회 제8차 2000년도 추계학술대회 연제집』, 2000년 10월, pp. 17~20.

Cunha, Flavio, James J. Heckman, Lance J. Lochner, and Dimitriy V. Masterov (2006), "Interpreting the Evidence on Life Cycle Skill Formation," in Erif A. Hanushek and Frank Welch (eds.), *Handbook of the Economics of Education*, pp. 697~812, Amsterdam: North-Holland.

Currie, Janet (2009), "Healty, Wealthy, and Wise: Socioeconomic Status, Poor Health in Childhood, and Human Capital Development,"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47, No. 1, pp. 87~122.

Fogel, R. W. (1997), "New findings on secular trends in nutrition and mortality: Some implications for population theory," in M. R. Rosenzweig and O. Stark (eds.), *Handbook of Population and Family Economics*, Volume 1A, pp. 433~481, Amsterdam: Elsevier Science.

# 주택시장과 경제위기: 주택금융과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yhrut@kipf.re.kr)

## I. 서론

2008년 하반기 세계적 금융위기와 이에 따른 경기침체의 암운으로 2009년을 시작했던 우리나라 경제는 작년 한해 주택시장의 경우 '상고하저'의 패턴을 보여주었다. 2008년 말과 2009년 초 각국 정부들은 경쟁적으로 유동성 공급 및 재정확대 정책을 통해 자국의 금융시스템 붕괴를 방어하면서 극심한 경기불황으로부터 회복 과정중에 있다. 이러한 경제 내외의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부동산시장도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거래시장이 차츰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009년 2~3월부터 각종 부동산시장 규제완화와 부동산관련 감세효과로 주거서비스 시장에서의 교체수요가 활성화되다가 2/4분기부터 7~8월까지의 서울의 재건축아파트 등 일부 서울지역에서는 투자적 자산수요까지도 회복되어 가격과 거래량 모두 급증하였는바, 일부 아파트단지의 경우 2006년 11월의 전 고점 수준까지 실거래가격이 상승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규모도 2009년 2/4분기부터는 급격히 늘어나면서, 변동금리대출과 연계된 CD금리가 상승하고 하반기 단기금리상승도 예상되는 등 가계의 채무부담능력 악화와 가계부채의 부실화 우려가 부각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09년 7월 6일부터 3차례에 걸쳐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정책을 발표하게 된다. 7월 6일에는 수도권 전 지역 고가주택에 대한 짧은 만기의 신규주택대출은 50%을 넘지 않도록 하는 은행의 담보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규모도  
2009년 2/4분기부터는 급격히  
늘어나면서, 변동금리대출과  
연계된 CD금리가 상승하고  
하반기 단기금리상승도  
예상되는 등 가계의 채무부담능력  
악화와 가계부채의 부실화  
우려가 부각되었다.

더욱이 금융위기 이후 비정상적으로 낮아진 금리가 경기회복과 함께 (출구전략의 시행 등으로) 금리가 정상적 수준으로 올라갈 경우 가계의 이자부담 급증에 따른 재무구조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와 가계발 금융위기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출인정비율(Loan-To-Value ratio, LTV)규제, 9월 4일에는 LTV뿐만 아니라 총부채상환비율(Debt-To-Income ratio, DTI)도 수도권 비투기지역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조치가, 10월 8일에는 보험사·저축은행 등 비은행금융기관에게도 은행권과 유사하게 LTV, DTI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요청하는 조치를 발표하게 된다. 그 이후 4분기 들어 기존 중고주택 거래시장은 다시 조정국면에 들어가 있는 양상이다.

특히 거시경제적으로는 GDP가 전년동기 대비 2분기에 -2.2%, 3분기에 0.9% 성장하는 등 경기회복의 징후가 가시화되었지만, 미시적으로 가계부문을 살펴보면 실질가구소득은 도시가구의 경우 4.7%나 감소하고 소비지출은 오히려 1.5% 느는 등 가계수지는 악화되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sup>1)</sup>. 근로소득 감소는 민간부문의 고용이 부진하고 임금인상이 억제되며 저소득계층의 적자 가구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가계부문의 회복세로 이어지기까지는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욱이 금융위기 이후 비정상적으로 낮아진 금리가 경기회복과 함께 (출구전략의 시행 등으로) 금리가 정상적 수준으로 올라갈 경우 가계의 이자부담 급증에 따른 재무구조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와 가계발 금융위기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008년 미국의 주택시장발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는 현재도 진행형이지만, 그 원인과 해법 또한 지난 1년여 간 전세계 경제학자들 및 정책당국자들 사이에서 활발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sup>2)</sup>. 최근 미국 주택시장에서 채무불이행(default) 및 주택차압(foreclosure)이 미치는 경제적 및 복지손실을 우려하여 자본이득공유모기지(SAM: Shared Appreciation Mortgage)와 같은 새로운 차원의 해법<sup>3)</sup>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기존 주택저당대출계약상의 대출금리를 하향조정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대주(貸主)가 채무를 낮추어주는 대신 차주(借主)들도 주택가격이 상승했을 때 이익의 일부를 포기하도록 하는 ‘부채-출자전환(debt-equity conversion)’의 아이디어가 주택금융부문에서도 제기되는 것이다. 이는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근원인 모기지 부실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주택압류 증가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과 모기지 관련 상품에 투자한 금융권의 부실이 해소되지 않아 문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 주택시장에서의 문제가 집값 급등기에 부풀려진 자산수요를 금융부문이 지원한 결과라고 결론짓는 것으로 미국의 경우 주택에 대한 자산수요적 동기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미국 주택발 금융위기하에서의 ‘지분공유’와 유사한 발상이 우리나라에서 2008년 초 서민 및 저소득자에 대한 자가보유지원 차원에서 ‘지

1) 통계청, 「2009년 3분기 가계동향」 자료 (2009. 11. 17일 발표)에 따르면 3/4분기 적자가구는 전체 가구의 28%이며, 소득 하위 30%는 절반 이상이 적자가구이며, 소득하위 20%는 부채가 금융자산보다 12배나 많고, 중하위 20~40%는 부채가 금융자산보다 11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됨.  
 2) Shiller(2008), 고바야시 마사히로 등(2009), Acharya & Richardson (2009.2) 등  
 3) Caplin et al(2008)

분형 분양주택제도'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점과 비교해 보면, 주택시장 분석 및 정책적 접근도보다 자산시장적 틀내에서 이루어지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2009년 미국은 주택발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 폭락을 겪으면서 주택시장 및 고용시장을 통해 민간소비여력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반면, 우리나라는 주택시장의 가격하락 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두드러지지 않았던 특징이 있다. 노영훈(2009)은 2007년 7월 비우량담보대출(Sub-prime loan) 사건 이후 미국, 영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택시장가격 변화를 해당국들의 주택가격 지수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주택지수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표 1>은 우리나라의 기존 주택가격지수인 KB(국민은행)가격지수와 2009년 말부터 공표하기 시작한 아파트실거래가지수(KAB지수)간 비교를 통해 두 지수가 주택시장가격 변화를 얼마나 상이하게 반영하는지를 정리하고 있다. 외환유동성위기가 가시화되기 전 2008년 6월, 국제금융위기의 효과로 최저점이었던 2008년 12월, 그리고 2009년 9월의 3개 시점에서의 기존 KB지수와 KAB실거래가지수를 비교해 보면 서울의 경우 -2.5%와 -18.9%, 2.3%와 23.7%, 수도권의 경우 -2.0%와 -15.1%, 0.5%와 16.3%로 변동률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 정책당국이 주택시장의 현황 및 향후 동향에 대한 판단에 혼란을 줄 정도였다. 특히 작년 2/4분기 이후에는 주택시장가격의 급등을 우려하여 DTI 등 주택금융규제 강화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본고에서는 이의 효과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주택금융시스템의 차이가 갖는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009년 미국은 주택발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 폭락을 겪으면서 주택시장 및 고용시장을 통해 민간소비여력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반면, 우리나라는 주택시장의 가격하락 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두드러지지 않았던 특징이 있다.

<표 1> 지수 산정결과 비교표 (실거래/KB)

지역	비고	'08. 6월	'08. 12월	'09. 9월	'08. 6월 대비	'08. 12월 대비
		(A)	(B)	(C)	'08. 12월 (B)/(A)	'09. 9월 (C)/(B)
전국	실거래	129.3	119.7	130.7	-7.4%	9.2%
	KB	100.8	100.0	100.7	-0.8%	0.7%
수도권	실거래	148.9	126.4	147.0	-15.1%	16.3%
	KB	102.0	100.0	100.5	-2.0%	0.5%
서울	실거래	144.1	116.9	144.6	-18.9%	23.7%
	KB	102.6	100.0	102.3	-2.5%	2.3%

자료: 국민은행 KB지수  
KAB실거래지수

제Ⅱ 절에서는 2009년 하반기에 이루어진 주택금융관련 규제강화조치가 주

금융기관의 수도권소재 아파트 담보대출 억제조치는 2009년 7월 7일부터 은행권을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소재 아파트(및 주택)를 담보로 신규로 대출받을 때 적용되는 LTV를 기존 60%에서 50%로 낮춘 것이다.

택시장에 미친 효과를 주택유형별 및 지역별로 가늠해 본다. 작년 중반부터 강화된 주택금융규제(DTI, LTV)가 부동산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살펴 보려면, 변경된 내용이 시장에 적용되어 시장참여자들이 어떠한 행동변화를 보이고 그 결과를 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난 시장지표들을 통해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우리나라의 독특한 주택시장의 구조적 특징들 예를 들어, 전세제도를 활용한 높은 레버리지의 가능성, 3년 미만 만기 위주의 주택대출의 단기성, 그리고 변동이자율과 원금일시상환 대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도 감안하여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주택시장 분석자들은 이러한 제도경제학적 특성은 말할 것도 없고 가계의 자산-부채 및 소득-지출 현황을 시계열적으로 연결한 기초자료조차 존재하지 않는 여건에 속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주로 주택시장을 대상으로 종합적이고 완결적인 실증분석보다는 특징적 사실과 기초자료에 근거한 직관적 시장효과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Ⅲ절은 우리나라 주택관련 가계대출의 증가추세와 이자부담의 위험성을 총량적으로 그리고 소득분위별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특히 미국과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시장의 제도적 요인(institutional factors)의 차이점을 조명하여 가계의 자산/부채관리 여력 및 금융시장 안정성문제를 검토한다.

## II. 주택관련 금융규제 강화와 효과분석

### 1. 2009년 하반기 주택관련 금융규제 강화조치

금융기관의 수도권소재 아파트 담보대출 억제조치는 2009년 7월 7일부터 은행권을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소재 아파트(및 주택)를 담보로 신규로 대출받을 때 적용되는 LTV를 기존 60%에서 50%로 낮춘 것이다. 적용지역은 이미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LTV가 40%로 적용되고 있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가평군 등 자연보전권지역, 연천군 등 일대 접경 지역, 안산시 대부동 등 도서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이었다. 이들 지역에서 만기 10년 이하이거나 담보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담보대출, 그리고 만기 3년 이하의 일반주택에 대해서 LTV가 60%에서 50%로 낮아졌다. 그러나 만기 10년을 초과하면서 6억원을 넘지 않는 아파트, 만기 3년을 초과하는 일반주택의 담보대출은 현행 60%가 그대로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표 2>에 정리된 바와 같다.

〈표 2〉 은행 및 비은행권 담보인정비율(LTV) 변경내용

만 기		변 경 내 용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포함)	주 택
3년이하		60%이내 → 50%이내	60%이내 → 50%이내
3년초과 ~ 10년이하		60%이내 → 50%이내	60%이내(종전유지)
10년 초과	담보가액 6억원초과	60%이내 → 50%이내	60%이내(종전유지)
	담보가액 6억원이내	60%이내(종전유지)	60%이내(종전유지)
10년 이상 분할상환 <sup>1)</sup>		70%이내(종전유지)	70%이내(종전유지)

주: 1) 1년 이내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매각하거나 자체 유동화계획이 있는 고정금리부 대출(거치기간 1년 이내, 총부채상환비율 40% 이하)을 말함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09. 7. 6)

2006년 11월 참여정부 시절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6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구입자금 대출시 40% DTI 규제정도보다는 완화된 기준이지만 대상지역 만큼은 그때에 못지않게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표 3〉은 2009년 9월 7일부터 시행되는 DTI 기준의 제2단계 리스크 강화조치를 정리하고 있다. 은행권이 수도권 비투기지역에 소재한 주택으로까지 확대한 신규주택담보대출 시 담보가치와 대출금액별로 차등화한 가구소득 대비 부채원리금상환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2006년 11월 참여정부 시절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6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구입자금 대출시 40% DTI 규제정도보다는 완화된 기준이지만 대상지역 만큼은 그때에 못지않게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

〈표 3〉 은행권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변화 내용

구 분		DTI 기본 비율				
		종 전	현 행			
			투기지역	투기지역	확대지역	
담보가치	대출금액			서울투기지역 외	인천·경기	
6억원 초과 (소유권 취득일로 부터 3개월 이내)	5천만원 초과	40%	40%	50%	60%	
	5천만원 이하	-	-	-	-	
6억원 초과 (소유권 취득일로 부터 3개월 경과)	1억원 초과	40%	40%	50%	60%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50%	50%			
	5천만원 이하	-	-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억원 초과	40%	40%	50%	60%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50%	50%			
	5천만원 이하	-	-	-	-	
3억원 이하	국민주택 규모 초과	1억원 초과	40%	40%	50%	60%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50%	50%		
	국민주택 규모 이내	5천만원 이하	-	-	-	-
		5천만원 초과	50%	50%	50%	60%
		5천만원 이하	-	-	-	-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09. 9. 4)

은행권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이후에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속되자 금융감독원이  
동종 업종인 비은행권에 대해서도  
리스크관리기준을 정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표 4>는 은행권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이후에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속되자 금융감독원이 동종 업종인 비은행권에 대해서도 리스크관리기준을 정하여 적용하도록 요청한 발표내용이다.

<표 4>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 DTI 기준

구분		DTI 기본 비율				DTI 가산 및 감면	
		중전 <sup>1)</sup>	현행				
			투기지역	투기지역	확대적용 <sup>2)</sup>		
서울 투기지역 외	인천·경기						
6억원 초과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5천만원 초과	40%(40%)	40%(40%)	50%(50%)	60%(60%)	없음	
	5천만원 이하	-	-	-	-		
6억원 초과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3개월 경과)	1억원 초과	40%(40%)	40%(40%)	50%(50%)	60%(60%)	• 고정금리 (+5%p)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50%(50%)	50%(50%)				
	5천만원 이하	-	-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억원 초과	40%(40%)	40%(40%)	50%(50%)	60%(60%)	• 분할상환 (+5%p)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50%(50%)	50%(50%)				
	5천만원 이하	-	-	-	-		
3억원 이하	국민주택 규모초과	1억원 초과	40%(45%)	40%(45%)	50%(55%)	60%(65%)	• 신용등급 (+5%p 또는 -5%p)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50%(55%)	50%(55%)			
		5천만원 이하	-	-	-	-	
	국민주택 규모이내	5천만원 초과	50%(55%)	50%(55%)	50%(55%)	60%(65%)	
		5천만원 이하	-	-	-	-	
		5천만원 이하	-	-	-	-	

주: 1. ( ) 밖은 보험사, ( ) 안은 상호금융사·저축은행·여전사  
 1) 감독규정(6억원초과,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내 대출) 및 금융회사 내규(기타대출)  
 2) 보험사의 DTI 최고한도는 서울 60%이내, 인천·경기 70% 이내로 제한됨(현재 투기지역은 60%이내)  
 상호금융사·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의 DTI 최고한도는  
 3억초과 아파트: 서울 60%이내, 인천·경기 70% 이내(현재 투기지역은 60%이내)  
 3억이하 아파트: 서울 70%이내, 인천·경기 75% 이내(현재 투기지역은 70%이내임)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09. 10. 8)

## 2. 주택관련 금융규제의 수요억제 효과분석

### 가. 주택금융규제의 일반적 효과

위에서 살펴본 LTV 및 DTI의 내용을 통해 주택금융수요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예상해 보자.

첫째, DTI규제가 서울 및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대출가능금액이 크게 줄어 기존 중고아파트 거래시장이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고 그 중에서도 가액기준으로 6억원을 초과하는 중대형아파트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컸다고 판단된다. 이는 다음 절에서 소득계층별 효과분석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둘째, 주택시장 중 금융규제가 적용되는 직접적 효과뿐만 아니라 적용에서 제외되는 유형의 부동산시장으로 수요가 전환되는 간접적 효과라고 할 수 있는 소위 '풍선효과'도 발생할 수 있게 되었다. 신규분양이나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집단대출에는 위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또 다세대나 다가구주택을 구입할 때는 소득과 관계없이 주택구입 시 대출받을 수 있으므로 이들 주택유형 및 소재지역에 대한 투자적 수요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가의 기존중고주택에 대한 투자적 수요는 크게 제한받는 반면, 대출부담이 적은 소형아파트나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다세대·다가구주택, 그리고 분양권이나 입주권 등으로 투자 수요가 전환될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된 셈이다. 소형아파트가 많은 서울 강북지역의 경우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적어 전세레버리지까지도 활용한 자산투자적 수요가 발생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올해 전세가격 상승과 맞물려 전세 세입자에서 구매자로 전환하는 수요도 발생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신규주택자금 대출규제는 기존 주택거래시장의 경우에도 거래의 연쇄적 효과 때문에 그 영향이 복합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사를 통해 규모를 늘려 주거서비스를 상향 교체하려는 대체수요자로서의 자가소유자는, 구주택이 금융규제에 영향을 받아 매수 수요가 줄어 매각이 지연된다거나 DTI 강화를 통해 대출가능금액이 줄어들 경우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다. 다만 신규분양아파트로의 이전을 염두에 둔 실거주 목적 청약 수요에는 영향이 미미할 전망이다.

넷째, 고가 중고주택에 대한 수요는 LTV보다 DTI규제가 더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LTV규제는 금융감독당국이 금융기관의 대출자산 건전성을

DTI규제가 서울 및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대출가능금액이 크게 줄어 기존 중고아파트 거래시장이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고 그 중에서도 가액기준으로 6억원을 초과하는 중대형아파트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컸다고 판단된다.

소득계층별로 대출가능한 금액상한이 도출되고 여기에 자기자금을 더한 금액이 구입가능한 취득주택상한으로 결정되므로 더욱 구속적인 추가 규제로서 작용하게 된다.

우려하여 리스크 증가지역에의 담보인정비율을 하향조정하여 운영하도록 요청한 것이지만, 개별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대출자산의 부실화를 대비하여 내부통제를 통해 보수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었던 제도인 것이다. 다만 개별 은행의 미시적 차원에서의 통제를 은행권 전체적으로 집계할 필요성이라든가, 은행권 대출에 추가하여 비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는 문제, 그리고 은행권이 거절한 담보대출을 비은행권에서 공격적으로 대출 확대하던 문제 등 때문에 감독당국이 일종의 통일적 기준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반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대출에 수반된 담보자산의 안전성 문제보다는 연체율 등 채무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춘 금융규제이다. 즉, '소득의 일정비율 이상을 총채무상환에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어서 주택금융대출에 있어서 대상물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취득자 또는 채무자의 경제적 처지나 입장을 반영하는 소득을 보겠다는 것이다.

소득계층별로 대출가능한 금액상한이 도출되고 여기에 자기자금(owner's equity)을 더한 금액이 구입가능한 취득주택상한으로 결정되므로 더욱 구속적인 추가규제로서 작용하게 된다. 논리적으로만 보면, 가계의 소득에 따라 신규주택취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차입활용도(leverage)가 달라지고, 또 여기에 자기자본 동원능력에 따라 가액별 신규주택수요가 차등화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 나. 주택금융규제의 소득계층별 세부효과

〈표 5〉는 우리나라에서 전국의 약 9,300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계층별 자산보유실태를 최초로 실시된 2006년 가계자산조사보고서상의 소득계층별 부동산 등 자산보유 및 부채보유, 그리고 소득을 정리한 표이다. 소득은 2005년 1년간 그리고 자산은 2006년 5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조사자료에서 추출한 기존의 가계조사 표본가구 8,531가구와 농가경제조사 표본가구 960가구를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가계부문 자산·부채·소득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는 최선의 미시원자료라고 할 수 있다. 비록 3~4년의 시점 차이에 따른 시가 등의 차이가 존재하고 주택유형에 국한된 대출 및 부채 현황이 특정화되지 못한다는 한계, 그리고 최근의 금융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적 구분을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는 있으나, 최근의 주택관련 금융규제의 효과가 소득계층별로 주택수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는 데는 유용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표 5〉 2006년 가계자산조사 소득분위별 보유주택자산가액 분포(가중치 10분위 구분)

(단위: 가구, 만원, %)

분위	표본수	경상소득 (연간)	보유부동산 평가액 <sup>1)</sup> (A)	주택자산 가액 <sup>1)</sup>	부동산구입 관련 부채액 <sup>2)</sup> (C)	부채비율 (C/A)	자가점유 가구 비율
1	673	522.66	9,884.27	5,846.82	606.08	6.13	66.57
2	779	1,142.28	12,646.38	6,332.51	523.35	4.14	61.87
3	810	1,644.65	12,275.71	7,274.17	722.43	5.89	58.15
4	868	2,108.93	13,660.10	6,997.95	935.68	6.85	58.41
5	855	2,575.89	14,198.95	8,497.75	1,389.09	9.78	62.22
6	825	3,032.75	15,491.95	10,473.22	1,588.58	10.25	64.97
7	838	3,528.43	20,825.91	13,101.28	2,368.79	11.37	66.11
8	857	4,123.84	22,460.96	15,060.55	2,677.51	11.92	71.65
9	855	5,007.00	32,303.84	19,830.51	3,436.17	10.64	70.99
10	915	8,436.54	62,229.56	34,109.03	5,565.79	8.94	81.31
전체	8,275	3,213.35	21,604.07	12,755.86	1,982.96	9.18	66.40

주: 1) 보유부동산평가액, 주택자산가액은 2006년 5월 31일 조사당시 시가기준

2) 주택, 건물, 토지 등 구입을 위한 부채

10분위 소득계층 분류 후  
최저소득계층인 1분위와  
2분위소득계층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소득이 올라갈수록  
자가점유가구비율 및  
주택소유비율이 증가하며,  
부동산구입관련 부채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다.

먼저 〈표 5〉를 통해 확인되는 몇 가지 특징적 사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분위 소득계층 분류 후 최저소득계층인 1분위와 2분위소득계층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소득이 올라갈수록 자가점유가구비율 및 주택소유비율이 증가하며, 부동산구입관련 부채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다. 소유주택의 시가는 파악되지만 주택구입 및 주택담보대출 등 주택관련 부채액이 따로 집계되지 않아 주택관련 부채비율은 계산할 수 없지만 대신 부동산자산 전체로 확대했을 때의 부채비율은 고소득계층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5〉의 소득10분위에서 제5분위와 제6분위 사이가 전 표본가구의 중위값에 해당하는데 경상소득으로 2,800여만원, 총소득 3,000만원에 해당한다. 또 제9분위 소득계층의 평균경상소득은 5,000만원 정도이므로 아래와 같은 모의 실험(simulation)을 해보기로 한다. 즉, 강화된 50% 담보인정비율(LTV)과 함께 추가된 50%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다른 부채는 없고 대출이자율 연 5.3%, 만기 15년, 원리균등상환방식인 신규대출에 미치는 효과를 연소득 3,000만원, 5,000만원, 그리고 1억원인 가계가 시가 6억원 및 9억원의 주택구입을 하려 할 때 얼마나 대출가능금액을 감소시킬지를 계산해 보면 〈표 6〉과 같다. LTV규제만 있었을 때에는 3천만원 소득가구가 6억원 주택구입시 최대 3억원까지 대출

DTI규제는 자산투자적 수요는 말할 것도 없고 주택거래의 연쇄효과를 감안하면 수도권 6억원 이상 고가아파트에 대한 실제 거주수요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가능하였으나 DTI규제까지 받게 되면 대출가능금액은 1억 5,500만원으로 줄어들어 구입자금의 25%밖에 대출할 수 없다. 9억원의 주택구입 신규담보대출의 경우에는 2억 9,500만원이나 줄어들어 구입자금의 17.22%만 은행대출에 의존할 수 있을 뿐이다. 연간소득이 5천만원으로 증가하면 DTI의 대출감소효과를 다소 완화되어 6억원 주택구입대금의 43.1%, 9억원 주택구입대금의 28.7%까지는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거의 최고소득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1억원 연간소득가구의 경우에는 DTI 추가규제에 의한 대출가능금액 감소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중간소득계층의 경우 자가점유자로서 주택규모를 늘려 이사하는 경우에도 기존 소유주택의 처분가액으로 6억원 신규주택의 경우는 절반 이상을, 9억원 신규주택의 경우는 70% 이상을 충당해야 가능해진다는 계산이다. 따라서, DTI규제는 자산투자적 수요는 말할 것도 없고 주택거래의 연쇄효과를 감안하면 수도권 6억원 이상 고가아파트에 대한 실제 거주수요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표 6〉 DTI 추가규제에 따른 소득계층별 대출가능금액 변화 추정

(단위: 만원)

연소득	연원리금 상환가능액	월원리금 상환가능액	대출 가능금액	시가 6억원		시가 9억원	
				가격대비 대출가능금액 비중	감소효과 (LTV 50% 대비)	가격대비 대출가능금액 비중	감소효과 (LTV 50% 대비)
3000만원	1,500	125	15,500	25.83	14,500	17.22	29,500
5000만원	2,500	208	25,835	43.06	4,165	28.71	19,165
1억원	5,000	417	51,670	86.12	-	57.41	-

주: DTI 추가규제에 따른 대출가능금액의 변화를 위해 LTV는 50% DTI도 50%인 경우를 상정하고, 다른 대출은 없고 만기 15년 대출이자율 5.3% 대출만기 15년, 그리고 원리금균등 상환방식을 가정하였음.

### Ⅲ. 가계의 주택관련 부채 및 주택금융시장의 제도적 특이성

#### 1. 가계부채와 금융시스템

우리나라는 2008년 2/4분기부터 가계부채발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그 핵심 원인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급증이 지적되었다. 이는 특히 CD금리에 연동된 담보대출금리부담은 출구전략 개시로 인한 정책기준금리 인상 이전에도 금융권의 가산금리 인상으로 증가하고 있었고, 실업 등 고용지표

회복이 지연되어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가 가시화되지 않는 경기상황에서 부채이자상환(debt servicing)에 애로를 줄 것이 명확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의 증가율이 소득증가율보다 높은 상황에서 정책당국은 가계자산구성 중 주택가격의 향방이 주택담보대출 연체, 금융기관부실대출 증가, 신용경색, 기업대출 경색,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연쇄효과의 가능성에 대비해야 했기 때문이다. 9년여 동안 지속되어온 저금리정책이 우리나라 금융부분의 자산확대 경쟁을 불러일으키면서 가계부분에서는 과다차입(excess leverage)과 저축률 저하의 현상으로 나타났다<sup>4)</sup>.

우리나라 가계부분 부채가 총량적으로 자산 대비 또는 가처분소득 대비 높은 수준인지를 시점간<sup>5)</sup> 또는 국가간 비교를 통해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두 시점간(2000년과 2006년) 가계부채의 소득분위별 변화를 통해 저소득층의 가계부채부담 급증을 우려한 박창균(2009)의 연구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가계의 주택관련 부채부담을 가계소득 및 향후 주택가격 변화와 비교하여 보다 세분화된 계층별로 살펴보는 미시적 접근방법을 통해 한계적 차입가구의 범위를 기늬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9년여 동안 지속되어온 저금리정책이 우리나라 금융부분의 자산확대 경쟁을 불러일으키면서 가계부분에서는 과다차입과 저축률 저하의 현상으로 나타났다.

〈표 7〉 가계 소득분위별 부채 보유 변화

(단위: 만원)

		부채보유 확률		평균 부채보유액	
		2000년	2006년	2000년	2006년
전체		0.47	0.85	837	3,639
소득 분위별	5분위	0.53	0.97	1,469	6,166
	4분위	0.58	0.94	1,107	3,290
	3분위	0.53	0.87	857	2,541
	2분위	0.46	0.70	622	1,943
	1분위	0.29	0.49	375	1,226

자료: 박창균(2009) 재인용.

〈표 7〉은 가계부채의 2000년과 2006년 두 시점간 변화를 소득분위별로 정리한 것이다. 모든 소득분위에 있어서 부채를 지고 있을 확률이 6년간 급격히 늘어났고 평균부채액도 3~4배로 늘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박창균(2009)은 저소득계층인 소득1분위의 부채가구비율이 29%에서 49%로 그리고 평균부채액도 375만원에서 1,226만원으로 3.27배 늘어나 부채상환부담이 우려된다는

4) OECD는 2009년 회원국 17개국 평균 가계저축률(=저축액/가처분소득)을 8.7%로 예상하면서 한국(5.1%)을 일본(3.3%) 노르웨이(4.6%) 덴마크(5.0%)에 이어 저축률이 낮은 국가군으로 분류하고, 2010년에는 회원국 최저치인 3.2%로 전망함.

5)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7년 말 가계신용 중 가계대출 총액이 185조원이었던 것이 2008년 말에는 648.3조원으로 3배를 넘는 수준으로 늘었고, 명목GDP총액 대비 가계대출총액의 비율도 37.7%에서 63.3%로 난 것은 11년 기간중 제도권 주택금융이 본격화된 결과이지 가계의 행태변화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음.

최저소득분위 이외의 소득계층에서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한 가구들의 가계운영 건전성은 향후 자기가 소유한 주택의 지역적 주택시장가격 움직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저소득계층에서 가계부채를 지게 될 가능성과 가계부채액이 급증한 정도보다도 그 상위 소득계층에서의 부채가구비율 및 부채액 증가가 훨씬 더 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된 가계부채인 주택담보대출이 향후 경기 및 주택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금융시스템 및 일반 거시경제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오히려 그 위의 소득분위에 속한 가구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최고소득분위인 제5분위의 경우 조사가구의 97%가 부채를 지고 있고 평균부채액도 1,469만원에서 6,166만원으로 4.2배로 늘어나 있는 실정이다. 가계대출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2002년 이후 대체로 50~53% 범위를 유지하고 있는데<sup>6)</sup> 소득분위별로 분류할 수 있다면 저소득층보다는 상위소득계층에서 그 비율이 더 높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sup>7)</sup>. 그렇다면 최저소득분위 이외의 소득계층에서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한 가구들의 가계운영 건전성은 향후 자기가 소유한 주택의 지역적 주택시장가격 움직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주택관련 대출률(담보인정비율)이라는 한 가지 지표만을 동등한 기준(on equal footing)에서 비교하지 않고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전 금융권 주택대출자산 부실 가능성을 낮게 판단하는 것<sup>8)</sup>에는 주의를 요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비우량담보대출(Sub-prime loan)의 대출률 평균이 94%인데 우리나라의 은행권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은 48.8%이니 대출건전성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는 무리라는 판단이다. 미국과의 비교시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비우량담보대출뿐만 아니라 Prime이나 Alt-A loan도 포함한 대출률을 비교대상으로 삼아야 했고, 또 평균 LTV가 이렇게 높을 수밖에 없는 미국주택저당대출시장의 구조적 요인들도 이해했어야 한다. 즉, 1차 주택모기지대출들을 집합(pooling)하여 유동화시킨 증권발행과 이를 제2차 시장에서 소화시키고 나면 최초 대주(lender)는 장부에서 위험성 자산을 떨어버렸으니 더 이상 위험자산이 아니다. 결국 미국에서는 유동화 및 파생상품화를 위해 필요한 3~6개월의 기간 동안만 5~10%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면 최초 대출기관(loan initiator)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으니 90~95%까지의 LTV 수치를 보일 수 있던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이나 연간 새로이 발생하는 순증액 중 얼마나 유동화되어 최초 대출기관의 위험성 자산이 제거되었는지를 파악해 보아야 할 것이다. <표 8>상의 2008년 말 우리나라 주택저당채권(MBS)발행실적은 5.5조원 수준이고 <표 9>상의 2008년 말 주택담보대출잔액이 339.6조원이므로 대체로 유동화율은 2% 미만의 수준으로 최초 대출기관이 대부분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담보가치저하의 위험부담을 지속적

6) 예금은행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가계대출 대비 비중은 60%에 달함.  
 7) 이는 가계의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 능력을 판단하여 대출가능금액을 제한하는 DTI와 같은 장치의 효과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소득가구가 차입을 위한 담보용 자산 제공능력이 고소득가구에 비해 제한적이고, 저소득계층의 경우 제 금융권보다는 제2금융권을 통한 대출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임.  
 8) 참고문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http://www.fss.or.kr/>) 등 참조.

으로 지니고 있는 구조이다.

〈표 8〉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실적

(단위: 억원)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3분기까지)
주택금융공사	30,161	38,611	17,531	21,884	26,480	65,518
은행	20,305	7,695	20,135	20,902	28,913	6,268
할부금융사	-	-	-	1,523	-	
합계	50,466	46,306	37,666	44,309	55,393	71,786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08년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339.6조원이므로 대체로 유동화율은 2% 미만의 수준으로 최초 대출기관이 대부분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담보가치저하의 위험부담을 지속적으로 지니고 있는 구조이다.

〈표 9〉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현황

(단위: 조원, %)

	2004년말	2005년말	2006년말	2007년말	2008년말	2009년 6월말
주택담보대출(A)	225.5	258.5	292.3	307.9	339.6	n.a.
민간부문주택담보대출총액	216.8	243.2	275.3	288.5	317.4	333.5
일반은행	169.9	190.2	217	221.6	239.7	254.4
보험사	12.2	13.6	14.3	16	18.2	17.6
비은행금융기관	34.7	39.4	44	50.9	59.5	61.5
저축은행	3.8	4.4	2.2	2.2	2	1.8
상호금융 <sup>1)</sup>	23.7	26.7	31.8	36	41.2	43.1
여전사	-	0.2	0.8	1.1	1.4	1.3
새마을금고	7.2	8.1	9.2	11.6	14.9	15.3
공공부문주택담보대출총액	8.7	15.3	17.0	19.4	22.2	n.a.
국민주택기금	5.8	8.5	10.6	11.2	11.5	n.a.
한국주택금융공사 <sup>2)</sup>	2.9	6.8	6.4	8.2	10.7	n.a.
가계대출총액(B)	449.4	493.5	550.4	595.4	648.3	661.5
명목 GDP(C)	826.9	865.2	908.7	975.0	1023.9	
B/C	54.3	57.0	60.6	61.1	63.3	
A/B	50.2	52.4	53.1	51.7	52.4	
A/C	27.3	29.9	32.2	31.6	33.2	

주: 1) 상호금융은 신협, 농협, 산림조합(단, 신협은 '06년도 이후부터 포함)

2) MBS발행 기초자산과 매입보유 자산의 잔액 합계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월보』

상이한 제도를 갖고 있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단순대출률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금융권의 주택대출자산 건전성이 가격 하락시 크게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안심하기보다는, 전세와 같은 후순위 채무를 감안하면 가격급락 시 '깡통주택' 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야 할 요인이다.

설혹 금감원의 관점에서는 (감독대상) 금융기관들의 대출자산 건전성이 가장 큰 관심사라 하더라도, 금융감독당국에서는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보험회사에서의 추가대출까지 포함한 해당주택별 누적대출합계액과 대출시점 및 현 시점 대출률을 모니터링하고 있지 못하다. 또 주택금융대출규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2006년 이전까지의 주택대출까지 포함하여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지도 않다.

오히려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 가능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택관련 가계부채의 심각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주택금융시장의 제도적 특이성을 감안하여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비공식 주택금융인 '전세제도'의 특이성 때문에 금융권이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한 근저당액에 세입자의 전세보증금까지 추가할 경우 70~80% 이상 수준으로 상승할 수 있다. 즉, 자가점유하지 않는 주택소유가구(non-occupying house owner)의 자기자본(equity) 비율은 20~30%를 넘지 않아 자가입주율이 낮은 신규입주 아파트단지의 시세가 20% 이상 급락할 경우 거의 0에 가까울 수도 있다.

이는 상이한 제도를 갖고 있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단순대출률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금융권의 주택대출자산 건전성이 가격 하락시 크게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안심하기보다는, 전세와 같은 후순위 채무를 감안하면 가격급락 시 '깡통주택' 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야 할 요인이다. 물론 주택소유가구가 자기자본(owners' equity)이 소멸될 정도로 주택가격이 하락한다고 해서 바로 채무불이행행위로 이어져 매물화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감독대상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자산의 건전성 관점뿐만 아니라 '깡통주택 실현 가능성' 및 가계부실문제로 바꾸어 살펴본다면, 한국의 전세제도에 기인한 '전세보증금'도 후순위채권으로 감안해야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 2. 미국과 우리나라의 주택금융대출제도의 차이점과 전세제도

먼저, 우리나라의 주택대출은 엄밀한 의미에서 미국에서의 주택저당대출(home mortgage) 개념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제1차 주택저당대출의 경우 용도가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하여 해당주택을 담보로 실행되는 저당대출이고, 우리나라의 주택대출은 대출채권의 담보물이 주택이지만 하면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가계)대출로서 사용용도는 담보주택 이외의 타 부

동산취득, 사업자금, 교육비 등 가계가 필요로 하는 모든 대출용도를 망라하고 있다. 따라서, 영미문헌에서의 ‘residential mortgage’ 번역은 ‘주택저당대출’이라는 표현을, 그리고 우리나라 주택관련 대출은 전세자금대출을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이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이다.

미국의 저당대출은 많은 경우 상환청구불가담보부채(Non-recourse mortgage debt)로서 부동산 물건이 저당으로 잡혀 담보로 제공되지만 차주는 인적인(personal) 상환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특성을 갖는다. 즉, 주택저당대출자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더라도, 대주(lender)는 담보인 주택을 압류하여 처분대금에 한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대출잔액에도 못 미칠 정도로 하락한다면(Underwater mortgage) 담보가치와 대출잔액 간 차액은 그대로 대주에게 손실이지만 차주는 담보물건만 포기하면 더 이상의 상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따라서, 상환청구불가담보부채(Non-recourse debt)는 통상 대출률(Loan-To-Value ratio)이 50~60%를 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해당 부동산이 ‘과도한 담보(over-collateralization)’를 제공하는 경우로 대주가 이러한 대출로부터의 손실위험부담을 높게 지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에서 많이 활용되는 근저당은 채무불이행 후 차압되어 경매나 공매될 경우 (물권으로서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지만 채무잔액을 경매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경우 차주의 대주에 대한 채권·채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이러한 제도적 차이는 미국에서 주택가격 하락기에 차주의 채무불이행 성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전세제도라는 특이한 임대차 형태가 존재하여,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대가로 임대주에게 전세금을 제공하였다가 계약기간 경료 후에는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sup>9)</sup>.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소유자가 대출금 잔액 이하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sup>10)</sup>에 의해 보호받는 또 다른 채권자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채무불이행이라는 결정을 선택하기 쉽지 않게 된다.

#### IV. 맺음말

주택발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주택모기지를 포함한 CDO(Collateralized

영미문헌에서의 ‘residential mortgage’ 번역은 ‘주택저당대출’이라는 표현을, 그리고 우리나라 주택관련 대출은 전세자금대출을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이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이다.

9) 형식주의하의 현행 민법은 등기를 한 전세권에 한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있고, 등기하지 아니한 채권적 전세권은 민법상의 임차권으로서 임대차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정책적 보호를 받고 있음.

10)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같은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받게 되므로 후순위근저당권자의 법원 임의경매신청을 제약하는 요인임.

최근 DTI규제 후 주택가격 변화가 눈에 띄는데 이는 주택가격 동향이 주택금융에 더 반응도가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부동산은 금융이다' 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Debt Obligation) 등 파생상품 투자손실에 대한 우려로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 보증 및 자본확충을 통해 신용경색(Credit crunch)을 극복하려고 하였다. 우리나라는 건설회사 부도에 따른 부동산PF대출 부실 및 ABCP 문제가 1, 2차 금융기관에 미칠 우려가 높았으나, 건설사 및 이들에 대한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은 그다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상황에 대한 판단(assessment)에 있어서 정책결정당국이 최우선으로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가격 변동성이었고, 특히 특정지역내 단기간 가격급등에 대한 정부대책들은 대부분 직접규제, 부동산관련 조세, 그리고 주택금융을 정책수단으로 (순서적으로) 사용해 왔다.

우리나라 주택금융의 역사는 1998년 은행대출규제가 완화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1981년 이후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공공주택건설금융 이외에는 제도권 금융기관에 의한 주택구입수요자금융이 전무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98년 외환위기 이전의 우리나라는 대체로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시장 틀 내에 있었으나, 2000년대 이후 자산수요적 주택수요가 주택금융의 확대와 함께 주택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환경 변화를 겪게 되었고 시장에 대한 상황판단이나 정책대응 또한 이러한 요인들에 보다 주목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특히, 최근 DTI규제 후 주택가격 변화가 눈에 띄는데 이는 주택가격 동향이 주택금융에 더 반응도가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부동산은 금융이다' 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작년 중반 이후 강화된 주택대출 금융규제 강화조치는 참여정부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등 온갖 조세정책수단을 동원하고도 주택가격 안정을 달성하지 못하다가 2006년부터 채택한 주택금융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방법론의 내용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정책이 시행되는 두 시점의 우리 경제 및 부동산시장이 처한 상황에는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효과가 동일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세계적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서울 강남의 재건축 중심 중고주택 가격상승을 대출기준을 강화하여 자산투자적 수요를 억제하는 데에는 당분간 유효할 전망이다. 다만 감독기관이 정한 획일적인 소득기준 대출률 지침(guideline)인 DTI 기준의 준수를 강요하는 것은, 개별 민간금융기관들의 여신심사 능력의 부족에 기인한다 하더라도 시장내 가격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다. 주택금융대출시장에서 차등대출조건이라는 가격 차등화를 통해 보다 유연한 서비스시장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2010년 경제여건 변화와 부동산관련 규제완화, 각종 개발계획시행 및

토지보상, 그린벨트 해제 등의 요인들을 전망한다면 금융규제 의존적 부동산정책 수단화에 안주하기보다는 큰 틀의 부동산관련 세제 및 금융 그리고 공급부문의 제도를 다시 설계할 시점이라는 판단이다. 미국의 주택시장발 금융위기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미국의 주택관련 세제가 기여한 부분이나 최근 해법으로 제시되는 자본이득공유모기지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세제적 애로사항 등에 대해 검토하면서, 우리나라 주택관련 세제 중 시장현실과 괴리된 부분들에 대해 정비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KIF**

금융규제 의존적 부동산정책 수단화에 안주하기보다는 큰 틀의 부동산관련 세제 및 금융 그리고 공급부문의 제도를 다시 설계할 시점이다.

### <참고문헌>

- 고바야시 마사히로 · 야수다 유미코, 『서브프라임문제와 미국의 주택금융시장』, 주택산업연구원, 2009. 9.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노영훈, 「주택가격지수를 이용한 국제적 주택시장 동향분석의 가능성」, 『재정포럼』 2009. 12월호, 한국조세연구원 pp. 43~63.
- 노영훈, 「DTI등 금융규제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Focus』 2009. 11월호, 한국감정원 pp. 10~16.
- 박창균, 「가계부채의 추이와 금융불안」, 한국경제학회 정책심포지엄 발표자료, 2009. 7. 15.
- Cho, Man, “Sub-prime Mortgage Market: Rise, Fall, and Lessons for Korea”, 건국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 특강자료, 2008.4.
- Viral V. Acharya and Matthew Richardson, *Restoring Financial Stability: How to Repair a Failed Systems*, Wiley, 2009.
- Caplin, Andrew, Noel B. Cunningham, Mitchel L. Engler, and Frederick Pollock, “Facilitating Shared Appreciation Mortgages to Prevent Housing Crashes and Affordability Crises,” Hamilton Project Discussion Paper 2008-12.
- Shiller, Robert J., *The Subprime Solution: How Today's Global Financial Crisis Happened, and What to Do about It*,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8.

# 불법취득 정보의 구매와 탈세자 처벌 :

독일 과세당국과 스위스 은행들 사이의 최근의 갈등이 던지는 정책적 시사점



김유찬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세무대학원 교수

## I. 스위스 은행의 고객정보가 담긴 불법복제 CD의 구매 제한

### 가. 사건의 발단

2010년이 시작되면서 한 스위스 은행의 1,500여명의 고객에 대한 정보가 담긴 CD를 250만유로에 사라고 독일의 노르드라인베스트팔렌주 주정부 과세당국에 제안한 사람이 있었다. 이 자료는 그가 불법적으로 취득, 즉 복제한 자료였다. 여기에는 과세당국에 신고되지 않은 독일 거주자들의 과세소득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어서 독일 과세당국에 약 2억유로 정도의 세금 추징을 가능케 해주는 자료라고 평가된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독일의 다른 주정부 과세당국에게도 유사한 정보 구매제안이 잇달았다.

### 나. 독일정부의 대응과 독일 국내의 반응

현재 독일의 연립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기민당

(CDU)과 자민당(FDP)은 처음에는 이 정보의 구매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특히 자민당은 격렬하게 반대함으로써 당의 지지기반인 중산층 및 기업인들을 보호하는 정파적인 태도를 노골적으로 보여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자민당의 일부 온건파들도 이러한 정부의 구매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고 탈세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세무조사 강화와 스위스 정부와의 협상을 통한 정부간 해결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러나 기민당 일각에서 동 CD의 구매에 찬성하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좌파인 사민당(SPD), 녹색당(Gruene), 좌익당(Links)은 구매에 찬성하였고 사민당(SPD) 대변인은 스위스 등의 은행이 독일 고객을 겨냥하여 탈세를 도와주고 유도하고 있다고 격렬하게 비난하였다. 또한 독일의 경찰노조 대표는 CD 구매에 반대하는 것은 개별 주정부들이 조세형사범들이 안주하는 안전지대를 설치하는 것이라며 개별 주정부들이 공동으로 나서야 한다고 하였다. 독일의 일반여론은 약 59%가 찬성하고 약 37%는 훔친 정보를 구매하는 일은 옳지 않다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sup>1)</sup>. 독일의 개별 주정부내에서 연정을 이루는 파트너 정당들 간에도 의견 대립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1) FR, 2월 5일

## II. 스위스 은행의 고객비밀유지 조항과 스위스의 반응

### 가. 스위스 은행의 자산 운용 규모

자산가가 자기 자산을 세계 어느 곳의 금융기관에 운용해달라고 위탁할 때 지금까지 가장 선호되던 금융기관이 스위스의 은행들이며 이 은행들이 관리하고 있다. 전 세계 운용자산의 약 3분의 1 이틀 스위스 은행이 관리하는 운용자금의 규모는 2008년 기준으로 전 세계의 금융기관에서 관리운용되는 자산 약 7조 2천억달러 중에서 약 27%인 3조 4천억달러에 달한다. 이 중 약 1조 9,000억달러 정도<sup>2)</sup>가 외국자산으로 알려져 있고 그 가운데 10% 정도는 독일에서 온 자산이라고 추산되고 있다<sup>3)</sup>.

〈표 1〉 세계 자산관리시장에서의 비중

(단위 : %)

지 역	세계시장에서의 비중
스위스	27
영국, 더블린, isle of man 등	24
룩셈부르크	14
캐리브, 파나마	12
기타	23

자료: FTD, 2월 8일

이와 같이 스위스는 전 세계의 자산의 큰 부분을 운용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스위스의 국민소득 창출에서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은 편이다. 이웃나라인

독일에서 금융산업은 GDP의 약 4%를 차지하는 것에 비하여 스위스에서는 이 비중이 12%에 달한다. 이렇게 스위스에서 금융산업의 비중이 크고 전 세계의 운용자산이 이곳으로 몰리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스위스 은행의 고객비밀유지조항 때문이다. 2002년 스위스와 EU국가들 사이에 이루어진 자유로운 인적교류에 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 약 20만명 정도의 교육수준이 높은 독일인들이 스위스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도 비밀유지 조항과 무관하지 않는다<sup>4)</sup>.

### 나. 스위스 은행의 고객정보유지조항의 역사

스위스 은행들의 고객비밀유지조항은 은행법 제47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은행 종사자가 고객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스위스의 은행들은 이 조항의 도덕적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이 조항이 역사적으로 제3제국 시절 히틀러에게 추척 당하는 유대인들의 스위스 은행 내 자산을 보호해 주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다 정통한 역사적 연구에 의하면 이는 단지 동 조항의 부산물에 지나지 않으며 동 조항은 그전에 이미 다른 이유에서 도입되었다고 한다. 20세기 초까지 국제자산시장에서 의미가 없었던 스위스가 1929년 이미 세계에서 국제자산시장에서 두 번째 규모의 자리를 차지한 것은 1919년 독일이 제 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며 전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막대한 재정수입이 필요하였고 이를 두려워한 독일 내 자산가들이 자산을 스위스로 이동시킨 결과이다. 이 과정에서 스위스의 은행들이 자산의 불법적 월경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5)</sup>.

동 조항은 1935년에 최초로 도입되었는데 이는 당시의 세계경제 위기 상황에서 프랑스와 독일의 과세당국이

2) Spigel, 2월 8일자 18쪽.

3) FR, 2월 9일.

4) FR, 2월 9일.

5) FR, 2월 9일.

스위스에 숨겨진 자국 국민들의 자산과 소득에 대하여 과세정보를 캐내기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고 결정적으로는 1932년에 발생한 취리히 칸톤은행의 한 직원이 독일의 Singen 지역 세무서에 400여명의 독일고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사건과, 같은 해 바젤은행에 가입되어 있던 2,000여 프랑스 고객의 정보가 프랑스 경찰의 손에 넘어간 일명 “파리스캔들”이라는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sup>6)</sup>. 스위스는 이에 자국의 은행에 대한 외국고객의 선호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시의 재무성 장관이 1933년 1월 26일(히틀러가 독일에서 정권을 잡기 4일 전) 동 고객비밀유지조항을 입안하였고 이 법안은 1934년에 의회를 통과하고 1935년에 시행되었다<sup>7)</sup>.

#### 다. 스위스 은행과 정부, 그리고 국민들의 반응

스위스 은행의 이 고객비밀유지조항으로 인하여 스위스는 이웃나라들과 항상 긴장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스위스인들은 이 조항의 유지를 원하고 있다. 취리히 대학의 조사에 의하면 72%의 스위스인들이 이 조항의 유지를 원하고 있다고 한다<sup>8)</sup>. 대다수의 스위스 사람들은 이 비밀유지조항과 관련하여, 이웃나라에서 탈세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조장하고 보호하는 효과에 대하여 그다지 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의 스위스인들은 은행의 비밀유지조항을 알프스의 융프라우 봉이나 스위스 시계, 에멘탈러 치즈처럼 스위스와 동질화시키는 경향도 있다. 물론 일부 스위

스인들은 이 조항의 불법성을 의식하고 있다.

스위스가 보인 가장 극단적인 반응 중의 하나는 스위스의 우익정당인 스위스 민중당(SVP)의 정치가가 독일 정부가 CD를 구입하는 경우 스위스가 가진 독일의 은행 고객정보 중에서 독일의 공직자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자고 협박겸 제안을한 것이다. 그는 독일 많은 수의 공무원들과 재판관들이 스위스의 은행에 비밀계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정당은 이 스위스 은행의 고객비밀유지조항에 대하여 특히 비판적이었던 독일 정당의 당직자들과 노동조합의 대표들을 공개대상 공직자에 포함시켰다. 스위스는 스위스의 법질서를 존중하지 않고 부당취득된 과세정보를 구매하려는 독일 정치가들의 이중적 모랄을 단죄하기 위하여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스위스의 사회민주당(SP)쪽에서는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지지하지 않으며 결국 의회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여 법제화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하여 독일의 정치권에서는 주로 야당 측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며 매우 필요한 정보라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야유적인 논평을 하였다. 다른 한편 고객의 정보에 대하여 은행이 비밀을 유지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스위스에서 어떻게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였다<sup>9)</sup>.

스위스에서 이러한 강력한 소리들에 묻혀져 있기는 하지만 또 다른 현실적인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기도 하다. 스위스 은행들의 행위가 이웃나라에서 탈세가 일어나는 것을 조장하는 행위로 연결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향후 스위스 은행은 이 비밀유지조항이 없이 그리고 Black Money 없이 생존할 수 있어야 하며 스위스가 이 조항을 앞으로 계속 유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다. 이웃나라 독일에의 과세당국이 불법적인 CD를 구매하는 것을 규탄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원인 제공을 스위스가 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스위스의 이

6) FAZ, 2월 16일

7) FR, 2월 9일

8) FR, 2월 9일

9) FR, 2월 15일

미지를 위해서도 앞으로는 스위스 은행의 비밀유지조항을 포기하고 이웃나라들의 과세당국에서 요구하는 과세정보 협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 III. 쟁점사항

#### 가. 찬반의견

독일에서는 스위스 은행이 갖고 있는 고객에 대한 자료를 은행 종사자가 불법으로 복제하여 독일의 과세당국에게 판매를 제한한 것에 대하여 국가가 긍정적으로 응하는 것이 합당한가, 즉 합법적인가에 대하여 의견이 크게 갈렸다. 부당하게 취득한 정보를 국가가 구매하는 경우 국가가 범죄자와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되고 이렇게 취득한 정보는 법정에서 증거력이 문제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국가가 불법적으로 취득된 자료를 구매하는 데 대한 반대의견은 국가의 윤리적 정당성에 무게를 둔다. 국가는 윤리적으로 정당하지 않으면 기타의 폭력집단과 구별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국가는 어떠한 유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켜야 하며 부당한 경로로 취득된 자료는 법정에서 증거력을 가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찬성의견은 국가가 동 자료를 구매하여 탈세자의 행위에 대하여 제재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탈세자를 옹호하여 더 커다란 불의를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는 입장이다. 독일의 재무부 장관 쇼이블레는 조세의 형평성, (사회)국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그리고 과세법률주의의 법집행 측면에서의 실현을 위하여 동 자료의 구매와 탈

세지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 나. 탈세과정에서의 스위스 은행의 역할

스위스의 은행들은 이웃나라 고객들의 자산을 관리하면서 그들 나라의 과세당국에 대하여 굳게 비밀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이들 고객들의 자산이 과세당국의 눈을 피하여 스위스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독일의 과세당국은 특히 세계에서 가장 고객자산 관리 규모가 큰 스위스 은행 UBS가 스위스에 가장 인접한 독일의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서만 1만 5천여 고객을 관리하면서 특히 이러한 행위에 적극적이었던 점에 주목하고 여러 명의 UBS 직원들에 대하여 탈세 조력에 대한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다<sup>10)</sup>.

#### 다. 스위스와 EU 국가간의 은행정보제공 협상

최근의 금융위기는 재정이 악화된 선진국들의 과세당국의 역외 탈세 및 조세회피자들의 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하는 계기가 되었고 미국과 독일 등 국가들은 대표적 조세회피국인 스위스,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등의 은행들에 대하여 은행비밀보장법 완화 및 고객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요구하고 국제수준의 고객정보 교류법안의 마련을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철저히 비밀주의 원칙을 지키던 이들 은행은 국제사회의 압력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자 해외고객의 이탈을 우려하여 반대하였으나 스위스의 UBS는 최근 소송으로 인하여 미국 국세청(IRS)에 조세회피처 제공 혐의로 큰 액수의 벌금을 지급하게 되는 사태에 이르자 마침내 미국에게 미국인 부유층 고객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하였고 리히텐슈타인도 영국 정부에 조세회피 혐의자에 대한 정보제공 협조를 약속하였다. 독일정부에서도 대연정의 중

10) FR, 2월 6일

료와 함께 자리에서 물러난 Steinbrueck 재무성 장관을 중심으로 스위스를 줄기차게 압박하였고 스위스는 결국 12개 주요 OECD국가들에게 탈세혐의자에 대한 정보 제공과 관련한 조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sup>11)</sup>.

### 라. 쟁점사안의 정리

이 사안은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은행의 자료를 복제한 은행 종사자의 행위가 형법적으로 제재의 대상인가 하는 점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은행 종사자가 제공하는 비밀자료의 성격과 이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의 적법성이다. 자료의 성격으로 보면 그 자료에 담긴 비밀정보는 전적으로 형사범 처벌대상과 관련한 정보이다. 마피아가 뇌물을 제공한 정치인들의 명단과 같은 것으로 상식적으로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정보는 비밀을 보호해줄 가치가 없다고 보고 이런 비밀을 공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범법행위로 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양보하여 이러한 불법적 정보도 법이 보호해줄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비밀을 유출하여 과세당국에 제공한 은행 종사자에게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할 다른 근거가 있다. 즉 이를 통하여 다른 더 큰 중요한 가치를 지키는 결과가 되므로 비밀정보를 유출해도 되는 예외가 허용된다는 것이다. 은행의 이해와 과세당국이 정당한 세금을 거두고 탈세자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게 된다는 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이해를 비교하면 법체계가

존중해야 할 더 큰 이해와 가치가 무엇인지 자명해진다.

이 과정에서 은행 종사자가 대의를 위하여 취한 행동이 아니라 부당한 행위를 통하여 모종의 대가를 취득하기 위한 개인적 동기에서 취한 행위라 하더라도 것이므로 이 행위에 대한 판단을 다르게 할 필요는 없다. 은행 종사자의 개인적인 동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더 중요한 가치인 법의 정의가 서느냐 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한번 더 양보하여 은행 종사자의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이로부터 받은 정보를 과세에 활용하는 독일 과세당국의 행위가 국가를 만드는 공범으로 불법인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정당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과세당국은 공적인 기관으로서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하여 모든 종류의 조사를 수행할 의무가 법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여기에 독일 과세당국은 과세정보가 담긴 CD를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사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다<sup>12)</sup>.

## IV. 해결방안과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점들

### 가. 독일정부의 결정

독일의 메르켈 수상과 쇼이블레 재무부 장관, 그리고 동 CD의 구매를 제안받은 노르드라인베스트팔렌주 정부 당국의 의견은 동 CD를 구매하는 것으로 의견을 일

11) 이 조약들은 그러나 양자간 조약으로서 대부분 조약이 조문은 거의 유사하나 그 실질적 효력은 다소 다르도록 체결되었다. 예를 들어 덴마크는 탈세혐의자의 자산을 관리하는 스위스내 관리인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를 제시하여야 스위스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스위스/덴마크간 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것에 비하여 스위스/프랑스간 조약에서는 프랑스가 이러한 이름과 주소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이를 제시할 수 있으나 동 자료가 없어도 스위스에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Spiegel, 2009년 9월 7일자, 93쪽.

12) Tonio Walter, Regensburg 대학교 형법학 교수, in: FR, 2월 16일.

치를 보았다. 이에 대한 법적인 논리는 밝히지 않고 있으나 다만 내부적인 법적인 검토는 끝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 나. 과거 사례: 리히텐슈타인 공국의 탈세자 정보 구매

독일 정부는 이미 같은 사례를 수년전 경험한 바 있었다. 독일연방정보부(BND)는 2002년에 리히텐슈타인 글로벌 프리스트 금융회사(LGT)의 직원으로부터 450만유로를 지불하고 리히텐슈타인 금융기관에 계좌를 갖고 있는 독일 고객들의 금융정보를 구매하여 700여명의 탈세자 정보를 파악하고 추징을 한 바 있었다.

#### 다. 구매의 주체인 독일의 국세청의 구조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독일의 3개 주정부에 스위스 은행고객정보가 담긴 CD의 구매하라는 제안이 들어왔으며 그 중 노르드라인베스트팔렌주는 이 CD를 구매하기로 이미 결정하였다. 바이에른주와 바덴뷔르템베르그주는 여전히 고려중이나 그 중 바덴뷔르템베르그주는 법적인 문제를 고려하되 사는 방향으로 의견이 기울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바덴뷔르템베르그주, 바이에른주, 그리고 헤센주 이들 남부 3개주는 경제적으로 상황이 좋으며 보수적인 기민당이 주정부를 구성하고 있어서 중산층과 기업가들에게 우호적이고, 세무조사의 강도가 북부의 주들에 비하여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매를 공식적으로 결정한 노르드라인베스트팔렌주 정부는 이 CD를 250만유로에 구매하기로 하였고 구매협상은 제공자의

요청으로 프랑스에서 진행되었다. 판매자는 2억유로의 세금 추징이 가능한 정보라고 평가하였고 과세당국에서도 평가 결과 그 정도의 정보 가치가 있는 것으로 시인하였으며 자료의 출처는 Credit Suisse은행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sup>13)</sup>.

사전에 노르드라인베스트팔렌주 정부는 법률적인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결과는 동 CD의 구매에 대하여 과세당국에 대한 책임 추궁이 불가능하고 동 자료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구매와 관련하여 어떤 식으로 대금을 지급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는 판매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초 판매자는 구매사실을 비밀에 부쳐 줄 것을 원했으나 이는 가능하지 않았으며 현재 한가지 확실한 것은 노르드라인베스트팔렌주정부는 250만유로를 지급하면서 10%의 일괄세율로 원천과세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sup>14)</sup>.

#### 라. 비용 부담

이 구매금액 250만유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는 Koenigsteiner Key에 따른 것으로 연방과 주정부가 공동의 과세에 대한 비용분담의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어떻게 나누어 부담하는지를 미리 정하여둔 기준이다. 이 기준에 따라 다시 주정부 간에는 인구와 세수입에 따라 비용을 배분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노르드라인베스트팔렌주는 21.3%를, 그리고 바덴뷔르템베르그주는 12.8%를 부담하게 된다<sup>15)</sup>.

#### 마. 연방과 주정부 간의 견해 차이와 세무조사의 강도

독일의 연방과 주정부 그리고 주정부들 간에 이 탈세자 정보를 구매해야 하느냐에 대한 결정에서 큰 차이를

13) FR, 2월 5일.

14) Spiegel 2월 13일자 26쪽.

15) FTD, 2월 16일.

보여주고 있다. 같은 당의 연정으로 구성된 주정부이지만 노르드라인베스트팔렌주는 신속하게 구매를 결정하였으나 바덴뷔르템베르크주와 바이에른주는 연정파트너인 자민당의 강력한 반대로 인하여 결정을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주정부가 이 정보를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하여도 결과적으로 탈세자들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탈세자 정보가 유용한 것이고 새로운 내용이라면, 그리고 독일의 15개 주정부 중에서 다른 주정부가 그 자료를 구매하기로 결정한다면 다른 주의 과세당국도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탈세는 조세형법적인 사안이며 형사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알려지면 정부기관은 수사를 원하지 않아도 착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매에 대한 협상이 오래 끌거나 자료의 가치나 신빙성에 대한 평가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경우 일부 오래된 사안에서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할 가능성이 있다.

세무조사 종사자들 가운데 많은 수가 특히 남부독일 주정부들이 이 CD를 구매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우연이라고 보지 않고 있다. 바이에른주와 바덴뷔르템베르크주와 헤센주는 오랜기간 동안 의식적으로 세무행정부서를 경제규모에 비해서 소규모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아왔다<sup>16)</sup>. 이는 고소득층과 기업들에게 산업입지와 주거지 결정에서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실태이다. 이는 물론 자신들의 과세잠재력을 부분적으로만 소진하여도 충분할 수 있는 경제적 수준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잠재적인 탈세자들을 돕는 세 주정부들의 태도에 대하여는 연방회계감사원에서도 비판을 한 바 있

다. 특히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점검이 매우 드물게만 이루어지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연방 전체의 부가가치세 세무조사확률이 2%로서 이것도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주정부 순으로 볼 때 가장 낮은 곳이 바이에른으로 1.3%, 그리고 그 다음 순위가 헤센으로 1.35%를 기록하였다. 이 때문에 서비스/공무원 노조에서는 개별 세무서의 인적자원의 수준에 대한 연방 전체의 표준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설정 하에 연구팀이 조직되어 가동하고 있다<sup>17)</sup>.

이들 주정부의 세무조사에 대한 열의가 낮은 때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이 세 주정부는 독일에서 가장 경제가 활발한 곳으로 수평적 재정조정제도에서 재정을 다른 곳으로 넘겨 주는 넉넉한 주들이다. 따라서 비용을 유발하는 세무조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재정수입 중 큰 부분은 결국 다른 주정부에게 이전되며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이 자신들에게 남게 되기 때문이다.

연방회계감사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 가지 방안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것은 세무행정의 책임을 연방정부로 이전하는 일이다. 이를 통하여 연방 전체적으로 표준적인 세무행정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 세무조사 인원의 부족**

세무노조에서는 현재 독일의 탈세담당 세무조사자의 수가 매우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일반적인 세무조사자와 구별되는 탈세전담 세무조사자(조세형사법 담당자들)의 숫자는 현재 2000여명 정도로 업무에 비교할 때 1000여명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up>18)</sup>.

16) Spiegel, 2월 13일자, 26쪽.  
 17) Spiegel, 2월 13일자, 26쪽.  
 18) FR, 2월 9일.

### 사. 세무조사부서의 조직

세무조사자의 숫자뿐 아니라 세무조사부서의 조직도 세무조사 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세무조사자들은 말하고 있다. 헤센의 경우 다른 주정부와 달리 세무조사 종사자들을 중점세무서로 집중시켜 놓는 조직을 두지 않고 의식적으로 전체 세무서에 고르게 분포시키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조직에서는 다른 조사단위나 검찰 등과의 효율적인 업무협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영향력 있는 정치권으로부터 특정 납세자를 보호하려는 압력이 들어오는 경우 개별 세무조사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 전문적인 부서장에 의하여 부서가 운영되도록 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 국내에서는 헤센주를 tax paradise라고조차 말하고 있다<sup>19)</sup>.

## V. 탈세자들의 반응

### 가. 추가경정신고의 홍수

그 동안 스위스 은행의 안전을 믿고 오랜기간 동안 자산을 맡겨왔던 독일의 고객들, 즉 부유한 탈세자들은 현재 매우 불안한 상황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그들이 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해결책은 과세당국이 해당 CD를 구입하여 자신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입수하기 전에 스스로 경정신고를 제출함으로써 탈세범으로서 받게 되는 형사적인 처벌을 면하는 것이다. 이 경우 과거에 내지 않았던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면서 해당 기간에 대한 연 6%의 이자를 추가하여 납부하면 된다.

2010년 2월 중순 독일의 세무서들의 팩스기기는 설사없이 돌아가고 있었는데 불안한 탈세자들이 보내는 추가경정신고서가 계속 도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함부르크 같은 160만명의 인구를 가진 작은 주정부에서만도 2월의 어느 3일 동안에 78건의 경정청구서가 도착하였다<sup>20)</sup>. 현재 독일 전역에 대한 통계가 집계되지 않았고 아직 진행중인 상황이라는 하나 예상보다 훨씬 많은 추가경정신고와 세수입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 외증에서 조세형법탈세범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인정받는 변호사들이 가장 호경기를 즐기며 높은 자문료 수입을 챙기고 있다.

### 나. 은행에 대한 고소 사태

아직은 스위스의 은행들에 대한 고객들의 고소와 피해보상 청구소송에 대하여 알려진 바가 없으나 수년 전에 있었던 리히텐슈타인의 경우와 같이 고객들의 고소와 피해보상 청구소송이 줄을 잇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보도된 바에 따르면 한 독일 고객은 리히텐슈타인 글로벌 트러스트 금융회사(LGT)에 대한 소송에서 730만유로의 피해보상을 받게되었다. 본래 이보다 더 큰 액수의 보상을 요구한 이 고객은 소송을 더 진행시킬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리히텐슈타인의 영주인 리히텐슈타인 공작의 소유로 알려진 리히텐슈타인 LGT는 고객의 비밀을 보장하는 부유한 고객을 가진 금융기관이며 이 기관을 신뢰한 독일의 한 기업가는 자신의 자산을 기탁하였고 갑자기 이 금융기관의 고객정보가 2007년에 독일 내무성 산하의 정보기관인 BND에 팔려지게 됨으로써 동 기업인은 탈세로 인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고 770만유로를 내 고서야 집행유예로 나올 수가 있었다. 세금추징은 당연히 별도로 1,190만유로를 냈다.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하여 법원에 소송을 청구한 결과로 리히텐슈타인 법정은 730만유로의 피해보상을 해주도록 결정하였다. 세금납

19) FR, 2월 9일.

20) FTD, 2월 15일.

부 부분에 대한 보상에 관해서는 탈세자 고객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나 집행유예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이 적시에 고객정보 도난상황에 대해 즉각적 통보를 해서 추가경정신고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은 것이 잘못이었음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조세채무와 가산금은 보상대상인 피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판결의 결과가 알려지면서 유사한 소송에 대한 요청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이러한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은 매우 좋은 경기를 만끽하고 있다. 그러나 이 판결이 다른 판결들에 대하여도 대표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존재한다. 여하튼 리히텐슈타인이 tax paradise로서 수명을 다했다는 것은 명백하며 스위스도 유사한 길을 걷게 될 가능성도 크다<sup>21)</sup>. 스위스에 본부를 둔 세계적인 은행들 중 특히 2008~2009년에 있었던 미국 과세당국과의 갈등을 겪고 고객비밀유지조항을 지킬 수 없었던 UBS는 경제위기와 함께 이러한 고객들의 신뢰를 상실함으로 인하여 큰 규모의 적자내 있을 뿐만 아니라 도이체 뱅크(Deutsche Bank)와 같은 다른 경쟁은행들에 비하여 은행서열에서 뒤로 밀리는 수모를 겪고 있다. 이는 UBS가 한때 세계시장을 선도했던 자산대행관리분야에서 고객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2009년 4/4분기에서만 562억, 그리고 2009년 전체로는 1,470억스위스프랑을 관리하던 고객자산이 감소하였다<sup>22)</sup>.

## VI. 헤센주의 세무공무원 스캔들

이 스위스 사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같은 시기에 독일에서 부각되고 우리의 주목을 끄는 사건은 헤센주의 세무조사반원들과 관련한 스캔들이다.

독일 세무공무원들의 부패문제는 일반적으로 그다지 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신문에 등장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 이번에 드러난 스캔들도 세무공무원의 부패와 관련한 스캔들이 아니라 세무공무원의 조사와 관련하여 헤센주의 정치권에서 유력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공무원들에 대하여 압력을 행사했으며 이 압력이 잘 통하지 않는 종사자들을 정신질환 자료 진단하는 의학적 소견서를 바탕으로 일자리에서 몰아낸 사건이다. 이 의학적인 소견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정치권의 요청이 강하게 작용하였다는 점이 여론을 더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주정부 재무장관은 탈세자들을 보호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헤센주의 세무서들에서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으나 연방회계감사원의 지적은 다르다. 헤센주의 세무서들은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 않으며 실제적으로 업무수행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편망회계 감사원은 납세자들의 해외자본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해외자본소득의 조사가 착수된 사건의 절반 정도에 대해서만 마무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또 상대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대한 조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 부유층들의 자본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를 거의 조사하지 않고 세무신고에 기입된 대로 인정해주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헤센의 한 세무서에서는 수년간 관할구역의 백만장자 백여명 중에 한 명도 조사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sup>23)</sup>.

21) FTD, 2월 9일

22) FR, 2월 10일

23) FR, 2월 11일

헤센주는 바이에른주/바덴뷔르템베르그주와 함께 독일 남부 3주의 하나로서 산업적으로 부유한 지역이다. 다른 두개 주와 마찬가지로 기업에 대하여 우호적인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조세법은 연방의 입법사항이므로 제도를 주정부에서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주정부들은 자신들의 관할에 속하는 조세징수, 특히 세무조사의 강도를 조절하면서 기업에 우호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지역간의 조세형평성에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 Ⅶ. 시사점

### 가. 윤리적 행위의 주체로서 국가

우선 이 사건의 발단과 해결 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세당국이 부당하게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탈세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에서 어떠한 결론 및 해석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위의 독일의 결정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국가와 인간은 윤리적 행동의 주체이며 여기에 구속된다. 그러나 윤리적 주체로서 국가와 인간의 행위를 똑같이 볼 필요는 없으며 국가의 경우 하나의 행위의 선택 여부에 따라서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윤리적 규범을 각각 헤치게 되는 경우 두 가지 중에서 피해가 적은 것을 택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국가가 부당하게 취득한 정보를 구매함으로써 부당하게 정보를 취득한 정보제공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는 다소 윤리적 규범에 어긋나는 선택을 함으로써 국가의 윤리적 정당성과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신뢰가 다소 손상될 개연성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많은 탈세자들을 응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김으로써 윤리적으로 보다 합당한 선택이라는 측면이 있고 게다가 이러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부당취득 과세정보의 구매라는 다소 윤리적으로 저촉되는 행위가 선행되었다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이해하고 동의한다면 선행된 윤리적 저촉 행위로 인한 국가의 윤리적 정당성과 국민의 신뢰라는 공공재의 훼손 정도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 나. 과세당국의 부과행위와 조세형평성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조세정책당국과 과세당국의 행위가 적절하게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세정책당국은 국회에서 의결할 조세입법안을 준비하는 행정부서로서 조세정책적인 고려에 의하여 조세제도에 각종 감면을 가감할 수 있다. 그러나 과세당국, 즉 세금을 징수하는 국세청은 되도록 정책적 고려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조세부담은 조세제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과세당국의 구체적인 부과행위 및 세무조사 등의 강도에 따라 실제적으로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조세의 형평성은 국회와 조세정책당국의 입법활동에 의하여서만이 아니라 과세당국의 징수 과정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 조세의 형평성이 입법활동의 결과에 따라 준수되지 못하는 것은 국회가 다른 정책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의식적인 결정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과세당국인 국세청이 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징수나 세무조사를 시기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달리한다면 이는 명시적으로 이 기관에 부여되지 않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징수나 세무조사에서 세법에 규정대로 지역적, 그리고 시기적으로 변함없이 일관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 야기되는 조세형평성 저촉의 문제점이 이번 독일의 경우에 명백하게 보여





# 정책토론포럼



- 이명박 정부 2년의 조세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
- 공공기관 선진화 우수사례 워크숍



## 이명박 정부 2년의 조세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

### 정책토론회 개요

- 주 제 이명박 정부 2년의 조세정책 성과와 향후 정책과제
- 일 시 2010년 3월 10일(수) 14:00~16:00
- 장 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진행순서

14:00~14:10 개회사

- ▶ 개 회 사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14:20~16:30 주제발표 및 토론

- ▶ 사 회 자 김진영 강원대 교수
- ▶ 발 표 자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이명박 정부 2년의 조세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
- ▶ 토 론 자 안종범 한국재정학회 회장(성균관대 교수)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전 한국세무학회 회장)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정필모 KBS 해설위원  
주영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최철웅 한국세무사회 상근부회장

(가나다 순)

15:40~16:00 객석토론 및 종합정리

16:00 폐회

\* 본 원고는 2010년 3월 10일 한국조세연구원이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이명박 정부 2년의 조세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의 주제 발표 및 토론 요약입니다. 주제 발표 및 토론의 내용은 소속기관이나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 주제발표 요약

### 이명박 정부 2년의 조세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

전병목 / 한국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

#### 1. 배경

- 이명박 정부의 초기 조세정책 기조는 양호한 재정여건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력에 집중
  - 경제위기 이전 시기는 우리나라 재정여건이 개선되는 시기로서 2007년 통합재정수지는 이전의 적자기조(2006년 -1.3%)에서 0.4% 흑자로 전환
- 그러나 2008년 하반기에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에 이은 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해 재정지출이 증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재정수지도 급격히 악화
  - 경기침체에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총수요 증가를 위한 재정지출, 세율인하 등을 추진하여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추세로 전환하는 데 성공
  - 빠른 경기회복을 달성하였으나 정부 재정수지는 급속히 악화되어 2009년 재정수지는 GDP 대비 -5.0%까지 하락
- 재정건전성의 문제와 함께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의 문제를 조화시킬 수 있는 조세정책의 설계가 중요
  - 이를 위해서 지난 2년간의 조세정책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위기 극복 이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조세정책 과제를 제시할 필요

#### 2. 주요 정책과 평가

- 2008년 세제개편은 양호한 재정개선 추세를 바탕으로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경제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둔 정책
  - 경제활동의 주체인 개인 및 기업의 세부담 증가 추세를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의 인하, 종합부동산세율 인하,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율의 인하 등을 추진하여 민간부문의 경제활동 활성화 유도
  - 다양한 조세정책 방안 중 상징적인 효과가 큰 세율인하 정책을 선택함으로써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
- 반면 2009년 세제개편은 경제위기의 여파로 단기적인 소비 회복, 기업투자 촉진, 세원투명화를 위한 정책으로 구성
  - 악화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대규모 세수감소를 초래하는 정책을 지양하고 정책목적에 특화된 세분화된 지원 혹은 납세 편의성 제고, 세원투명성 제고에 중점
  - 내수회복을 위해서 자동차 소비세 경감, 부동산 양도세 증가 일시적 폐지 등을 시행
-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감세정책의 시행은 2008년 하반기 발생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책대응 시차를 줄이는 효과를 발휘하여 조속한 경기회복에 기여
  - 경제위기 발생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내수활성화 정책을 계획하였으나 이의 결정과 설계, 그리고 집행에 일반적으로 상당한 시차가 존재
  - 2008년 경제위기 발생 전에 도입한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2009년), 2008년 하반기에 지급된 유가환급금 등은 위기발생 직후의 경제성

장물, 민간소비 등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는데 기여

- 다양한 정책조합으로 인해 2009년 1/4분기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1% 성장하는 등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인 다른 국가들에 비해 급속한 회복세를 보임
  - 2009년 GDP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이 시행되었으며 조세부문의 경우 소비세 인하 등을 통해 소비회복에 기여
  - 주요 정책수단들은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노후승용차 교체에 대한 세제지원, 다주택자(1세대3주택 이상) 부동산 양도세 중과 일시적 폐지, 비수도권 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 근로장려금 인상,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등임
- 전반적으로 고용유지 및 민간소비 등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정책 등 각종 정책의 조합으로 빠른 경기회복을 유도한 점은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성과
  - 다만 경제위기 이전 추진한 감세정책과 위기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재정투입으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것은 빠른 경제회복에 대한 대가라 할 수 있음
  - 중기적 재정건전성을 감안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율 최고세율 인하를 2년간 유보한 것은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노력
- 다만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폐지 결정이 일부 세목 법안 개정까지 진행되었다가 이해 당사자의 반대로 유예된 것은 정책의 신뢰성 및 재정운영의 신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2013년에 동일한 논의가 있을 것을 대비한 다

양한 설득 노력 필요

### 3. 향후 정책과제와 방향

- 전 세계적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이 재정지출을 크게 증가시킨 결과, 미래 불확실성은 남아있으나 정책목표인 경제 안정화를 일정 부분 달성하는 데 성공
  - 세계 주요국의 재정건전성은 금융위기 이후 크게 악화되었으므로 이들과 비교한 상대적인 재정건전성의 우위는 큰 의미가 없으며, 출구전략의 적절한 수립과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정책수립은 시급한 정책과제 중 하나
  - 재정건전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국가채무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확고하게 대응할 필요
  - 조세부문의 경우 ‘넓은 세원-낮은 세율’ 정책기조하에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방안 모색
- 국내적으로는 경제위기의 충격이 남아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과 함께 고용능력 확충을 위한 기업경쟁력 강화 세제개편이 중요한 과제
  - 이러한 정책은 재정건전성 회복과 상충되는 면이 있으나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조화롭게 추진할 필요
  - 목적세 존폐에 대한 논의도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적 합의 도출을 통해 개선할 필요
- 고용확대를 위한 조세·재정정책은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상황을 반영하여 설계할 필요
  - 고용시장의 전반적 수요 부족과 함께 부문별 수요-공급 미스매치(Mis-match)가 공존하는 상황
  - 장기적으로 노동의 수요-공급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고 단기적으로는 고

학력 구직자, 구직 단념자 등의 신규일자리 창출 수단을 개발할 필요

- 장기적 정책방향은 교육 정원 등 노동공급 시스템 조정과 함께 직업훈련 강화, 여성의 노동공급 확대방안 등이 중요
  - 조세정책적으로는 기업들의 노동수요가 많은 부문으로의 인력공급을 높일 수 있도록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사회보장기여금 등의 차등화를 검토할 필요
- 단기적인 조세정책 대안들은 기업 및 근로자들의 즉각적인 행태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방안 구성이 중요
  - 고용증가에 기준한 세액 혹은 사회보장기여금 부담 경감
  - 각종 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기준에 투자액과 함께 고용수준을 포함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
- 그 외에도 기부활성화 등을 통해 복지정책에서 민간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
  - 기부관련 세제 개선을 통해 거액기부를 촉진함과 동시에 기부단체의 투명성 강화도 추진
- 목적세 운영에 있어서는 “예산배분의 경직성 vs 특정분야 세출 보장”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 개선해 나갈 필요
- 중기적으로는 기후변화대응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G-20 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녹색성장을 위한 세제 등 세계적 공통 관심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세정책을 추진할 필요
  - 조세체계가 외부성 교정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성을 제고

- 탄소 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에너지와 자동차 등 경제 전반의 가격체계에 반영하면서 녹색성장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탄소세 도입을 검토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국가적 중기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기존 환경관련 세제를 포함한 탄소세 검토와 배출권거래제의 부문별 병행으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 필요

 토론 요약

## 포퓰리즘 유혹 극복해야

안종범 / 한국재정학회 회장(성균관대 교수)

본 토론자는 오늘 심포지엄 주제와 관련해 다음 3가지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이명박 정부의 조세정책 기조에 대한 평가, 두 번째는 그동안 세워 놓은 조세정책 기조를 달성하기 위해 기울인 여러 노력들의 성과에 대한 평가, 세 번째는 조세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및 이의 개선방안이다.

먼저 조세정책 기조 면에서, 과거 정부가 증세를 통한 큰 정부라고 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감세와 더불어 작은 정부를 추진함으로써 극명하게 차별화된 정책 기조를 가지고 출발하였다. 또 과거 노무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여러 가지 조세정책을 통한 재분배를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부동산 투기문제마저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등 세금으로 통제하려는 '세금만능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현 정부는 이를 과감히 탈피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아울러 과거 정부에서 지적되었던 조세정책의 포퓰리즘 문제 역시 근절해 나가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였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집권 초기 조세정책 기조는 제대로 세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즉 여전히 '세금만능'의 풍조가 지속되고 있고, 포퓰리즘의 유혹에도 또다시 빠져들어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조세정책은 다른 국가정책에 비해 상당히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세금만능주의나 포퓰리즘의 유혹에 빠져 정책방향의 왜곡이 반복되었다. 이

명박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새 정부 출발과 더불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여전히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 조세정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는 한마디로 '부자감세 논쟁'으로 요약된다. 현 정부는 감세를 위해 법인세 및 소득세를 인하를 추진하였으며, 이것은 의욕적인 중장기적 조세정책의 방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방향은 '부자를 위한 감세다, 아니다'에 대한 논쟁이 지금까지 지속됨에 따라 원래의 취지가 훼손되었다. 특히 야당의 부자감세 화두에 대해 현 정부는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부자감세와 관련해 제기될 수 있는 많은 논쟁사안들 예컨대, '대기업(또는 기업)에 대한 감세가 부자 감세인지', '이처럼 기업을 단순히 개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대기업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과연 기업의 배만 불러주고 나머지 국민들은 피해를 보는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중장기적 시각에서 조세정책 방향은 설정하였으나, 여전히 '법인세 감세가 대기업에 이득을 가져다 주는데도, 투자 및 고용을 늘리지 않고 있어 문제다'라는 한정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 정책 수행을 주저하거나 심지어 포기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아울러 현 정부 역시 조세정책 추진과정 중 끊임없이 나타나는 포퓰리즘을 막고자 노력하다가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여론에 편승하는 문제를 초래하였다. 다음에서는 포퓰리즘으로 인해 조세정책의 도입 및 유지가 결정되는 경우를 크게 2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겠다.

첫 번째는 도입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이다. 먼저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도입을 들 수 있다.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도입의 목적을 '지방균형발전'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좀 더 세밀히 살펴보면 굳이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를 도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려했던 '지방균형발전'은 '지방재정' 조정을 통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지금도 국세와 지방세를 8:2로 징수하고, 이를 지방재정 조정을 통해 5:5로 분배하고 있다. 결국 현 조세제도하에서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지방균형발전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를 도입하였다. 이처럼 도입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세제 도입이 나중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지방행정이 과연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징수 행정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까지 맞물려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고용확대를 위한 세제방안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위기 이후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고용확대'이다. 이는 세금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방법을 강구하지는 미명하여 매달 열리는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각 부처가 앞다투어 많은 정책을 만들어 내고 있고 그 와중에 세제당국의 역할 역시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2004년 도입했다가 실패한 '고용촉진세액공제제도'의 도입이 재논의되고 있다. 물론 시행하지 않는 것보다는 고용촉진에 도움을 줄 수 있기는 하겠지만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저질렀던 세제와 관련한 많은 과오, 즉 '세금만능주의' 문제를 또 다시 재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동일한 세제 지원이라면 '고용촉진세액공제제도' 외에 다른 방법을 충분히 강구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조하여 시행하려는 단견적 시각 자체가 문제라고 본다.

두 번째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제도가 유지되는 경우이다. 대표적으로 발제자가 강조한 것 중 하나인 목적세 폐지를 들 수 있다. 특히 목적세 중 교육세를 본세로 변경해야 한다는 정책방향이, 대부분의 언론 및 국민 여론이 교육세 폐지가 단순히 교육재정

의 엄청난 축소를 초래할 것이라는 단순 논리에 빠져 조금도 진척되지 못한 채, 교육세 폐지의 반대에 부딪혀 모든 목적세 폐지가 3년간 유예되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문제 있는 제도라는 학자, 법조계 등 전문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수정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개선이 요구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아울러 소비세의 경우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담배, 술 등 많은 외부효과를 발생시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품목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여 소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우리 정부 역시 에너지, 담배, 술 관련 세금을 높여 소비세 비중을 높여야 하였다. 그러나 '부자세금은 깎아 주면서 서민이 많이 애용하는 담배 등에 대한 세금을 높이느냐'는 단순 논리에 근거한 저항에 부딪히면서 담배소비세 역시 조정하지 못하였다.

끝으로 조세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간략히 3가지만 살펴 보도록 하겠다.

우선, 세금만능주의, 포퓰리즘 등의 문제에서 벗어나려면 적어도 중·장기적인 시각하에 조세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 현재 재정건전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재정계획을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 단위의 중기적 계획으로 작성하기보다는 10년, 20년을 내다본 장기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및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 문제를 안고 있고 통일을 앞두고 있어 엄청난 재정수요가 요구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 볼 때 5년이 아닌 10년 내지 30년까지 내다 본 구체적인 장기적 재정계획과 조세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장기계획하에 연도별 예산 편성 및 조세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시행해 온 많은 조세정책 중 주

요 정책, 특히 발표자료에 언급된 세제에 대해서는 사후적 평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로 저소득층의 근로 유인을 목적으로 작년에 도입한 EITC제도에 대한 효과분석이 필요하다. 작년에 도입한 EITC제도의 경우, 근로하지 않는 저소득층을 세제를 통해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제도의 효과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왜곡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복지내용과의 조화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본 발표자료에서 EITC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와의 관계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적용 대상이 중복되므로 반드시 양 제도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탄소세 도입을 언급하였는데, 이 역시 어떤 효과를 초래할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특히 배출부과금제도와 배출거래량제도와와의 관계를 잘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세법 개정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 국가재정법 제88조에 따르면, 국세감면비율이 목표치를 초과할 시 반드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줄여나갈 방안 등에 대해 보고 및 제출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연속하여 감면비율이 높아졌고 한도가 초과되었음에도 보고 및 제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물론 포플리즘에 의해 지속적으로 감면해 주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재정건전성은 악화되고 원칙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라도 원칙에 맞게 준수되는 것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본 토론자는 재정건전성을 위한 세원 확대를 위해, 과세단위를 현재 개인에서 부부로, 그리고 자본이득과세의 본격 도입을 통해 상속세를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았으면 하는 의견을 끝으로 토론을 마치고자 한다.

## 조세정책, 장기적 비전 필요

이전오 / 성균관대 교수(전 한국세무학회 회장)

발표자가 이명박 정부의 지난 2년간 조세정책에 대해 세세히 평가하였고,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특별히 비판적으로 지적할 사항은 없다. 다만 토론자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견을 피력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할까 한다.

조세정책은 물론 여타 정책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정책적 성격에 대한 규명이 쉽지 않다. 진보적인 인사들은 이 정부를 극우정권이라 부르고, 보수적인 인사들은 우파정권이 아니라고 한다. 이와 같은 정부 성격의 모호함은 정권 초기에는 잘 나타나지 않았지만, 집권 2년차에 들어서면서 중도실용노선을 강조하다보니 모호한 성격이 부각된 것 같다. 중도실용정부란 긍정적으로 보면 '일을 열심히 하는 정부' 이나, 부정적 시각으로 보면 '어디로 갈지 모를 정부', 즉 상황에 따라 정책방향이 바뀔 수 있는 정부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조세정책 및 재정정책 역시 중도실용이란 정책적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는바, 이 틀 안에서의 정책시행으로 인한 장단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우선 장점으로는 조세정책을 재정정책과 더불어 유용한(정책적) 잣대로 활용함으로써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촉발된 경기침체 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했다는 점이며, 이는 이명박 정부의 큰 공적이다.

반면 단점으로는 첫째, 정부의 조세정책에 장기적인 비전이나 계획이 없다는 사실이다. 전임 노무현 정부는 소위 '로드맵 정부' 라고 불릴 만큼 정치적 목적에 따라 비전 제시를 지나치게 강조하였으나, 현 정부는 로드맵이 없어 대통령 집권기간 5년 동안 조세정책이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 예상하기 어렵다. 이처럼 장기적 비전 및 계획이 없다는 사실이 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이며, 이는 오늘 발표내용에서도 언급된 감세, 증세 논란이나, 소득세율 인하 유보 등의 문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런 문제들이 촉발된 직접적인 계기는 재정건전성 때문이라고 하겠으나, 감세정책을 편다면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리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감세가 성장 동력의 확충을 가져와 후대에 더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등의 장기적 비전 제시를 통해 정책방향의 당위성을 뒷받침 해주어야 하나 그러지 못하였다.

두 번째 단점은 중도실용의 기초에서 부정적 의미에서의 포퓰리즘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전임 정부들이 지나치게 정치목적에 따른 포퓰리즘적 경향을 보였다면, 현 정부는 뚜렷한 철학이 없는 데서 빚어지는 포퓰리즘 경향을 보인다. 포퓰리즘에 의해 시행하고 있거나 고려중인 예를 2가지만 제시해보겠다. 첫 번째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과세하겠다'고 하고, 이 제도에 대해 절대적으로 다수의 국민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치에 맞지 않는다. 전세보증금은 주택소유자 입장에서 볼 때 부채인데 부채에 무슨 세금을 부과하며,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맡겨 이자소득이 발생하면 이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추가로 무슨 소득세를 또 부과한다는 말인가? 납득하기 어려운 제도이다. 두 번째 종합부동산 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으므로 재산세로 통합하여 폐지시켜야 하며, 현 정부는 정권 초기 그런 기초를 세웠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정부는 부자만 위하고 서민은 안중에도 없는가?"라는 여론에 밀려 이 역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였다.

이제 이명박 정부 2년간 미진했던 부분들을 남은 임기 3년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장기적인 비전 및 계획

수립하여 조세정책 등을 시행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지난 2년처럼 1년 또는 '몇 개월' 단위로 정책을 시행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장기 목표를 세울 때는 현 정부에서 비록 그 성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더라도 장래의 국가변영을 위해 환경 보존, 고령화 대비 등의 사안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큰 그림을 단계적으로 그려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재정건전성 확충은 세입을 늘리거나 세출을 줄이는 2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세입기반 확충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과세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늘상 나오는 대책으로서 실상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세출통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국조세연구원이 발간한 자료에서는, 정부지출의 효율성 문제와 세출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세출통제의 경우 행정부 스스로는 물론 감사원 통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국회 세입세출특별위원회 역시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구성 위원이 단기로 변경되어 문제이다. 정부 역시 예산안을 능률 제출하고 있고, 이에 대해 국회는 부실하게 줄속으로 심사하고 있으며, 결산에 대해서는 거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산 심사시에도 지역구의 민원성 사업에 대해서만 주된 관심이 있을 뿐, 나라 전체의 사업항목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통제가 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장기적 계획을 세울 때는 '세출통제'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현 정부의 조세정책은 과세권자인 국가 위주로 마련되고 있지, 납세자 입장을 고려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납세자의 입장을 배려하여, 조세체계를 합리적, 논리적으로 개편하고, 세법을 간소화, 논리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아울러 조세체계 개편과 더불어 세정개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동안 과세당국인 국세청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였다. 정권 초기 '국세청외부감독위원회' 등의 제도적 충격으로 국세행정을 개선하겠다고 하였으나 무산되었다. 앞으로 장기계획 수립시에 실질적인 세제개혁 방안을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시행과 더불어 반드시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소통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지만 과연 그 정책을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투입하고 있으며, 그런 노력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조세정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감세정책 유지되어야

이현석/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지난 2008년 현 정부 출범 이래 조세개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큰 폭의 '조세개편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조세개편이 이루어졌다'고 표현하지 않고 '조세개편의 노력이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의 의욕적인 개편안들이 정책으로 구체화된 것도 있고 일부 실현되지 못한 것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이 있었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발표자도 언급했듯이 OECD국가 중 가장 빨리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조세정책이 분명히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상공회의소는 매년 세제개선 100대 과제 등을 비롯해 정부에 수시로 건의하고 있는데, 지난 2년간 의견 반영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또 주제발표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그동안 소득세나 법인세율 인하, 연결

납세제도 도입, R&D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 양도세와 종부세 등 일부 불합리한 부동산세제의 개선, 중소기업 가업상속에 대한 지원 확대,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 등을 대폭 개선한 것은 새 정부 조세정책이 거둔 큰 성과라고 본다.

그러나 이런 성과가 있었던 반면 미흡한 부분도 여전히 존재한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악화될 수밖에 없었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 및 부자감세라는 국민여론 때문에 조세정책이 일관성과 신뢰성을 잃은 것은 아쉬운 점이다. 특히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통과를 마친 법인세율 인하 법안이 부분적으로 유보가 되고,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5%에서 13%로 내렸지만 내리는 과정에서 13%, 14%로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그 대표적 사례이다. 또한 상속·증여세율 인하 법안이 도입의 필요성 및 다른 나라의 경우 상속·증여세율이 인하(또는 폐지)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 역시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러나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조세정책상의 공과를 비교해 볼 때 과(過)보다는 공(功)이 훨씬 크다고 보며, 향후 기업 입장에서 좀 더 고려해 주었으면 하는 정책방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우선은 우리 경제가 완전한 회복기에 접어들 때까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원칙 아래 감세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재정수지 문제는 세율 가지고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발표자료에서도 언급했듯이 세율보다는 새로운 세원 발굴, 불요불급한 세출 억제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경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조세부분이 좀 더 기여를 해주어야 한다. 현재 기업의 투자가 상당히 저조하고 잠재성장률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녹색산업이나 차세대 첨단산업, 새로운 지식기반서비스산업 같은 신성장 동력산업 부분의 투자

를 유인할 수 있는 세제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고용창출 지원세제 역시 도입되어야 한다. 앞서도 언급되었지만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그리고 경제성장이 가속화되면서 고용 없는 성장구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동력 수요는 계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고용창출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는데, 청년실업 해소, 여성인력, 고령인력 고용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정책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1970~1980년대 왕성했던 기업가 정신이 살아날 수 있도록 세제가 도와주었으면 한다. 기업가 정신을 저하시키는 대표적 사례가 상속세제이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특히 최대주주의 주식상속의 경우 할증과세까지 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상속세율을 인하 내지 폐지하고 있는 추세이며, 발표자 및 다른 토론자 여러분도 포퓰리즘에 대해 지적하셨듯이 이제는 기업인의 의욕을 높이고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시점이라 생각된다.

## 고용과 복지 동시 추구하는 정책 필요

정필모 / KBS 해설위원

앞에서 토론하신 분들이 전반적인 효과와 문제를 말씀드린 만큼, 가능한 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세정책의 효율성에 대해서 언급하자면, 감세정책은 생각보다는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졌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는 물론 재정지출 확대보다 경기부양 측면

에서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뜻이다.

소득세 경감의 경우를 보면, 발제자가 서민층의 소득이 증대되었다고 지적하였는데, 경감비율로 보면 그렇지만 경감액의 경우에는 1분위 계층의 경우 1만 원 남짓으로 미미한 정도여서 소비증가에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절대적인 경감액이 많은 중·상층 이상의 소비증가에 기여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법인세 감면이 투자나 고용 확대에 기여했는가를 살펴보면 실제 고용이 증대된 사례는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2년간 실제로 고용사정이 좋아졌다고 보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오히려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노사관계 안정이나 각종 규제 완화가 법인세 감면보다 효과적일 수도 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완화는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적 성격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소비진장에 기여한 측면은 인정하지만 기업의 투자나 고용확대에 크게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포괄적인 세금감면이나 재정지원보다는 발제자가 제시한 일자리 창출과 좀 더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는 세금감면 방안이나 재정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발제자가 제시한 바와 같이 투자세액공제기준에 고용수준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고, 현재 심각한 문제인 노동력의 수급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세제지원이나 재정지원을 직업교육과 보다 적극적으로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나라의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점이 가까워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해 온 토목이나 건축분야와 같은 인프라 구축사업이 수요 측면에서 낭비적 측면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복지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만큼 토목·건축 분야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재정지출을 줄이고 고용과 복지의 양쪽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분야, 즉 노인, 육아, 교육 등의 분야에서 사회적 인프라를 확대하는 데 재정지출을 확대함으로써 고용 확대와 복지증진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 하나는 탈루된 세원 발굴과 관련된 부분이다. 여전히 병의원, 학원, 대형가전제품 상가 등에서는 거래 금액이 크에도 불구하고 현금을 내면 할인을 해주는 일이 빈번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세원 발굴이 필요하고 재정건전성을 위한 세원확보 차원에서 제도적인 보완장치 마련에 세정당국이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 회원국의 평균에 비해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낮은 편이다. 정부 당국자들도 이 점을 들어 아직 국가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는 않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대외의존도가 크고 대외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경제구조이다. 최근 들어 작은 외부 충격에도 자본유출입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국가신용도에 따른 CDS 프리미엄도 들쭉날쭉 변동이 심하다. 소규모 개방경제일수록 국가채무가 국가신용도를 좌우하는 만큼, 경제규모가 큰 선진국과 단순히 비교해 안심하기보다는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국가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머지않아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 우리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으며, 시장금리는 이미 어느 정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국채발행 증가가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이른바 '구축효과' 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재정건전성 확보가 중요하다.

## 감세정책은 국가구조를 바꾸는 일

주영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조세정책 실무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따끔한 충고와 함께 좋은 도움 말씀을 많이 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세제업무에 종사한 지난 30년을 돌이켜 볼 때, 2008~2009년의 MB정부의 세제개편이 가장 혁신적인 개편이었다고 생각된다. 그 과정에서 그만큼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컸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셌다고 생각된다.

국가정책에 있어서 조세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실감하면서도 조세정책의 운용에 있어 사회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 당초 의도와는 다르게 결론이 난 부분들도 많아 아쉬운 부분도 많다.

MB정부 조세정책의 근간은 감세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 감세로 시장경제를 활성화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기본적 프레임하에서 추진되었다. 정책 입안 당시 재정여건을 보면 2006년, 2007년의 경우 세입여건이 좋았고, 조세부담률도 가파르게 상승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2007년에는 세수가 14조원 이상 초과 징수되었다. 이러한 재정여건과 MB정부의 철학이 맞물려서 감세정책이 이뤄졌다. 감세정책 시행 후 2~3년은 약간의 재정적자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4~5년째는 충분히 균형재정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전망으로 추진한 것이다.

그러나 2008년 증반부터 유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하반기 이후 유레 없는 전 세계적 경기침체에 따라 거의 모든 나라가 과감한 재정·감세 정책을 취했다. 세금은 덜 들어오고 재정지출은 확대됐다. 작년 GDP 5%에 상응하는 재정적자가 발생했고 국가부채의 증가로 재정건전성 우려가 커졌다.

재정건전성 문제 때문에 세율 인하의 스케줄 변경

등 궤도의 수정이 있었지만 정부의 감세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감세는 대기업이나 고소득자들에게 혜택이 많고 소비진작이나 고용창출에 효과도 별로 없다는 비판이 많다. 그러나 세율 인하 등 감세정책의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난다. 성급하게 평가하기보다는 앞으로 2~3년간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단기적 경기활성화 측면에서 시행된 조세정책들은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중고자동차 교체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승용차 판매량이 20% 정도 늘었다.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여 경기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부품업체·판매업체 등에 대한 파급효과도 있었을 것이고 실제로 '09년 2/4분기의 경우 GDP를 0.8%p 정도 증가시킨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방골프장 특소세 감면의 경우도 동 제도 시행 이후 지방회원제 골프장의 이용객이 18% 정도 증가했다.

종부세는 조세의 기본원칙 측면에서 문제가 많은 조세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만큼 법적 측면에서도 무리한 제도였다. 종부세제의 개편은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바로 잡은 것이다. 참여정부 때 부동산 정책을 너무 세제 면에서 접근했기에 부작용이 많았다. 특히 다주택보유자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도한 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졌다. 소위 Lock-in-effect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일반세율로 전환했다. 그 결과 거래량이 거의 2배로 증가했다. 부동산은 꼭 필요한 사람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경제의 효율이 높아진다. 그러한 측면에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경제활성화뿐만 아니라 경제효율 증대에도 기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목적세 부분은 거의 성공을 할 뻔했지만 교육세 부분에서 이해관계 집단의 반대의 벽을 넘지 못했다.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발표자 의견에 대체

적으로 동의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건전성 문제다. 정필모 위원이 지적한 대로 우리 경제는 small open economy로 외부의 충격에 취약하다. 충격에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고 위기발생시 경제를 정상으로 복원시키는 데 있어 재정건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경제가 2차레에 걸쳐 경제위기를 빨리 극복한 것도 적극적 재정정책을 폈기 때문이며, 이는 재정건전성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감세정책은 계속 유지하되 세제를 조금 더 합리화해서 세수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먼저 비과세·감면을 축소해야 하고 새로운 감면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과세정상화 부문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현금영수증 의무화, 세무조사 강화 등 제도 및 세정개선을 통해 탈루되는 세금을 축소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친환경경제 부문은 조심스럽지만 앞으로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는 논의가 많이 필요하고 이해관계의 조정과 국제공조도 필요하다.

금년에는 상장기업에 대해 2011년부터 IFRS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중범 교수의 지적처럼 넓은 의미에서 납세자의 측면에서 조세가 개혁되어야 한다. 세법을 알기 쉽게 고치는 것이라든지 제도의 단순화 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 균형 유지가 중요

최철웅/한국세무사회 상근부회장

지난 2008년도 세제개편에서는 내수 경제의 활성화, 투자 증대를 통해 활기찬 시장경제를 일으키겠다는 것이 정책목표였다. 그에 따라 이루어진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는 부자감세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비판보다는 2배 이상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는 여론 조사 결과를 접한 적이 있다.

2008년 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리서치 앤 리서치를 통해서 전화면접을 실시한 결과 소득세 인하는 79%, 법인세 인하는 60%,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는 63%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세 개별소비세 인하, 근로장려금 지급 등은 경제위기 극복에 일조를 했으며 즉각적이고 적절한 조치였다고 본다.

2009년은 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GDP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자감세라는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조세정책이 일정 정도 효과를 달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2009년 세제개편에서는 서민중산층 세제지원에 초점을 맞춰서 영세사업자 세제지원, 월세세액공제 등 저소득자 지원책,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기간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많았고 이는 바람직한 조세정책으로의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

발제자가 발표한 향후 정책의 과제 방향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면 향후 몇 년은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 균형 유지가 중요할 것이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정책목표하에서 세입기반 확충과 이를 위한 정책적 대응의 모색이 필요하고 형평성, 효율성, 단순성에 기초한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이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

### 1. 간이과세제도의 개선 필요


조세형평성을 저해하는 현행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 간이과세제도는 매출누락에 따른 탈세, 가짜세금계산서 유통 문제 등 과세투명성을 해치는 경우가 많다. 전체 납세자 중 42%인 160여만명이 거래증빙을 남기지 않는다는 점과 조세형평성 측면에도 문제가 많은 제도이다.

### 2. 신고검증제 도입

현행 세무조사제도와 관련한 탈세 근절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발표자 의견에 동의한다. 세정여건상 소요 예산이나 조사행정력 등 어려움이 있다. 국세청에서는 법인이나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2% 정도도 못하고 있다.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를 활용한 신고검증제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신고검증제를 시행하여 대기업과 조세범칙위반자 등 악질적인 탈세범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담당하고 대부분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사 등 전문가를 활용함으로써 세수 증대와 조사로 인한 납세자의 불만 해소와 조세마찰을 방지할 수 있다.

### 3. 불합리한 가산세 제도 개선

납세자로부터 어느 정도 납득 가능한 제도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무사도 헛갈릴 정도인 45가지 정도의 가산세가 있다. 어떤 경우에는 40% 정도에 상당하는 신고관련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경우라고 예시하고 있는데 이는 다소 추상적이어서 납세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영세사업자들의 경제활동을 위축하지 않는 가산세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 공공기관 선진화 우수사례 워크숍

## 정책토론회 개요

- 주 제                    공공기관 선진화 우수사례 워크숍
- 일 시                    2010년 3월 9일(화), 14:00~17:00
- 장 소                    aT센터(3층 중회의실)
- 진행순서
- 14:00~14:12            **개회 및 국민의례, 기조연설**
  - ▶ **개회 및 국민의례**
  - ▶ **기조연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 14:12~14:42            **인사개혁 우수사례 발표**
  - ▶ **사 회 자**            박정수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소장
  - ▶ **발 표 자**            이지승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이    참    한국관광공사 사장
  - 김봉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 14:42~15:12            **인사개혁 관련 토론**
  - ▶ **사 회 자**            오연천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 **발 표 자**            이한철    KOTRA 부사장
  - 홍문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 유재섭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김영신    한국소비자원원 원장
  - 신혜수    공운위 민간위원
  - 신동수    공운위 민간위원
- 15:27~15:34            **동영상 상영, 노사관계 선진화**
- 15:34~16:14            **보수체계 개편과 노사 관계 합리화 우수사례 발표**
  - ▶ **사 회 자**            박정수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소장
  - ▶ **발 표 자**            조현웅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허준영    한국철도공사 사장
  - 강영원    한국석유공사 사장
- 16:14~16:19            **바람직한 보수체계**
  - ▶ **사 회 자**            박정수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소장
  - ▶ **발 표 자**            송대희    공공정책포럼 좌장
- 16:19~16:48            **보수체계 개편 관련 토론**
  - ▶ **사 회 자**            오연천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 **발 표 자**            김성태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 심의표    공운위 민간위원
- 16:48~16:54            **노사관계 합리화 관련 토론**
  - ▶ **사 회 자**            오연천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 **발 표 자**            황해성    한국감정원 원장
  - 김선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강    훈    공운위 민간위원
- 16:54~17:00            **마무리 말씀**
  - ▶ **맺 음 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가나다 순)

\* 본 원고는 2010년 3월 9일 한국조세연구원 공공정책연구센터와 기획재정부가 aT센터에서 공동 개최한 「공공기관 선진화 우수사례 워크숍」의 발표사례 및 토론요약을 정리한 것입니다. 토론의 내용이 소속기관이나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기조연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이번 워크숍에서 공공기관 선진화의 목적과 방향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워크숍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우수사례는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알려져야 한다. 우수사례들을 중심으로 유익한 정보가 공유되어 기관들 사이에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어느 정부에 비해 공공기관 선진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보수, 노사관계, 과도한 복리후생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갈등과 어려움도 있었으나 각고의 노력으로 발전하였다. 최근 아랍에미리트로의 원전 수출은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쾌거다. 공공기관의 해외진출로 국민들에게 인식 전환을 이루었다.

정부의 성과 중 4번째로 공공기관 선진화가 언급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중요하다. 선별적이고 기관의 특성에 맞는 선진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선진화 결과 보수, 노사, 인사에서 우수사례가 알려지고 있다. 인사관리에서는 사람과 성과관리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성과관리 중심의 평가는 조직의 성과와 미래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다. 공공기관은 침체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인사와 성과관리에 내부경쟁 도입이 필요하다. 인사드래프트제, 삼진아웃제도 등이 좋은 사례다. 위와 같은 제도들은 모든 공공기관에 널리 알려져야 한다. 한편으로 보수체제도 성과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는 보상시스템이 적절하지 못해 동기 부여가 되지 못하고 있다.

노사관계 선진화가 필요하다. 노사관계 공시 의무

화, 기관장 평가시 노사관계 공시를 반영함으로써 많은 공공기관에서 자발적으로 단협이 개선되고 있다. 합리적인 노사관계로의 발전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서 기관장에게도 기업이 정신이 필요하다. 해외진출, 신성장동력 발굴 등이 필요하다.

오늘 발표되는 우수사례는 시행하는 데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성공모델로 발전시켜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한다.

**인사개혁**

**우수사례 기관 발표**

**1. 안으로는 인사개혁, 밖으로는 일자리창출**  
-공기업 선진화의 전도사 LH-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인사개혁

- 조직문화가 상이한 두 기관이 통합되면서 지원 부분의 인력 과잉, 사업부문의 인력 부족 등으로 통합 시너지 효과가 감소됨
- 인적 통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사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개혁이 필요
- 본사 조직을 축소시키고 현장 조직을 강화
- 2중·3중의 인사검증시스템을 구축

■ 인사개혁 사례

- 조직을 재설계하여 500명을 지역본부로 현장 배치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
- 철저한 인사검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3중의 검증시스템을 도입

- 다양한 인사개혁 모델을 시행
- 현장에 인력을 배치
- 연공서열을 파괴하여 젊은 조직으로 재탄생
- 통합 전 기관 고유사업 부서도 30% 이상 출신 별로 혼합배치
- 직원대상 인사만족도 조사에서 인사개혁에 대해서 64.9%가 긍정적으로 평가

■ 임금피크제

- 연령기준으로 56세, 직급근속기준으로는 1급 5년, 2급 10년, 장기근속 30년을 대상으로 함
- 기존 정년을 유지한 구조조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
- 인사사전 예고제를 도입하여 전출 대상자들에게 차기 인사에 반영될 내용을 미리 알려주고 있음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 직무관련 횡령 및 금품, 향응 1회 수수시 해임하고 부정부패 연루자 및 징계자는 보직을 배제

■ 시사점

- 강력한 리더십과 일관된 실행, 공정하고 투명, 실적, 실용이라는 인사원칙의 실현시스템 구축으로 5개월 만에 시행

■ 임대주택 관리 업무에 고령 인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실버사원 채용을 추진

- 60세 이상 대상
- 2천명 채용 계획
-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업무 매뉴얼 제공
- 1일 4시간 주 20시간의 근무시간으로 월 50만 원 수준의 급여
- 하자 보수, 단지 시설 점검, 입주대비 점검, 독거노인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

- 2만 2천명이 지원하여 11대 1의 경쟁률
- 부족한 임대 인력을 보강하고 공공임대 주택의 가치를 높여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

2. 메기가 미꾸라지를 건강하게 한다

-드래프트제 및 저성과자 프로그램 시행-

이 참/ 한국관광공사 사장

■ 혁신 인사사례

- 관광진흥 중심으로 기능 재편, 면세사업 단계적 중단, 신규 관광단지 개발사업 중단, 출자회사 민영화
- 음양오행 사상을 활용하여 경영철학을 제시
- 참 프로젝트를 통해 성과 있고 창의적인 참조직, 매력(Charm) 넘치는 한국관광을 목표로 함
- 전문성과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려고 노력함
- 드래프트제도를 단행

■ 드래프트제도 시행 프로세스

- 1단계(사전작업): 팀장급 이상 직위에 대해 CDP기반 공모지원 가능 직렬 정의, 직위별 공모대상자 선별.
- 2단계(1차직위 공모): 실장 및 독립팀장·상설 TF팀장 29개 직위와 팀장급 이상 전원을 대상으로 직위공모를 실시
- 3단계(드래프트 단행): 심사 기초자료 작성(3개월 근무평가 및 BSC 평가결과), 본부장에 대해 1차 드래프트 실시
- 4단계(2차 직위공모): 3급 이상 전원을 대상으로 팀장급 35개 직위 공모
- 5단계(드래프트 단행): 심사기초자료 작성(3개월

년 근무평가 및 BSC 평가결과), 2차 드래프트 실시

- 6단계(보직부여): 인사부서 조정 작업, 드래프트 결과를 바탕으로 보직 부여 시행

■ 드래프트 내용

- 본부장: 실장급 및 독립팀장급 29개를 대상으로 80명이 공모대상이었고 그 중 46명이 응모하여 19명이 탈락
- 실장: 팀장급 35개를 대상으로 211명이 공모대상이었고 그 중 55명이 응모하여 20명이 탈락

■ 드래프트 방법

- CDP에 의한 가능직렬 범위를 확인하여 공모대상 직위 중 희망직위 3순위까지 응모
- 응모자들에 대한 역량 및 성과평가 결과를 분석(3개년 근무평가 및 BSC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서열화)
- 응모자 중 희망직원을 3순위까지 드래프트
- 인사부서에서는 응모자의 희망직위와 드래프트의 희망직원을 조합, 점수화하여 보직을 부여

■ 드래프트 시행 결과

- 상임이사 3명 중 2명이 보직 해임
- 1차 드래프트로 29명에게 보직 부여(보임 63%)
- 2차 드래프트 35명에게 보직 부여(보임 64%)
- 탈락 간부직원 8명을 팀원으로 발령
- 3급 중 발탁자 8명 팀장직위 발령(직급파괴 35%)
- 1, 2급 64개 직위에 대해서 18명이 상위직위 보임(직급 파괴 26%)

■ KTO 저성과자 관리프로그램 운영 프로세스

- 3진 아웃제 프로그램

- 최근 3년 이내 근무평가 누적 2년 총점하위 10%, 최근 1년 이내 부정행위 등 징계를 받은 자, 해당본부 내 태도 불량으로 판단되는 자, 이 동배치를 위한 드래프트제 시행에 의한 잔류인력 등을 대상으로 함

- 대상 POOL을 구성하여 심의회 심사를 거치고 이의신청사항 검토 후에 최종 확정함

■ KTO 저성과자 관리프로그램 추진내용

- 1, 2급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으로 기본급 20%를 감봉하고 기간 내 직위해제, 승진서열명부 2점 감점, 교육종료 후 부서 배치
- 3급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으로 기본급 10% 감봉, 승진서열명부 2점 감점, 타부서 배치 등을 실시
- 태도, 의식 교육을 실시하고 관계역량 위주 교육을 하며 3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직무역량 교육을 추가로 실시
- 업무과제 수행에 있어서 팀 내 미해결 이슈과제와 단기성 프로젝트, 현지 업무를 수행

■ 어려움 극복과정

- 노조 반발에 대해서 조직의 생존을 위한 것임을 설득
- 처음부터 노조와 같이 인사제도를 시행함

■ 주요 성과

- 연공서열과 직급 중심의 인사제도를 타파하여 인사적체 불만 해소
- 조직 내 긍정적 근무 분위기 확산과 적당한 긴장감을 유발하여 역동성을 제공
- 개인의 직무 몰입도를 증진

### 3. 神의 직장? 일하는 사람들의 직장!

김봉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 ■ 현황 및 문제점

- 통합 이후 경직적인 조직문화로 인해 경영효율성이 저하
- 연공서열식 인사, 인사적체 심화, 출신기관별 이기주의, 나눠먹기식 직책 보임
- 줄서기/편가르기 문화
- 외부 지적에 의해 직원 사기가 떨어짐

#### ■ 인사혁신

- 변화와 혁신이 필요함을 인식
- 전 직원 워크숍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
- 경영진부터 솔선수범
- 출신기관별 이기주의를 막기 위해 본부별 인력 순환
- 50% 임원을 해임하고 임원급 2명을 축소
- 신규 선임 임원 중 회원증권사 출신 인사 2명 영입

#### ■ 부하직원 선택제 도입 배경

- 연공서열식 인사제도의 한계로 인해 인사적체가 심화되고 일하는 풍토가 조성되지 않아 젊고 우수한 인재 발탁에 곤란
- 본부제 실시에 따른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여 인사권 하부이양으로 성과중심 경영 기반 구축 필요
- 나눠먹기식 직책보임 타파가 필요

#### ■ 부하직원 선택제 도입

- 경영자가 아닌 현장관리자에게 함께 일할 부하 직원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

- 전 직책보임자(부서장, 팀장)를 대상으로 실시
- 성과가 우수한 하위 직원들도 상위직으로 갈 수 있음
- 시행은 6단계로 실시
- 능력 있는 직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짐
- 젊은 인재들이 중요부서에 배치됨
- 하위직급이 대거 상위직으로 올라감
- 연공서열제에 비해 부하직원 선택제는 현장관리자에게 인사권이 있으며 성과 및 능력에 따라 임명이 이루어지고, 40% 정도의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음
- 직책 미보임자에 대해서도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
- 배타적으로 수행해온 각 시장본부 직책보임자에 타기관 출신 65% 배치

인사개혁	관련 토론 요약
------	----------

오연천/(사회)

우수사례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공공기관 선진화가 궤도에 올라갔다는 의미다. 이런 노력들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사례를 공유하고 실천하는 것이 시급하다. 토지주택공사는 현장 중심제도, 관광공사는 드래프트제도, 한국거래소는 부하선택제도로 요약된다.

이한철/KOTRA 부사장

퇴출시스템은 2~3년 후에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지가 중요하다. 평가제도의 객관성 문제에 의해 노사의 반발로 제도가 적용하기 힘들다가 작년부터 시행되었다. 퇴출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해서 직원의 인센티브 성과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 코트라에서는 평균적으로 한 지역에 2~3명의 주재원이 나가 있기 때문에 한 명만 업무를 소홀히 해도 전체 업무에 차질이 발생한다. 조직 내에서 점점 업무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져서 지난해 퇴출제를 전격 실시했다. 성과부진자 3명을 조기 소환하고 2년 연속 최하위 10%는 재택근무 조치했다. 노조의 반발이 심했으나 규정에 있는 내용을 실시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간부직원들이 포함되었음을 강조하고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했다. 예측가능성을 위해 본인의 순위를 공개하고 예비경고를 실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개혁은, 조직 전체적으로 긴장감 제고, 개개인의 역량 강화, 성과 강화를 위한 동기 부여가 되었다.

오연천/ (사회)

공정하고 객관적인 내부평가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퇴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

홍문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노조의 반발이 심하였으나 선진화 구조조정을 이루었다. 기관 내부에 국제경쟁력이 있어야 생존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저성과관리제도, 조직부적격자 관리의 필요성을 공동으로 인식했다. 2008년 10월에 노사가 상시 퇴출프로그램을 합의했다. 상시 퇴출프로그램은 이사회 심의를 거쳐 09년말 제도 정비 후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다. 직원 수용도 제고를 위하여 선별기준의 객관적 계량화, 객관화, 규정화를 공식화해

서 공정성, 법률적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안을 만들었다. 노무사, 법률가, 농업관련 단체장 20명을 통해 선별기준 타당성, 2중 처벌 문제점을 논의하고, 선별 절차, 규제 절차의 적정성, 성과 개선 수단으로서 동제도의 적정성,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제도에 반영하였다. 또한 2009년 6월 18일 노조가 인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후보자 선별 방식, 대상자 확정 문제, 직위해제 처분 문제, 3~6개월간의 성과개선 교육 등이 운영되고 최종평가를 거쳐서 퇴출자를 결정하고 있다. 그 결과 실적 평가 하위 3%, 3회 이상 타부서 전출 요구된 자, 직원 상호평가결과 미흡, 징계 누적 70점 이상, 비리 연루자 등을 대상으로 2급 부서자 7명 무보직, 부서장에서 지사장으로 1명, 지사장에서 부서장으로 1명, 부서장에서 팀장으로 11명을 배치했다. 직위해제 처분자에 대해서는 급여를 20% 삭감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주었다. 과제연구와 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인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고 있다.

오연천/ (사회)

퇴출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유재섭/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승진 때만 열심히 하는 것이 문제라고 판단을 했다. 퇴직한 사람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으나 경쟁이 촉진되는 등 긍정적이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 미보직자에 대해서 6개월 동안 교육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조 전임자가 축소되고 휴가가 감소되고 있다.

**김영신**/ 한국소비자원 원장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팀장을 임명할 때 드래프트제도를 통해 임명하고 있다. 팀장이 중복 추천되었을 때는 부서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신규발탁을 강화하여 팀장의 10%를 하위직에서 임명하고 팀장 임명시 여성 비율을 기존 19%에서 27.3%로 확대 임명하여 양성평등을 위해 노력했다. 여성 전문인력 CDP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조직 내 여성 관리직 비율을 확대하고 있다.

**신혜수**/ 공운위 민간위원

공공기관 선진화에 대해서는 여성의 참여가 중요하다. 능력과 성과에 따른 인사가 필요하다. 여성의 동등한 참여가 이루어져야 선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필요하고 직원 만족도도 중요하다. 여성이라고 배제되는 일이 있어서는 곤란하다.

**신동수**/ 공운위 민간위원

민간출신 공공기관장이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 제도과 방침보다는 어떻게 실행하는지가 중요하다.

**오연천**/(사회)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해서는 퇴출시스템에 대해서 기관장의 책임이 가장 중요하다.

**보수체계  
개편**

**우수사례 기관 발표 요약**

#### 4. 생산성 향상을 위한 보수체계 개편

**조현용**/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 고비용 저효율 구조
  - 간부직을 제외한 직원에 대해서 호봉제를 아직 까지 실시
  -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
  - 3급 이상 직원의 비중이 높은 것이 문제점
- 보수체계 개혁
  - 경영진부터 보수 삭감을 시작
  - 복지제도를 과감히 개선
  - 전직원 연봉제를 실시
  - 노사 공동의 공단발전위원회를 발족
  - 2009년 10월 합의에 도달 직급 상한제를 도입
  - 매년 임금 10%씩 50%까지 삭감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전 직원의 8%, 총 18억원의 비용을 절감
- 연봉제 추진현황
  - 성과연동형 연봉제에 따라 2.3배까지 성과연봉에 차이가 발생
  - 난이도에 따라 차등 보상
  - 1급의 경우 총연봉의 21.5% 차등
- 남아있는 과제와 추진계획
  - 1, 2급 간부만 적용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
  - 평가제도를 2009년에 강화하고 성과 연동형 연봉제 설계

- 노조와의 갈등이 있으나 구성원 의견 수렴과 도입 취지 공유 등을 통해 노조와 지속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 2010년 6월까지 전 직원 연봉제를 실시할 계획

## 5. 일 잘하는 조직 만들기 “연봉제”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 하드웨어 혁신

- 조직 효율화를 위해 정원 475명, 13개 부서를 감축
-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졸 초임을 13.4% 삭감하고 자발적 임금반납으로 55억원을 조성
- 일자리 나누기를 시행하여 1,095명의 일자리를 증가시킴

### ■ 소프트웨어 혁신

- 공공시설 품질개념을 확장하여 명품 4대강과 아라뱃길의 토목 구조물을 디자인화하고 있음
-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계약기간을 455일에서 125일로 1/4 단축함
- 실시간 공정, 예산, 현장 등 사업관리 등 통합공정관리(TOMS)를 실시

### ■ 연봉제의 표류

- 직원 정서에서 경쟁심화, 보수삭감 불안 등 이유로 요지부동
- 노조선거의 핵심공약
- 임금교섭권 약화 초래를 이유로 절대불가 입장
- 상위직이 1999년에 선도적으로 실시한 데 비해 하위직은 도입이 부진
- 내부 갈등 표출을 두려워한 경영진 의지 부족

### ■ 연봉제의 준비

- 전 직원 설득 후에 노조와 협상하여 노조집행부와의 일방적 협상에서 탈피함
- 직원 불안감을 고려하여 1단계에서 연봉제 기반을 마련한 후 2단계에서 성과 차등폭을 확대하는 것을 제안
- 교섭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협상전문가를 초빙
- 민간기업 등 타기관 벤치마킹
- 경영진에서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실질 연봉제 도입 원칙을 고수
- 간부들은 소속 직원과의 1:1 홍보를 통해 연봉제 이해도를 높이고 편견 및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
- Innovation Workshop을 통해 연봉제 도입 필요성을 공유하고 직원 설득방안을 도출, 부서별 실행 점검과 평가를 실시
- 사내 홍보게시판을 운영하고 노조 간부와 관리직 직원을 대상으로 노사공동 본사 설명회를 실시함

### ■ 연봉제 합의 과정

- 2009년 12월 23일 1차 대의원대회에 안건 상정 불발
- 2009년 12월 29일 2차 대의원대회에 경영진 참석 및 설득으로 대의원 대회 가결
- 2009년 12월 29일 연봉제 도입에 합의하고 임금상 동결에도 합의
- 초기 32%만 찬성을 했으나 지속적인 공감대 형성으로 77%가 도입 찬성

### ■ 연봉제의 개요

- 장기근속자에게 유리한 연공서열식 급여제도를 폐지하고 30년 근속기준 기본연봉 상한액을 설정

- 성과 중심 보수체계를 위한 가산급 설정
- 호봉승급 2.5%를 가산급 1.8%로 대체
- 연 10억원 인건비 절감
- 연봉제 도입의 성과
  -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를 통해 조직경쟁력 제고
  - 일하는 조직문화 확산으로 국책사업 성공적 수행
  - 능력과 업적 중심의 인력관리 선진화로 타기관 벤치마킹 대상이 됨
- 향후 계획
  - 총보수의 20% 이상 차등 확대
  - 2010년 성과평가체계 개편방안 마련
  - 2011년 1월 성과체계 개편 시행

노사관계  
합리화

우수사례 기관 발표 요약

## 6. 법과 원칙에 기반한 노경관계 선진화

허준영 / 한국철도공사 사장

- 투쟁적 집행부 출현
  - 전문 노동운동가와 철도내부 활동가가 철도노조 집행부를 장악
  - 2003년 2월 민주노총으로 상급단체를 변경
  - 110억원대 조합비로 해고자 급여와 노조 활동에 사용
  - 불법파업 3회, 파업시도 4회에 전위대를 구성
  - 민주노총위원장에 2010년 1월 당선
- 노조의 권력화 및 그릇된 노동문화
  - 막대한 조합비와 투쟁조직을 바탕으로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열차를 세울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뿌리를 내림
  - 노조간부가 터줏대감 노릇을 하고 특권의식과 인사에 개입
  - 파업 불참시 직장에서 고립되고 애경사에 불참하여 집단 따돌림
- 원칙 없는 노경관리와 단체협약의 문제
  - 불법파업에 대해 징계와 해고가 이루어졌지만 합의과정에서 복직이 이루어져서 불법투쟁이 지속될 수 있는 악순환이 지속됨
  - 강성노조와 친노동정책 사이에서 타협을 반복
  - 4회에 걸쳐 해고자 59명 복직합의
  - 월드컵과 고속철도 성공적 개통 명분으로 손해 배상 철회와 징계 최소화 합의
  - 노조 전임자가 정부기준의 3배를 초과
  - 전임자 임금으로 29억원을 지출
  - 한글날, 제헌절 기타 휴가 등을 휴일로 보내고 있음
  - 노조간부 인사전보 시 사실상 합의해야 가능
  - 비합리적 3조 2교대 제도로 일이 없는 시간에도 인력을 배치
  - 정원 대비 부족인원 충원, 비연고지역 전보 제한, 유가족 특별채용, 부당징계 위로금 지급 등 인사 경영권을 제약
- 잘못된 관행 쇠신 및 제도개선을 추진
  - 노조간부 140여명 무노동 무임금 조치
  - 노조사무실에 계량기를 설치하여 수도광열비를 노조에 부담시킴
  - 구내식당 외주화, 경의선 차장 생략, 업무 외 직 원무임승차제도 폐지

- 단체협약 개선 추진

■ 노조의 저항

- 2009년 5월 식당외주화 및 선진화 철회를 요구하며 ‘빙법태업’
- 2009년 9월 억지파업에 돌입
- 2009년 11월 철도, 가스, 발전노조의 연대파업
- 2009년 11월 24일 전면적인 파업에 돌입

■ 파업에 대한 대응

- 기자회견을 통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
- 내부 직원에게는 담화문과 사내방송, 영상메시지를 통해 파업 만류
- 가족에게도 서신을 보내 명분 없는 불법파업 가담 만류
-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
-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로 불법파업 가담자 전원 불법행위 경중에 따라 징계처분
- 노조와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92억원)

■ 조직안정화와 지속성장

- CEO 대화방 설치와 경영진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교류와 소통을 강화
- 파업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관사 3천명을 양성하고 기관사 양성제도를 개선
- 필수유지업무제도 개선을 추진
- 단체협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실시
- 5조 2교대와 시차근무제 등 근무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추진
- 세미나·워크숍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
- 사가 부르기와 동호회 활성화 등을 통해 현장과 본사의 조직 일체감 조성

7.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계적 국영석유회사

강영원/한국석유공사 사장

■ 석유공사 대형화 추진

- 지역 메이저급 성장과 자생력 확보
- 일산 30만배럴, 매장량 20억배럴 확보를 목표로 함
- 해외 현지 직원 3,400여명으로 증가

■ 노사관계 선진화 장애 요인

- 전 직원의 80%가 노조에 가입
- 둔감, 적당한 타협문화
- 노조지도부 교체기로 강성 분위기
- 조직적 저항이 최고조

■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방향

- 정부 노동정책에 부응
- 사회적 책임의식을 강화
- 합리적 직원의견을 수렴

■ 3대 액션플랜

- 변화 공감대 확산
- 법과 원칙을 준수
- 합리적 노사관리

■ 추진노력 및 단체협약 개선내용

- 변화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직원들과의 간담회와 산행을 통한 열린 대화 실시, 전국의 비축지사와 해외사무소 등 현장의 목소리 청취, CEO Hot-Line 구축, 경영실적 공개 및 주간 기업문화회의의 CEO 주관 등
-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부당노동행위 제소에 대해 합의보다는 법무법인을 선임해서 부당노동

- 행위 구제신청 기각판정을 받음
- 합리적인 노사관리를 위해 단체협약 77개 조항 중에서 50개 조항을 개선
-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노동조합 탈퇴가 가능하도록 변경
- 노조의 경영활동 개입 및 인사권 관여를 금지
- 조합원 가입범위를 축소하고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을 축소

■ 성과요약

- 공사의 비전과 핵심가치 공유 확산
- 전 직원 MBO 도입
- 전략경영관리 시스템 구축
- 글로벌 지식경영 통합시스템 구축
- 고객만족도가 2008년 88.2점에서 2009년 90.4점으로 향상

■ 향후과제

- 성과와 역량 중심의 신성과보상제도 도입
- 기본연봉 차등을 현행보다 2배 확대
- 성과연봉 차등을 현행 65%에서 300%로 확대
- 저성과자 관리체계 강화

**주제발표**

**바람직한 보수체계**

송대희/ 공공정책포럼 좌장

■ 공공기관 보수체계 현황

- 90년대 말 이후 연봉제 도입이 본격화되었으나 형식적으로 운용

- 성과에 따른 차등 미미하고 임금이 자동적으로 인상
- 상위 간부직에 국한하여 연봉제가 시행
- 연봉제의 전 직원 확산과 함께 실질적인 연봉제 구현이 필요

■ 연봉제 운영방안

- 전직원 대상으로 연봉제를 실시하되 도입 효과가 미미한 직종 혹은 계층은 적용을 유보
- 평가가 용이하고 공정성 및 업무의 재량성과 연계하여 결정
- 신입사원은 입사 시점부터 적용
-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
- 수당 체계를 단순화하여 임금의 투명성을 제고
- 임금 범위를 설정하고 직급별 임금폭을 중첩형으로 만들어 상위직급으로 갈수록 임금폭이 확대되는 구조로 기본연봉을 설계
- 직무급제를 도입하여 직무와 성과 간 불일치를 완화
- 성과연봉의 비중을 확대하고 성과가 합리적으로 연동되도록 차등폭을 설정

■ 연봉제 도입시 유의사항

- 제도 도입 취지 및 운영방안에 대한 충분한 대화 및 의견수렴
- 기관의 현황 분석을 통한 적절한 제도 설계 및 도입 노력
- 제도의 형식적 도입을 지양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 기관 목표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평가지표를 설정
-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자의 평가스킬, 역량 등에 대한 교육 강화
- 합리적인 평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직 문화 형성 노력 강화

**보수체계  
개편**

**관련 토론**

**김성태**/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기관통합과 기관 선진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전 직원에 대해서 누적식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가족친화경영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있다. 임원부터 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96%의 찬성으로 연봉제를 도입했다. 민노총을 탈퇴하여 복수노조에서 단일노조를 이루고 고객만족도가 상승했다.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공기업 임금피크제를 가장 먼저 도입했다.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1/3을 일선 현장에 배치했다. 동기부여를 위해 업무능력이 뛰어난 직원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대상 시기를 늦추고 보수를 차등지급하며 적정수준의 경쟁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읍선부 피크제를 도입하여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은 임금피크제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심의표**/ 공운위 민간위원

인사 보수 체계에 대한 사례발표를 듣고 선진화 방법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많은 공기업에서 선진화를 이루고 있으나 기관장의 추진력과 실천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공기업의 보수체계 성과제 도입 비율이 80%를 넘었으나 민간은 60% 수준이다. 통계적으로는 성과제를 도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면에서는 민간기업 만큼의 성과가

있는지 의문시되고 있다. 실질적인 연봉제 구축이 필요하다.

**노사관계  
합리화**

**관련 토론**

**황해성**/ 한국감정원 원장

단체협약을 개선하고 노무전담 부서를 신설했다. 노무법인의 자문을 받고 긴급 대의원회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했다. 직원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김선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노사가 공감하고 있다. 상급단체를 민노총에서 한국노총으로 변경했다. 노동부 노사 파트너십에 참여하고 있으며 단협 중에서 쉬운 것부터 차츰 해결하고 있다.

**강 훈**/ 공운위 민간위원

기관장의 법과 원칙을 지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법률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공공정책 포럼에서 노사문제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 맺는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발표하고 토론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감안하여 다음 워크숍은 새벽부터 시작하는 것을 고민해보겠다. 공공기관 선진화는 무늬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변화하는 것이다.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하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수사례가 많이 창출되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토지주택공사의 통합 이후 인사개혁이 인상적이다. 관광공사와 한국거래소의 사례에서 보듯이 인사개혁에 대한 기관장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철도공사의 경우 노조의 파업에 대한 대응이 중요했다. 앞으로 정부도 공공기관이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부는 공공기관장들이 기업가적인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공공기관도 민간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받아들여야 한다. 선제적인 우수사례 창출과 성과를 위해 각 기관장의 노력이 필요하다. KIP



# 공공정책포럼

## ■ 제2회 공공정책포럼

### 공공정책포럼 소개

공공정책분야의 전문가, 공공기관 및 정책담당자로 구성된 본 포럼은 공공기관정책의 현안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연구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주제발표 및 자유토론을 통해 정책수요를 청취하고 연구와 관련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한다.





## 국가고용전략과 공공기관의 역할

### 제2회 공공정책포럼 개요

- 주 제            국가고용전략과 공공기관의 역할
- 일 시            2010년 2월 18일 07:30~09:00
- 장 소            서울 메리어트 호텔 클래식 세븐
- 진행순서
  - 07:30~08:00    조  찬
  - 08:00~08:05    인사말  
                  송대희  좌장(KDI 초빙연구위원)
  - 08:05~08:35    주제 발표  
                  신영철  노동부 고용정책실장
  - 08:35~09:00    자유 토론
  - 09:00            폐회

\* 본 원고는 2010년 2월 18일 서울 메리어트 호텔 클래식 세븐에서 「국가고용전략과 공공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공공기관정책 연구센터가 개최한 제1회 공공정책포럼의 주제 발표 및 토론 요약입니다. 주제 발표 및 토론의 내용이 소속기관이나 한국조세 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 주제발표 요약

#### ■ 국가고용전략과 공공기관의 역할 (기조강연)

신영철 / 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이제까지 진행된 국가고용전략과 이에 대한 향후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려 한다. 협의·진행되고 있는 단기 프로젝트 외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중장기 방안은 논의를 통해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 I. 현 고용 상황 및 2010 전망

#### 1. 현재 고용 상황

외환위기 당시 취업자가 150만명 감소하였던 것과 달리, 08년 금융위기 때는 7만명이 감소하였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해도 고용악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완만했던 것은 금융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주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취업자 증가 추이는 농림어업 취업자 수를 제외하였을 경우, 2009년 3월을 저점으로 상승하였다. 작년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 진행된 공공행정 분야를 제외하였을 때, 민간의 취업자 수는 계속 감소하다가 금년 1월 이후 증가하고 있다.

#### 2. 2010년 고용전망

올해에는 15세 이상 인구가 41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장률을 5%로 예상한다면 약 20만개 내외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므로, 고용률은 지난해에

비해 0.1%p 하락한 58.5%, 취업애로계층은 188만명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 II. 향후 고용정책 기본 방향

1월부터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시는 국가고용전략 회의가 신설되었다. 여기에서 정책의 패러다임을 고용창출에 둘 것이며, 고용의 상황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고용률을 정책의 핵심 지표로 삼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고용정책 대상을 실업자 뿐만 아니라 취업 애로계층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단기적인 고용회복 프로젝트 추진과 동시에 중장기 대응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구조 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III.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구조 개선방안

#### 1. 구조적인 문제점

중장기적 프로그램의 추진 차원에서 고용시장의 4가지 구조적인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첫째, 노동수요 측면에서 제조업이 자본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고용창출력이 저하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여 제조업 고용을 유지하는 한편, 서비스업 규제를 완화하고 사회서비스를 육성하는 등 유실인력을 지속적으로 흡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경제활동 참여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더불어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생산 가능 인구의 증가율이 둔화하여 2017년부터는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할 전망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미리 대응하며, 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인력 수급 및 인력 양성 측면에서 대학 졸업생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한편, 일자리는 부족하여 높은 청년 실업률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은 인력난이 지속되는 상황이다<sup>1)</sup>. 이러한 수요에 맞춰 대학 입학인원·학과 등을 구조조정하는 방법으로 인력수급의 미스매치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구조 측면에서 볼 때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는 과보호되고 중소기업 근로자는 열악한 근로조건에 있다. 이에 대해 대기업 일자리 비중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sup>2)</sup>. 중소기업 역시 일자리를 확대하는 동시에 일자리 질을 높여 청년 인력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 제도 외에 노동시장을 경직되게 하는 근로시간, 임금체계 등의 내부 요인을 다양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2. 구조적 고용대책 추진방향

우선 경제의 고용창출력 제고를 위해 산업정책 및 재정·세제 지원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 창업·입지 등 규제개선을 위한 기업환경개선대책 수립, 노동집약형 산업을 숙련집약형 산업으로 고부가가치화, 부품·소재기업의 육성 계획이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력을 제약하는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및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서비스의 비중이 낮은 편이므로 시장주도적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관광·레저 산업의 활성화, 해외환자 유치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수출 증대, 서비스 R&D 투자 확대를 집중적으로 추

진할 계획이며, 전문자격사 시장 역시 선진화할 것이다.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제약하는 문제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력양성 강화는 대학의 구조조정 등의 추진과 관련이 있다. 금년에 국가고용전략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회의체 밑에 교육 개혁을 추진할 T/F를 두고 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부문별 2년 단위의 인력수급 전망이 아니라, 관련부서가 참여하여 부문별·총량 전망을 함께 조정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할 것이다. 그리고 신성장동력 산업부서와 연계하여 교과부 외 각 정부부서와 연계된 특성화고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일정한 계층에 속하게 되면 수혜를 제공하고, 계층을 벗어나면 수혜를 제공하지 않아 탈수급을 저해하므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노동시장 효율화와 관련하여 근로형태를 다양화할 것이며, 임금을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기업에 대한 컨설팅 형태로 지원할 예정인데,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선도적 모델을 정립하여 민간에 확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정규직과 기간제, 학력 간 임금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보상시스템으로 개선해 가고자 한다. 현재 정부 중심의 고용서비스와 더불어 민간고용서비스를 육성할 계획이다.

1) 외국 비전문인력이 70만명 유입된 상황임에도, 중소기업 빈 일자리가 21만개에 이르고 있다.

2) 우리나라 노동시장 일자리 분포를 보면, IMF 이전에 21%에 이르던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12~3%로 감소하였다. 선진국과 비교하였을 때도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1/3 수준 미만이다.

## V. 공공기관의 역할

이미 정부 간 공감대 형성을 통해 확정된 내용과 더불어, 향후 논의를 통해 도출하고자 하는 방향도 함께 말씀드리겠다. 유연근무제 활성화는 노동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높여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금년부터 공공부문과 정부부문에 대해 유연근무제 모델을 정립하고 점차 민간부문에 확장할 계획이다. 우선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적합 직무를 발굴하고, 신규 고용 시 단시간근로자를 적극적으로 채용해야 할 것이다<sup>3)</sup>. LH 공사의 경우, 60세 이상 고령자를 단시간근로형태로 채용하여 전국의 영구·국민임대 등 560개 단지에 배치·활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단시간근로자를 활용하는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낮고 경제활동참여·고용률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이유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향후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출산-육아기 여성이 파트타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일자리를 파트타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sup>4)</sup>.

임금유연화와 관련하여 민간부문으로의 확산 노력이 필요하다. 고연령자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등이 청년 채용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청년과 고령자 고용은 경쟁 관계(trade off)가 아니라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는 것이 OECD 국가들의 선행적 경험이다. 고령자 고용이 높은 국가일수록 구매력이 향상되고 생산물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내수가 활성화되면서 국가 차원에서 세수증대와 재정지출이 건전화되면 경제성장률이 높아져 다시 기

업의 재투자와 청년 고용 확대로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확대된 청년 인턴에 대한 취업지원 강화도 필요하다. 특히 정부부문과 공공부문의 청년인턴 제도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선을 부탁드린다. 정원이 제한된 공기업은 정규직 전환이 어렵더라도, 일반 민간 기업으로 취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인턴 기간 중 실질적인 훈련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에너지관리공단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의 고용·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따라서 종전에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 제공하던 사회적서비스를 사회적기업에서 공급할 때,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이에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각 공기업 역시 내부적 상황에 따라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우선구매 또는 민간위탁 등의 방안을 강구해 주신다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 질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포스코, LH 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 ■ 자유토론

송대희/좌장

고용정책은 경제 전반 및 산업·재정정책과 큰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상에서 소개된 현재 정부의 추진정책에 대해 의견 및 질문을 부탁드린다.

3) 이에 관해서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T/F를 운영할 계획이므로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생산성을 제고하여 공기업의 효율화에 반하지 않는 방향으로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이봉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경영지원본부장

단기근무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에서 실시할 경우, 정원 내에서 정규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이러한 방안이 실현 가능할지에 대해 묻고 싶다.

**신영철**/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로 평가받는 정부·공공부문에서 단시간 근로를 확대하여 여성 등의 경제참여를 확대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러한 양질의 단시간 근로의 확대는, 앞으로 정규직·비정규직을 모두 포함한 기타 형태로 확장될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정책은 정규직 제외 인력에 대해서 정원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규직에 대해서도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정원을 산정하게 되므로 정원 자체는 종전대로 유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정건용**/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인재경영과장

현재 기존 정원을 인원수로 관리하고 있으나, 단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할 예정이다. 정원 산정 문제에 있어서, 단시간 근로에 해당하는 신규채용은 기본적으로 정규직에 대해 추진할 예정이나 향후 계약직·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

**배준호**/한신대학교 일본지역학과

금일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문제에 대한 공공기관

의 역할, 앞으로의 기여 방향에 대한 언급이 부족해 아쉬웠다. 또한, 앞으로 노동부에서 대기업·공공기관 등의 안정된 고용과 그렇지 않은 기관의 고용 간 격차를 조사하고, 이를 해결할 개혁 방향에 대해 고민하면 좋을 것이다.

**신영철**/노동부 고용정책실장

고용 문제에 대해 공공기관의 기여도가 중요하지만 방만 경영에 대한 지적, 정부 내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 역할을 제고하기 어려웠다.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성과급·직무급 형태의 확산 등 임금체계를 유연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김애실**/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금일 소개된 유연근무제, 가족친화적 정책 등은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더불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 및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중소기업 등 제조업 중심의 정책에서, 서비스 산업도 함께 지원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여성의 경제참여가 활성화될 것이다.

**김동욱**/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앞으로도 생산성이 낮고 대우가 좋지 않은 직장에 대한 인력 공급은 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금일 발표하신 단기적 대책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고용 시장을 확대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UAE 원전 수주의 예에서 볼 수 있듯, 민간투자를 유도하여

직·간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을 장려하고, 민간 대기업과의 연계 등을 활성화하는 것이 청년 고용 창출의 실마리가 될 것이다.

**강성식**/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사장

앞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좋은 예가 소개되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관리하는 주택이 50만여 호 가량이며, 2018년에는 140만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영세한 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필요성을 절감하였고, 60세 이상 고령자·여성 등으로 구성된 주택 관리자를 선발하게 되었다. 더불어 고용 문제에 있어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보수 등은 상당 부분 정비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강호인**/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작년 공공기관 선진화와 관련한 인력의 구조조정이 있었다. 이는 국민 부담의 절감·조직 재정비 등을 위한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인구구성 변화뿐만 아니라,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지식 경제 중심으로 사회 변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 문제와 관련해 이러한 고민들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한다. 공공정책국도 유연한 근로를 통한 창의성 확보, 남녀 인력차이의 극복, 세대 간 직장 진입 및 보호의 문제에 있어 공공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선도적 역할을 고민하고 있으므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연구원도 현재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향후 실제 고용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정책의 정합성을 높이는 데 관심을 확장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공공기관 역할의 중요성에 따라 관련 연구·사례 등이 논의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본 공공정책포럼이 앞으로도 소통과 토론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하길 바란다.

**박정수**/ 한국조세연구원

저희 센터는 장·단기 정책 수요 및 현실과 연계된 정책들을 고민하고 있다. 또한 개소식 이후 연구인력을 충원하는 데 주력해 왔다. 본 포럼의 경우 지난 1월에는 이용걸 차관님을 모시고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였고, 이번에는 신영철 실장님을 모시고 고용전략과 공공기관의 역할을 다루었다. 3월에는 인천대학교 옥동석 교수님을 모시고 공공기관의 장·단기 부채에 대해 논의할 것이며, 4월에는 공공기관 Best Practice를 다룰 예정이다. 아울러 포럼 위원 여러분께 논의 주제 수요를 조사하여 반영하려 하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은 매월 논의 주제에 따라 모시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KIPF

# 주요국의 조세동향

\* 본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주요국의 조세동향」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동향 10-04

### 요약

- 미국 정부는 3조 8,340억달러 규모의 2011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함
  - 약 1조 2,670억달러(GDP 8.3%) 적자예산으로 조세정책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하면서도 재정적자를 축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
  - 중산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감세정책, 대형 금융기관에 금융위기책임세 부과, 부유층 증세를 통해 재정적자를 감소하기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기존 감세정책(EGTRRA 등) 폐지 등이 주요 내용임
- 프랑스 의회는 프랑스 2010 재정법안(Finance Bill 2010)을 승인함
  - 승인된 재정법안의 주요 내용은 B2B 서비스의 과세장소(place of taxation) 변경, 연결자법인 범위의 확대, R&D 관련 일부 조세혜택의 연장 및 저에너지건물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하 등임
- 아일랜드 정부는 2010년 2월 4일 2010 재정법(Finance Bill 2010)을 발행함
  - 주요 세법개정 사항은 이전가격세제(Transfer

Pricing legislation) 도입, 주거과세(Domicile levy) 도입, 소득세 세액공제 축소 등임

### 1. 미국의 2011년 예산안

-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2월 1일 3조 8,340억달러 규모의 2011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보고함
  - 예산안에서는 2010~2020년까지 향후 10년간의 재정계획을 제시함
  - 경기부양 정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재정건전화와 일자리 창출에 국정능력을 집중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약 1조 2,670억달러의 적자예산 편성(GDP 대비 8.3%)

〈표 1〉 미국의 예산추이

(단위: 십억달러, %)

회계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11~2020
예산총액													
세입	2,105	2,165	2,567	2,926	3,188	3,455	3,634	3,887	4,094	4,299	4,507	4,710	37,268
세출	3,518	3,721	3,834	3,755	3,915	4,161	4,386	4,665	4,872	5,084	5,415	5,713	45,800
재정적자	1,413	1,556	1,267	829	727	706	752	778	778	785	908	1,003	8,532
GDP 대비													
세입	14.8	14.8	16.8	18.1	18.6	19.0	18.9	19.3	19.4	19.5	19.5	19.6	18.9
세출	24.7	25.4	25.1	23.2	22.8	22.9	22.9	23.1	23.1	23.0	23.5	23.7	23.3
재정적자	9.9	10.6	8.3	5.1	4.2	3.9	3.9	3.9	3.7	3.6	3.9	4.2	4.5



■ 조세분야 주요 내용

- 중산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감세정책을 취하고 대형 금융기관에 금융위기책임세를 부과하며 부유층에 대해서는 증세하는 안을 마련함
- 2010년 12월로 만료되는 2001, 2003년 감세법을 연소득 25만달러 미만 중산층 가정에 대해서는 영구화하고, 2009년 수준으로 Alternative minimum tax(AMT) 공제한도를 지속하되 인플레이션에 연동되도록 AMT를 운영함
- 자산규모 500억달러 이상의 대형 금융기관에 금융위기책임세를 부과하고 부부합산 연소득 25만달러 이상(독신 20만달러)의 소득자에 대해 2001년, 2003년 감세법을 종료함
- 체납된 세금을 감소하기 위해 행정적인 노력을 하는 안이 포함됨

■ 부유층에 대한 증세

- 20만달러(부부합산 신고 25만달러) 이상의 소득을 가진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 한계세율 및 자본이득세율 및 배당소득세율을 인상함
- 소득세 한계세율의 인상
  - ☞ 소득세 한계세율 인상: 현재의 6단계 누진세율 체계<sup>1)</sup> 중 33%와 35%의 세율 대신 36%와 39.6%의 세율을 적용함

- ☞ 부시정부 2001 감세법안(EGTRRA) 이전 상태로 회귀
  - 자본이득세율 및 배당세율의 인상
- ☞ 고소득자에 대한 자본이득 및 배당에 대한 세율을 현행의 15%에서 20%로 인상함
- ☞ 5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한 경감세율 적용규정을 폐지함
- ☞ 2010년 12월 3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함
- 20만달러(부부합산 신고 25만달러) 이상의 소득을 가진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항목별 공제 제한규정 및 인적공제 삭감 규정을 재도입
- 39.6%와 36% 과세구간이 적용되는 고소득 납세자에 대한 항목별 공제금액을 세액의 28%로 제한함
- ☞ 2010년 12월 3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함

〈표 2〉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통한 세입증가 효과

(단위: 백만달러)

회계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 \$250,000(기혼) 및 \$200,000(미혼) 이상의 소득을 가진 납세자에 대한 36%와 39.6%의 세율 원상복구 및 28% 세율의 확대	-	14,509	26,217	29,295	32,556	35,676
- \$250,000(기혼) 및 \$200,000(미혼) 이상의 소득을 가진 납세자에 대한 인적공제 삭감규정 및 특별공제 한도 원상복구	-	6,840	14,925	17,119	18,991	20,808
- \$250,000(기혼) 및 \$200,000(미혼) 이상의 소득을 가진 납세자의 자본이득 및 배당에 대해 20%의 세율 부과	1,344	12,165	-263	3,315	8,230	11,372
- 항목별 공제에 대한 세율을 28%로 제한		7,896	21,582	24,500	27,019	29,351
소 계	1,344	41,410	62,461	74,229	86,796	97,207

1) 소득세 세율(2009-10)

부부합산신고		개인(미혼)	
과세표준 구간	한계세율	과세표준 구간	한계세율
16,700 이하	10	8,375 이하	10
16,701 - 68,000	15	8,376 - 34,000	15
68,001 - 137,300	25	34,001 - 82,400	25
137,301 - 209,250	28	82,401 - 171,850	28
209,251 - 373,650	33	171,851 - 373,650	33
373,650 초과	35	373,650 초과	35

〈표 2〉의 계속

(단위: 백만달러)

회계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11 ~ 2020
- \$250,000(기혼) 및 \$200,000(미혼) 이상의 소득을 가진 납세자에 대한 36%와 39.6%의 세율 원상복구 및 28% 세율의 확대	38,809	41,960	45,135	48,399	51,883	364,439
- \$250,000(기혼) 및 \$200,000(미혼) 이상의 소득을 가진 납세자에 대한 인적공제 삭감규정 및 특별공제 한도 원상복구	22,571	24,324	26,054	27,687	29,170	208,489
- \$250,000(기혼) 및 \$200,000(미혼) 이상의 소득을 가진 납세자의 자본이득 및 배당에 대해 20%의 세율 부과	12,370	13,288	14,162	14,973	15,752	105,364
- 항목별 공제에 대한 세율을 28%로 제한	31,570	33,938	36,268	38,426	40,625	291,175
소 계	105,320	113,510	121,619	129,485	137,430	969,467

■ 법인의 세부담 증가

- 석유 및 가스회사에 적용되는 조세특례규정 폐지, Superfund<sup>2)</sup>과세, 경제적인 실질에 따른 과세 강화, LIFO 및 저가법의 회계처리 폐지, 상중세 평가규정의 개정 등을 통해 추가적인 세수증대 효과 기대
- 대형은행 및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위기책임세를 채택함
  - 총자산이 500억달러를 초과하는 은행, 저축은행, 은행 및 저축은행의 지주회사, 중개인, 증권매매업자는 미국 금융회사의 전 세계 부채의 0.1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함

2) 공해방지사업을 위한 대형 자금 마련을 위해 석유회사 등에 부과하던 세금으로 1995년 폐지되었으나, 이번 예산안에서 다시 부과할 것을 제안함

- 금융위기세 등을 통해서 933억달러 상당의 세수증대 효과 기대

- 국제조세 분야에서 조세회피 방지 노력 강화, 기타 세제개혁 정책 시행으로 1,222억달러 상당의 세수증대 효과 기대

〈표 3〉 기업에 대한 증세 및 loophole 방지를 통한 세입 증가 효과

(단위: 백만달러)

회계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 국제조세 분야에서 과세 강화 및 기타의 조세개혁 정책 실행	246	6,869	11,878	12,707	13,226	13,223
- 금융기관 관련 추가과세	52	8,189	8,256	9,277	9,300	9,323
- LIFO 폐지	-	-	2,667	6,007	7,070	7,120
- 석유 및 가스회사에 적용되는 조세특례규정 폐지	10	2,754	4,323	4,059	4,013	4,038
- 셀룰로이드 바이오연료 제품에 대한 공제를 개정	784	6,569	8,058	4,901	2,659	1,491
- 통상소득으로 과세되는 이자	-	1,452	3,289	3,914	3,741	3,176
- 상중세의 평가규정을 개정	40	816	1,630	1,806	2,023	2,253
- Superfund tax 부활	-	1,203	1,608	1,729	1,837	1,921
- 보험기관 관련 추가과세	-	196	558	713	868	1,076
- 실업보험에 대한 영구적인 누진세율의 적용	-	-	1,458	1,501	1,539	1,571
- tax gap의 감소를 위한 조치	-	326	1,029	1,217	1,359	1,441
- 저가법 폐지	-	-	286	1,423	2,045	1,402
- 법인에 대한 신고를 강화	-	11	214	543	688	766
- 경제적인 실질에 의한 과세 강화	1	29	87	168	285	380
- 조직재편성으로 받은 배당에 대한 이득제한 규정을 폐지	-	46	77	78	78	81
- 선수소득에 대한 세액 공제의 제한	-	120	72	70	69	68
- 상당한 손실에 대한 공제의 제한	-	-	22	32	33	34
- 가산세의 확대	-	1	2	2	2	4
소 계	1,133	28,585	45,520	50,153	50,842	49,375



〈표 3〉의 계속

(단위: 백만달러)

회계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11 ~ 2020
- 국제조세 분야에서 과세 강화 및 기타의 조세개혁 정책 실행	13,601	14,105	12,726	11,812	12,042	122,189
- 금융기관 관련 추가과세	9,344	9,365	9,386	10,409	10,433	93,282
- LIFO 폐지	7,162	7,224	7,207	7,278	7,350	59,085
- 석유 및 가스회사에 적용 되는 조세특례규정 폐지	3,970	3,843	3,837	3,937	4,045	38,819
- 셀룰로이드 바이오연료 제품에 대한 공제를 개정	309	-	-	-	-	23,987
- 통상소득으로 과세되는 이자	2,534	1,975	1,530	1,355	1,011	23,977
- 상중세의 평가규정을 개정	2,496	2,753	3,025	3,312	3,615	23,729
- Superfund tax 부활	1,995	2,068	2,129	2,196	2,239	18,925
- 보험기관 관련 추가과세	1,368	1,690	2,143	2,639	3,162	14,413
- 실업보험에 대한 영구적인 누진세율의 적용	1,596	1,616	1,631	1,642	1,642	14,196
- tax gap의 감소를 위한 조치	1,526	1,604	1,681	1,765	1,852	13,800
- 저가법 폐지	1,127	283	296	309	323	7,494
- 법인에 대한 신고를 강화	848	933	1,020	1,112	1,208	7,343
- 경제적인 실질에 의한 과세 강화	491	608	699	775	857	4,379
- 조직재편성으로 받은 배당에 대한 이득제한 규정을 폐지	83	85	86	86	88	788
- 선수소득에 대한 세액 공제의 제한	69	69	72	74	77	760
- 상당한 손실에 대한 공제의 제한	35	36	38	38	39	307
- 가산세의 확대	4	4	5	6	6	36
소 계	48,565	48,269	47,519	48,754	49,998	467,580

■ 감세정책

- 경기부양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2년간의 근로연계세액공제(Making Work Pay Credit)를 2011년까지 연장함
- 근로소득 중 6.2%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간 400달

- 리(부부합산신고 800달러) 한도 이내에서 환급함
- 근로소득 중 6,452달러(부부합산신고 12,903달러)를 공제하며 75,000달러(부부합산신고 150,000달러)를 초과하면 조정후총소득(AGI)의 2%씩 단계적으로 공제금액을 삭감함
- 경기부양법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및 자녀 및 부양가족공제(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를 확대함
- EITC 확대: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구에 대해 EITC를 영구화하고, 공제금액과 공제금액 삭감이 시작되는 소득금액을 인상함
- 자녀 및 부양가족공제 확대: 자녀 및 부양가족공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공제율이 감소되는 구조를 가지는데, 기존에는 소득공제비율이 조정후총소득(AGI) 15,000달러를 넘게 되면 초과소득 2,000달러당 1퍼센트씩 감소하였으나, 금년에는 소득공제비율이 삭감되는 기준을 85,000달러로 증가함
-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s는 고등교육비에 대한 공제로 Hope Scholarship credit를 대체하여 규정을 영구화하고, 물가 인상을 반영하여 공제금액을 조정함
- 저축자세액공제(savers' credit)의 대상자 중 주택보유자의 세액공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급을 허용하고 세액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소득수준을 인상함
- 세액공제의 대상자는 조정후총소득(AGI)이 27,750달러(부부합산 신고의 경우에는 55,500달러), 주택보유자의 경우에는 41,625달러였으나, 이를 각각 32,500달러(부부합산 신고의 경우에는 65,000달러), 48,750달러로 인상함
- 2009년 2월 17일 이후 취득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식을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

우에는 자본이득세를 면제하고, 연구 및 시험세액공제 규정을 영구화함

〈표 4〉의 계속

(단위: 백만달러)

〈표 4〉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세금감면으로 인한 세입감소 효과

(단위: 백만달러)

회계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가구 및 개인에 대한 세금감면:						
- Making work pay Tax Credit 제공	-	30,132	31,075	-	-	-
- EITC 확대	-	85	1,674	1,645	1,636	1,628
- Child Tax Credit의 환급 확대	-	377	1,345	1,359	1,368	1,373
- savers' credit 확대 및 IRA 및 401(k)에의 자동 가입	-	323	3,189	3,821	3,905	4,091
- 고등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공	-	951	6,875	7,444	7,815	8,400
<b>소 계</b>	<b>-</b>	<b>31,868</b>	<b>44,158</b>	<b>14,269</b>	<b>14,724</b>	<b>15,492</b>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자본이득과세 폐지	-	-	-	-	55	280
- 연구 및 시험세액 공제 영구화	3,044	5,346	5,969	6,622	7,286	7,945
- 휴대폰의 비용공제 제한을 폐지	69	277	226	238	248	266
<b>소 계</b>	<b>3,113</b>	<b>5,623</b>	<b>6,195</b>	<b>6,860</b>	<b>7,589</b>	<b>8,491</b>

회계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11 ~ 2020
가구 및 개인에 대한 세금감면:						
- Making work pay Tax Credit 제공	-	-	-	-	-	61,207
- EITC 확대	1,639	1,663	1,692	1,730	1,766	15,158
- Child Tax Credit의 환급 확대	1,377	1,374	1,365	1,354	1,349	12,641
- savers' credit 확대 및 IRA 및 401(k)에의 자동 가입	4,308	4,584	4,913	5,320	1,801	40,165
- 고등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공	8,841	8,632	8,738	8,870	8,907	75,473
<b>소 계</b>	<b>16,165</b>	<b>16,253</b>	<b>16,708</b>	<b>17,274</b>	<b>17,733</b>	<b>204,644</b>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자본이득과세 폐지	731	1,217	1,591	1,933	2,248	8,055
- 연구 및 시험세액 공제 영구화	8,597	9,244	9,887	10,530	11,182	82,608
- 휴대폰의 비용공제 제한을 폐지	281	296	314	332	348	2,826
<b>소 계</b>	<b>9,609</b>	<b>10,757</b>	<b>11,792</b>	<b>12,795</b>	<b>13,778</b>	<b>93,489</b>

2. 프랑스 2010 재정법안(Finance Bill 2010) 승인

- 프랑스 의회는 2010 재정법안(Finance Bill 2010)을 2009년 12월 18일에 통과시키고 2009년 12월 30일에 공포함
- 2010 재정법안(Finance Bill 201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부가가치세(VAT)

- B2B 서비스 공급의 경우, 과세장소는 공급자의 사업장이 위치하는 장소에서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이 위치하는 장소로 바뀜
- 다만, B2C 서비스 공급의 경우 과세장소(place of taxation)는 여전히 공급자의 사업장이 위치하는 장소임
- 운송수단의 장기 리스의 경우, 과세장소(place of taxation)는 공급자의 사업장이 위치하는 장소에서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이 위치하는 장소로 바뀜
- 다만, 운송수단의 단기 리스의 경우, 과세장소는 운송수단이 실제로 리스된 장소임
- on-road 차량 장기 리스 기간 : 30일 초과
- 그 밖의 운송수단의 장기 리스 기간 : 90일 초과
- 문화, 예술, 스포츠, 과학, 교육, 엔터테인먼트 및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B2B로 공급하는 경우, 과세장소(place of taxation)는 공급자의 사업장이 위치하는 장소에서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이 위치하는 장소로 바뀜
- 다만, B2B를 제외한 공급방식은 여전히 이러한 서비스가 물리적으로 행해지는 장소가 과세장소(place of taxation)임
- 전자, 라디오, 텔레비전, 통신서비스의 경우, 2015년 1월 1일부터 B2C로 공급하는 사업의 신고·납세지(place of taxation)는 공급받는 자가 사업장이 있는 장소임

■ 법인세

- 외국의 투자법인이 투자한 프랑스의 피투자법인도 연결자법인에 포함될 수 있음
- 다만, 연결자법인은 외국의 투자법인 주식을 95% 이상 소유하여야 하고, 외국의 투자법인은 프랑스

- 의 피투자법인 주식을 95% 이상 소유하여야 함
- 또한 외국의 투자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야 하며, EU 또는 EEA 안에 위치하여야 함
- 2009년에 종료 예정이던 R&D 세액공제의 즉시 환급 등에 대한 혜택을 연장

■ 개인소득세(individual taxation)

- 저에너지소비 건물(low energy consumption building)에 대해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인하
- 현행 제도 : 저에너지소비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첫 12개월 동안은 대출이자의 40%를, 다음 4년 동안은 대출이자의 20%를 개인소득세에서 공제함
- 개정 제도
  - ☞ 2010년에 취득하거나 건축된 거주주택의 경우 대출이자의 30%를, 다음 4년 동안은 대출이자의 15%를 개인소득세에서 공제함
  - ☞ 2011년에 취득하거나 건축된 거주주택의 경우 대출이자의 25%를, 다음 4년 동안은 대출이자의 10%를 개인소득세에서 공제함
  - ☞ 2012년에 취득하거나 건축된 거주주택의 경우 대출이자의 15%를, 다음 4년 동안은 대출이자의 5%를 개인소득세에서 공제함
- 조세감면 등으로 인한 혜택의 총액한도를 낮춤
- 현행 제도 : EUR25,000+과세소득의 10%
- 개정 제도 : EUR20,000+과세소득의 8%
- 2011년 이후 직접세 징수한도제도(tax shield)상 소득계산에 배당 등을 포함
- 직접세 징수한도제도(tax shield)는 직접세와 사회보장부담금이 납세자 소득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자는 일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
- 개정 제도 : 2011년부터 납세자의 소득계산에 배당,

- 통상손실(loss) 및 증권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자본 손실(capital loss)에 관한 조세감면액(tax relief)을 포함
- 자발적 퇴직자의 퇴직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일부 감면제도를 2010년 1월 1일부터 폐지

■ 인지세(stamp duty)

- 비거주자인 주주가 프랑스 밖에서 프랑스 부동산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여도 5%의 인지세(stamp duty)를 부담하도록 함

3. 아일랜드 2010 재정법 발행

■ 정부는 지난 2010년 2월 4일 2010 재정법(Finance Bill 2010)을 발행함

- 이는 2010 예산안(Budget for 2010)에서 발표된 내용 외에 여러 세법개정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로 과세기반 확대를 통한 증세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이전가격세제(Transfer Pricing legislation) 도입

- 도입 목적
  - 아일랜드에서 법인세가 과세되는 납세자가 국내 또는 국외 특수관계자<sup>3)</sup>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취득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가격이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sup>4)</sup> 범주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아일랜드의 재정에 손해가 없도록 함
- 적용방법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비용이 과대계상

(overstated expenses)되거나 수익이 과소계상(understated trading receipts)되어 아일랜드에서 납부세액이 줄어든 경우 해당 비용과 수익을 이전 가격 조항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적용제외

- 종업원 수가 250명 이하이고 연간 매출액이 EUR50백만 이하이거나 총자산이 EUR43백만 이하인 중소기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적용시기

- 2011년 1월 1일부터 도입되며, 2010년 7월 1일 이전에 합의한 계약 및 조건에는 적용하지 않음

■ 주거과세(Domicile levy) 도입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에 대해 EUR200,000의 주거과세를 도입함

- 아일랜드에 주소가 있을 것
- 아일랜드 소재 재산가액이 EUR5백만을 초과할 것
- 전세계 소득이 EUR1백만을 초과할 것
- 아일랜드에서 소득세 납부세액이 EUR200,000 이하일 것

- 주거과세 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아일랜드에서의 거주 여부 또는 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이를 납부해야 하며, 아일랜드에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이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함

■ 소득세 세액공제 축소

- 장기보험증권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범위를 2010년부터 축소함

3) 아일랜드 법인세법에서는 50% 이상의 지분관계가 있는 경우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4) 정상가격은 "다국적기업 및 과세관청을 위한 OECD 이전가격지침(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에 따라 결정함



- 주택담보대출이자(mortgage interest) 공제를 2018년부터 폐지함
- 2004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 사이 발생한 요건을 갖춘 주택담보대출이자에 대해서는 2017년 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함
- 2012년에 발생한 요건을 갖춘 주택담보대출이자의 경우 2017년까지 공제가 가능하나 공제율은 줄어들 것임
- 2013년 이후 발생한 주택담보대출이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동향 10-05

요약

- 미국 상원은 150억달러 규모의 고용지원법안을 통과시킴
  - 2009년 12월에 하원을 통과한 1,550억달러 규모의 고용지원법안과의 조정을 통하여 단일 법안을 도출할 예정임
  -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과 감가상각에 대한 특례를 포함하고 있음
- 프랑스는 2010년 2월 17일에 조세피난처(tax heaven)에 관한 블랙리스트를 공개함
  - 블랙리스트에는 비협조적인(Noncooperative) 국가나 지역으로 코스타리카, 쿡제도, 마셜제도, 라이베리아 등 18개 국가와 지역이 특정됨
- 영국 정부는 2010년 2월 22일 2010-11 예산 수립을 앞두고 기업의 조세안정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여섯 가지 조세원칙이 담겨 있는 기업관련 조세체계안을 발행함
  - 여섯 가지 조세원칙은 경쟁력, 공정성, 왜곡의 최소화, 단순성, 안정성 및 확실성, 조세행정/납세협력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노르웨이 재무부는 2010년 1월 18일 합병 및 분할 등 구조조정 세제의 간소화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주 내용으로 하는 구조조정세제 개편 논의문서를 발행함

### 1. 미국의 고용지원법안 승인

- 미국 상원은 2월 24일에 155억달러 규모의 고용지원 법안을 승인함
  - 2009년 12월에 하원이 1,500억달러 규모의 고용지원법안을 통과시킨 것과 비교하면 상원에서 통과시킨 지원규모는 매우 작은 수준임
    -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이는 고용지원법안의 첫 단계일 뿐이라고 언급하고 있음
  - 상원에서 통과시킨 고용지원법안은 하원에 의하여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며 하원이 통과 여부를만 표결에 부칠 수 있음
- 상원에서 통과된 155억달러 규모의 고용지원법안 중 세법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고용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
    - 60일 동안 일을 하지 않았던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그 해에 지불해야 하는 6.2%의 사회보장근로세를 면제함
    - 1년 이상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1,000달러의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함
    -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30억달러 규모로 예상하고 있음
  - 장비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
    - 장비에 대한 즉시 비용화를 인정함
    -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0.35억달러 규모로 예상하고 있음

### 2. 프랑스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Tax Heaven Blacklist)

- 프랑스는 2010년 2월 17일에 조세피난처(tax

heaven)에 관한 블랙리스트를 공개하였음

-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는 3차 수정 재정법(3차 수정 Finance bill 2009)에 포함되어 있음
- 블랙리스트에는 비협조적인 국가나 지역으로 다음의 18개 국가나 지역이 특정됨
  - Anguilla; Belize; Brunei; Costa Rica; Dominique; Grenada; Guatemala; the Cook Islands; the Marshall Islands; Liberia; Montserrat; Nauru; Niue; Panama; the Philippines; St. Kitts and Nevis; St. Lucia;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 조세피난처 선정 요건은 다음과 같음
  - EU 회원국이 아님
  - 투명성과 정보교환에 관하여 OECD의 조사에 따라야 함
  - 프랑스와 체결된 상호행정지원협정(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agreement)이 없어야 함
  - 타 국가나 지역과 체결된 상호행정지원협정의 숫자가 12개보다 작음
- 조세피난처에 포함될 경우 과세를 더욱 엄중히 적용함
  - 특정 배당소득, 이자소득, 사용료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세율을 인상(최고 50%)함
  - 주식의 장기 자본이득에 관한 세제의 적용배제
  - 특정 비용(이자, 사용료, 기타 서비스비용)에 대한 손금부인 등

### 3. 영국 기업과세 관련 조세체계안

- 정부는 2010년 2월 22일 2010-11 예산(Budget for 2010-11) 수립을 앞두고 기업의 조세안정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기업과세 관련 조세체계안(draft Tax



Framework for Business)을 발행함

- 이에는 경쟁력, 공정성, 왜곡의 최소화, 단순성, 안정성 및 확실성, 조세행정/납세협력비용 등 여섯 가지 조세원칙이 담겨 있음

■ 기업과세 관련 조세원칙

- 경쟁력(Competitiveness)
  - 조세제도는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영국이 기업하기엔 매력적인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함
- 공정성(Fairness)
  - 조세제도 내에서뿐만 아니라 조세제도 간에 공정성이 보장되어 기업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공정한 세 부담액을 납부하도록 함
- 왜곡의 최소화(Minimizing distortion)
  - 조세제도가 영국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시장실패 문제를 다루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기업의 의사결정이 조세로 인해 왜곡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조세제도를 유지해야 함
- 단순성(Simplicity)
  - 기업관련 세제정책을 개발하거나 검토할 때, 조세정책의 다른 목적들과 더불어서 단순성도 고려하여야 함. 이를 통해 새로이 기업과 관련된 세법규정을 설계하거나 개발할 때 불필요한 복잡성을 피해야 함
- 안정성 및 확실성(Stability and certainty)
  - 안정성과 확실성이 기업에 주는 가치를 인식하여 세법규정의 불필요한 개정을 피해야 함
  -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제시하는 경우 개정이 필요한 정책적 이유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개정된 세법규정이 이와 같은 정책목적 달성을 데 효과적인지 여부를 설명해야 함

• 조세 행정/납세협력비용(Tax administration /Compliance costs)

- 정부는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낮추는 데 주력해야 하며, 이를 수행함에 있어서 조세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와 균형을 이뤄야 함

■ 기업관련 과세정책의 수립 및 개정시 정부는 상기 여섯 가지 원칙을 고려해야 하며 이에 위배되는 사항은 지양해야 함

- 개별 원칙 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 상대적인 중요성에 따라 결정하며 각 원칙 간에는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한편 개별 원칙의 상대적 중요성은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적용함

4. 노르웨이 구조조정세제 개편

■ 재무부는 2010년 1월 18일 합병 및 분할 등 구조조정세제의 간소화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구조조정세제 개편 논의문서를 발행함

- 논의문서와 관련해서는 2010년 6월 1일까지 공개의견(public comments)을 수렴할 예정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과세특례 적용대상

- 현행규정에 의하면, 구조조정시 비과세되는 과세특례 혜택은 당사법인이 내국법인인 경우 적용되고 있음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과세특례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내국법인 및 그 주주가 특별세액공제(specific tax relief)를 신청하고 재무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는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고 시간이 걸리는 과정임

- 논의문서에서는 다음의 국외 구조조정거래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과세특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국내 유한회사가 유럽 경제구역(European Economic Area, EEA) 내 국가의 거주법인과 합병 및 분할하는 경우
  - 국내 유한회사의 모든 주식을 EEA가 아닌 고세율 국가의 거주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해당 국가의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 단, 신설법인이 EEA가 아닌 저세율 국가의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등
- 조세중립적인 국외 구조조정거래를 계획하는 내국법인이 별도의 신청 없이 과세특례 혜택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시간 및 비용의 절감과 아울러 해당 기업의 법적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과세특례 요건(Legality Requirement)

- 현행 규정에 의하면, 회계규정(accounting rules) 및 회사법에 따른 구조조정이 과세특례 요건으로 제시되어 있음
  - 단, 동 요건을 위반한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특례 혜택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중요성에 대한 구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구조조정 절차 완료 후 10년 동안 피합법법인 및 그 주주는 과세특례 조치가 취소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논의문서에서는 회계 및 회사법에 따른 구조조정이 어야 한다는 요건을 폐지함

- 구조조정 거래가 회계상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 혜택이 제공됨에 따라 구조조정 당사법인 및 그 주주의 법적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실질우선의 원칙(Substance over Form)

- 현행규정에 의하면, 일반적인 합병 및 분할시 피합법법인의 이월결손금 및 미인식이득 등 관련 조세지위가 합병법인에게 이전됨
  - 단, 합병 및 분할을 가장하여 조세지위를 양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르웨이는 실질우선의 원칙(substance-over-form doctrine) 및 특별 과세조항을 두어 합병 및 분할이 조세지위의 양도를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해당 조세지위를 박탈하고 있음
- 논의문서
  - 첫째, 과세특례 혜택이 적용되는 구조조정의 범위를 확대하여 합병, 분할 및 주식거래뿐만 아니라 기타의 조직재편(reorganization)에 대해서도 적용함
  - 둘째, 사업 활동의 계속성 요건(continuity requirement for business activities)을 도입하여 구조조정 전후로 피합법법인 등의 사업 활동이 지속되지 않는 경우 관련 조세지위를 박탈함
- 단, 지주회사 및 별도의 사업 활동이 없는 법인에 대해서는 계속성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 정책 흐름 |

- 2010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추진
- 2010년 1월 산업활동동향 요약
- 성실납세하면 혜택도 많습니다
-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 2010년 법인세 성실신고를 도와드립니다

# 2010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본 자료는 2010년 3월 8일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에서 발표한 「2010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정부는 지난해 말·금년 초에 공포되어 개정된 세법 및 세법 시행령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총 11개의 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임

◇ 개정대상 세법 시행규칙 : 11개

- 국세기본법 · 국세징수법 · 조세특례제한법 · 소득세법 · 법인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부가가치세법 · 개별소비세법 · 증권거래세법 · 외국인관광객특례규정 시행규칙 및 주조사에 관한 규칙

- 이번 세법 시행규칙 개정은 세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 개선 및 신고서식 수정사항의 반영을 위한 것임
- 앞으로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3월 말까지 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공포 후 시행할 예정임

## 2010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1.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① 중소기업자 세무조사기간 제한 예외사유 구체화

#### 법령 개정내용

- ◇ 중소기업자 세무조사기간 제한규정 신설(국기법 §81조의8 ②, ③)
  - 수입금액(양도가액) 100억원 미만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기간연장시에도 1회당 20일 이내로 제한)
  - 시행령에 무자료·위장가공거래 등 실제거래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을 조사기간 및 기간연장 제한 예외사유로 규정(국기령 §63의9)
    - 기타 장기간의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조사기간 및 기간연장 제한을 받지 않는 예외사유를 시행규칙에 규정

- 거짓계약서 작성, 미등기양도 등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 상속세·증여세 조사, 주식변동조사, 범칙사건조사 및 출자·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인들에 대한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 등

- 그 밖에 장기간의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2 소액 국세환급통지서의 송달방법 간소화**

- **(현행)** 현금지급방식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 국세환급통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
- **(개정)** 현금지급방식으로 5만원 미만의 국세환급금 지급시
  - 국세환급통지서를 통상의 우편으로 송달

**2. 법인세법 시행규칙**

**1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액신용대출사업(Micro-Credit) 요건 완화**

- **(현행)** 일정 요건을 갖춘 Micro-Credit 사업에 대하여 법인세를 비과세
- **(개정)** 미소(美少)금융재단의 사업내용을 반영하여 지원대상 및 요건을 완화

현행	개정
<대출대상> 기초생보자·차상위층 등	→ 금융위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 추가 (신용등급 7등급 이하라도 포함 예정)
<대출금액> 2천만원 이하	→ 금융위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 (5천만원 이하로 확대 예정)
<대출요건> 무담보·무보증	→ 대출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담보 설정은 허용

**2 지정기부금단체 추가**

- **(현행)**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중 공익성이 높은 법인을 지정기부금단체(소득공제한도 개인 20%, 법인 5%)로 지정
  - \* 예시 : 건강보험공단, 적십자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 **(개정)** 외국설립 한국학교, 시장경영지원센터 등을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
  - \* 외국설립 한국학교 : 외국거주 교민을 교육하기 위한 초·중

등학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립)

\* 시장경영지원센터 : 재래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양도세 과세특례 대상 물류시설의 구체적 범위 규정**

**법령 개정내용**

- ◇ 공익사업에 따라 수용된 물류시설을 이전시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과세하는 특례를 신설 (조특법 §85의9 신설)
- 시행령에 특례 적용대상인 물류시설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면서 물류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
  - 제조업자 생산품(부품 포함)의 보관·조립·수선 등을 위한 시설
  -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을 하는 자가 보유한 물류시설

- **(개정)** 물류시설의 범위를 물류시설용 건물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신설)
  - (물류시설용 건물이 있는 경우) 물류시설용 건물 및 해당 건물의 바닥면적에 지방세법시행령 §131 조의2 ②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부수토지
    - \* 건물 부수토지에 대하여 기준면적 이하 토지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때 적용되는 비율 [3배(상업지역)~7배(녹지지역)]
    - 기준면적=바닥면적×용도지역별 적용배율
  - (물류시설용 건물이 없는 경우) 화물의 운송·보

관·하역·조립 및 수선 등에 사용된 토지로서 주무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았거나 신고수리된 면적 이내의 토지

####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 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익법인 사업의 범위 확대

- **(현행)** 공익법인으로 보는 사업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연수사업', '중소기업상품전시사업' 이 포함
- **(개정)**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진중인 '중소기업 글로벌 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사업\*을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추가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공용시설에 한함

- '중소기업 글로벌 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사업에 대한 증여세 부담 완화

##### ② 국·공채 등의 채권 평가액 산정기관에 회계·세무법인 추가

- **(현행)**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국채 등\* 중에서 처분예상가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받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가 평가

\* 국채 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

- **(개정)** 국채 등의 평가기관에 회계법인 및 세무법인을 추가

##### ③ 국세청장 고시 이자율의 상위 법령화

- **(현행)**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 적용
- **(개정)** 고시 이자율이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체적 규정이므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전환

\* 국채 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

#### 5. 소득세법 시행규칙

- 국외건설현장 "지원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확대(월 100만원 → 150만원)

##### 법령 개정내용

- ◇ 해외건설현장 지원근로자 비과세 확대를 위한 위임규정 마련 (소득세법 시행령 §16)
- 국외근로소득 중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대상을 '건설현장' 근로자에서 '건설현장 등' 근로자로 개정  
→ '건설현장 등'의 범위를 시행규칙에서 규정

#### 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유흥주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 **(현행)** 음식업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없지만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매입액의 일정비율\*만큼 매입세액으로 공제

\* 개인음식점 8/108, 법인음식점 6/106 ('10년 말까지 적용)

- 이 경우 영세자영업자로 볼 수 없는 유흥주점(룸살롱, 나이트클럽 등)도 음식업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있음

- **(개정)** 영세자영업자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를 감안하여 유흥주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4/104로 축소

### 7. 외국인관광객특례규정 시행규칙

- 외국인관광객의 구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환급방법 개선
  - (현행)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이 포함된 물품을 구입하고 발급받은 영수증(환급전표)을 세관에서 확인받은 후 환급사업자(예: 글로벌리펀드)로부터 환급받음
  - (개정) 현행 영수증(환급전표)에 따른 환급 이외에 관세청 전산망을 통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환급사업자로부터 환급받는 방안을 추가
    - \* 문화부 건의사항, 관세청 전산망의 연계 등을 감안하여 10. 7월 이후 환급 신청분부터 적용

### 8. 주조사에 관한 규칙

- 주조사\* 응시수수료 환불규정 신설
  - \* 주류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제조과정을 관리하는 자
  - (현행) 응시수수료 환불 불가
  - (개정) 일정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 환불
    - 전액 환불 : 접수기간 내 응시취소, 시험시행기관 귀책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수수료를 과오 납한 경우
    - 50% 환불 : 접수마감일 다음 날부터 시험 10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9.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 본점·주사무소 총괄납부사업자의 사업장별 세부명세서의 제출 규정 신설
  - (현행) 총괄납부사업자의 사업장별 세부명세서(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신고서식은 시행규칙·국세청 사무처리규정에 규정되어 있으나, 제출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없음

- (개정) 총괄납부사업자의 사업장별 세부명세서 제출규정 신설
  - 50% 환불 : 접수마감일 다음 날부터 시험 10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추진

\* 본 자료는 2010년 3월 5일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발표한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추진」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3.2일 국회를 통과한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상정(3. 9)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3. 12 잠정)될 예정
  - 금번 조특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3월부터 고용을 증대시키는 중소기업과 법 시행 후 취업하는 장기미취업자가 세제지원 혜택을 받게 됨
-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동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
  - 금번 시행령에는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를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대해 증가인원 1인당 300만 원을 세액공제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의 상시근로자 범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등을 규정하고
  - 워크넷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장기미취업자(최종학교 졸업후 3년 경과)에 대한 월 100만 원 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최종학교\*의 범위에 특별법상 학교(예 : 기능대학 등)와 국외교육기관을 포함
    -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상 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 매월 급여에서 비과세 금액을 차감하고 소득세 원천징수
- 앞으로 부처협의·입법예고(3. 9~15), 법제처 심

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3월 말까지 시행령 개정작업을 완료할 계획

##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1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

#### 법 개정 내용

◇ 중소기업이 당해연도에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를 증가시킨 경우 「증가인원×300만원」 세액공제  
→ 상시근로자 범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시행령에 위임

- (상시근로자 범위)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 (제외) ①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친인척, ②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의한 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등

-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

\* 예시 : ('10. 3~12월 月평균 상시근로자 수-'09. 1~12월 月

- 평균 상시근로자 수)×300만원
- 창업기업의 경우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를 “0”으로 간주
  - 합병, 사업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 사업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당해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시 제외

②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장기미취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법 개정 내용

◇ 최종학교\* 졸업 후 3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취업자가 워크넷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11. 6. 30까지 취업시 3년간 월 100만원 비과세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상 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 학교에 준하는 교육기관 종류, 비과세 신청 절차를 시행령에 위임

- (학교에 준하는 교육기관의 종류) 특별법에 따른 학교(예 : 기능대학 등), 국내 교육기관에 준하는 국외교육기관
- (비과세 신청절차) 취업자는 해당 회사에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회사는 세무서에 대상자 명단을 제출

# 2010년 1월 산업활동동향 요약

\* 본 자료는 2010년 3월 3일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에서 발표한 「2010년 1월 산업활동동향 요약」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요약

◇ 1월 중 광공업 생산은 전월과 동일하고 서비스업 생산은 감소

- 광공업생산은 영상음향통신 등의 수출호조와 세제지원 종료에 따른 자동차의 부진으로 전월 대비 0.0%, 전년동월 대비 36.9% 증가(76. 7월 38.8% 이후 33년 6개월 만의 최고)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8.8%로 전월에 비해 0.9%p 하락

\* 광공업생산(전월비, %) : (09. 8)△1.3 → (9)4.2 → (10)△3.0  
<전년 동월비> 1.0 11.1 0.3  
→ (11)1.8 → (12)2.4 → (10.1)0.0  
18.0 34.3 36.9

- 서비스업 생산은 폭설, 한파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0.8% 감소, 전년동월 대비는 4.6%로 증가세 지속

\* 서비스업생산(전월비, %) : (09. 8)△0.6 → (9)2.4 → (10)△1.2  
<전년 동월비> 1.1 4.1  
(10)△1.2 → (11)△0.1 → (12) 2.4 → (10.1)△0.8  
△0.5 4.2 6.9 4.6

◇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감소하고 건설투자는 증가

- 소매판매는 자동차 세제지원 종료에 따라 내구재 판매 감소로 전월 대비 1.3% 감소하고,

전년동월 대비 6.9% 증가

\* 소매판매(전월비, %) : (09. 8)△1.0 → (9) 2.8 → (10) 1.8  
<전년 동월비> 0.5 6.7 9.8  
→ (11)△0.5 → (12) 1.2 → (10. 1)△1.3  
9.7 12.7 6.9

- 설비투자는 기계류 투자가 줄어 전월 대비 9.8% 감소하고, 건설기성은 공공부문과 토목공사의 실적 호조로 전월 대비 12.7% 증가

\* 설비투자(전월비, %) : (09. 8) 3.7 → (9) 14.6 → (10)△2.7  
<전년 동월비> △15.4 5.4 △0.4  
→ (11) 5.9 → (12) 5.9 → (10.1)△9.8  
10.2 21.1 20.4

\* 건설기성(전월비, %) : (09. 8)△3.0 → (9) 5.8 → (10) 0.7  
<전년 동월비> △8.2 6.8 △5.9  
→ (11)△0.7 → (12) 1.4 → (10.1) 12.7  
3.2 12.9 8.9

◇ 경기종합지수는 경기상승세 유지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5p 상승(09. 3월부터 11개월 연속 상승)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전월 대비 0.3%p 하락(09. 1월 이후 첫 하락)

10. 1월 산업활동동향(3.3일 통계청 발표)

1. 생산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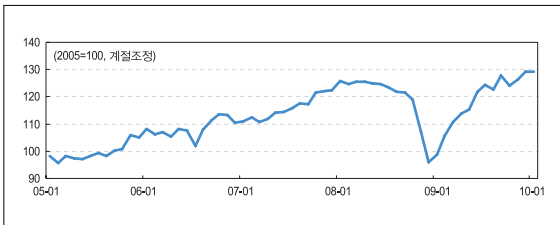
광공업 생산

- 1월 광공업생산은 영상음향통신, 반도체 및 부품 등의 증가와 화학제품, 자동차 등의 부진으로 전월 대비 보합, 전년동월 대비는 반도체 및 부품, 자동차 등의 호조로 36.9% 증가(76.7월 38.8% 이후 33년 6개월 만의 최고)

\* 광공업생산(전월비, %) : (09. 8)△1.3 → (9) 4.2 → (10)△3.0  
 <전년동월비> 1.0 11.1 0.3  
 → (11) 1.8 → (12) 2.4 → (10.1)0.0  
 18.0 34.3 36.9

\* 영상음향통신(10.4%), 반도체 및 부품(15%), 기계장비(2.7%) 등이 전월 대비 증가

광공업 생산지수



- 출하는 전월 대비 0.8% 증가, 재고는 전월 대비 0.3% 감소

\* 출하(전월비, %) : (09. 8)△1.4 → (9) 3.3 → (10)△2.2 → (11) 1.9 → (12) 2.1 → (10.1)0.8

주요 증가업종 : 반도체 및 부품(5.8%), 기계장비(2.7%), 석유정제(4.1%) 등

주요 감소업종 : 금속가공(△7.4%), 1차 금속(△3.5%), 전기장비(△2.9%) 등

\* 재고(전월비, %) : (09. 8) 0.8 → (9) 1.5 → (10) 0.1 → (11) 1.0 → (12) 0.4 → (10.1)△0.3

주요 증가업종 : 영상음향통신(8.0%), 전기장비(5.3%), 식료

품(5.4%)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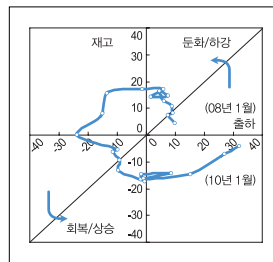
주요 감소업종 : 반도체 및 부품(△3.6%), 의복 및 모피(△8.6%), 비금속광물(△4.3%) 등

- 재고/출하비율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하였고, 재고출하순환도는 출하가 전년동월 대비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경기회복 흐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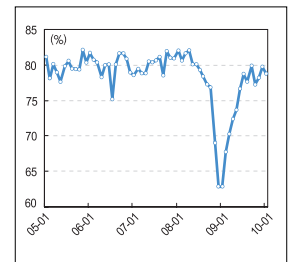
\* 재고/출하비율(%) : (09. 8) 94.5 → (9) 92.8 → (10) 95.0 → (11) 94.3 → (12) 92.6 → (10. 1)91.7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8.8%로 전월에 비해 0.9%p 하락

재고출하순환도



제조업평균가동률



서비스업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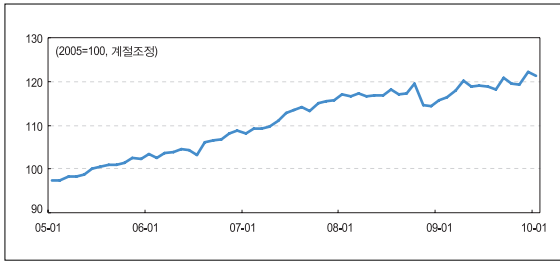
- 서비스업 생산은 교육, 부동산·임대 등에서 부진하여 전월 대비 0.8% 감소하고, 전년동월 대비는 4.6% 증가

\* 서비스업 생산(전월비, %) : (09. 8)△0.6 → (9) 2.4 → (10)△1.2  
 <전년 동월비> 1.1 4.1 △0.5  
 → (11)△0.1 → (12) 2.4 → (10.1)△0.8  
 4.2 6.9 4.6

\* 주요 증가업종 : 금융·보험(2.8%),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2.6%), 숙박·음식점(1.8%) 등

\* 주요 감소업종 : 교육(△7.9%), 전문·과학·기술(△6.4%), 부동산·임대(△6.6%) 등

### 서비스업 생산지수



### 2. 소비

- 소매판매는 폭설·한파, 자동차 세제지원 종료 등으로 전월 대비 1.3% 감소, 전년동월 대비 6.9% 증가
- 내구재(전월 대비 △2.7%), 비내구재(△2.0%) 감소하고 준내구재(6.0%)는 증가

\* 소매판매(전월비, %) : (09. 8)△1.0 → (9) 2.8 → (10) 1.8 →  
 <전년동월비> 0.5 6.7 9.8  
 (11)△0.5 → (12) 1.2 → (10. 1)△1.3  
 9.7 12.7 6.9

### 3. 투자

#### 설비투자

- 1월 설비투자는 09. 12월 반도체장비의 기 교체로 금월 교체수요 감소 등에 따라 전월 대비 9.8% 감소, 전년동월 대비는 20.4% 증가

\* 설비투자(전월비, %) : (09. 8) 3.7 → (9) 14.6 → (10)△2.7  
 <전년 동월비> △15.4 5.4 △0.4  
 → (11) 5.9 → (12) 5.9 → (10. 1)△9.8  
 10.2 21.1 20.4

- 국내기계수주는 공공부문에서는 감소하였으나 석유정제업, 반도체제조업 등 민간부문에서 호조를 보여 전년동월 대비 11.3% 증가

\* 국내기계수주(전년동월비, %) : (09. 8)△19.6 → (9) 26.5 →  
 (10)△7.9 → (11) 56.2 → (12) 21.2 → (10. 1) 11. 3

### 건설투자

- 건설기성(경상)은 재정조기집행에 따라 공공부문과 토목공사의 공사실적 호조로 전월대비 12.7%, 전년동월 대비 8.9% 증가

\* 건설기성(전월비, %) : (09. 8)△3.0 → (9) 5.8 → (10) 0.7 →  
 <전년동월비> △8.2 6.8 △5.9  
 (11)△0.7 → (12) 1.4 → (10. 1) 12.7  
 3.2 12.9 8.9

- 건설수주는 공공부문의 발주는 감소하였으나 민간부문의 발주 증가로 전년동월 대비 17.1% 증가

\* 건설수주(전년동월비, %) : (09. 8)△27.0 → (9) 55.3 → (10)  
 28.8 → (11) 78.8 → (12)△19.6 → (10. 1) 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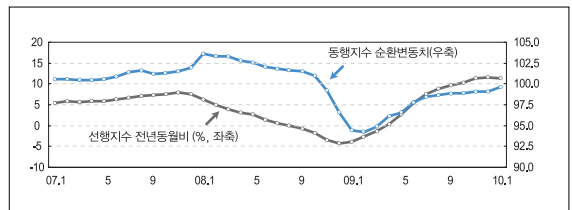
### 4. 경기종합지수

-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5p 상승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전월차(p) : (09. 8) 0.3 → (9) 0.2 →  
 (10) 0.0 → (11) 0.2 → (12) 0.0 → (10. 1)0.5

- 선행종합지수 전년동월비는 전월 대비 0.3%p 하락

\* 선행지수 전년동월비 전월차(%p) : (09. 8) 1.2 → (9) 0.8 →  
 (10) 0.7 → (11) 1.0 → (12) 0.3 → (10. 1)△0.3



### 산업활동 주요지표

(단위: 전년동월(기)비, %)

		'08년	'09년					'10년		
			연간	연간 <sup>1)</sup>	3/4	4/4p	1월		11월	12월 <sup>2)</sup>
생 산	관 내 업	전월(기)비	-	-	6.8	1.3	2.9	1.8	2.4	0.0
		• 생산 동월(기)비	3.4	-0.7	4.3	16.2	-25.7	18.0	34.3	36.9
		(조업일수조정)	2.8	-1.0	2.5	17.7	-21.3	18.0	34.3	30.7
		- 제 조 업	3.4	-0.9	4.4	16.8	-27.3	18.8	36.0	38.9
		(중화학)	4.4	0.1	5.7	20.0	-28.1	21.9	41.5	43.5
		(경공업)	-1.6	-5.7	-2.4	1.7	-22.9	3.6	11.6	17.7
		• 출 하	2.6	-1.7	2.1	12.8	-23.6	15.4	26.2	32.4
		내 수	-0.4	-1.8	3.3	12.4	-24.3	13.9	26.2	31.0
		수 출	7.2	-1.7	0.4	13.3	-22.6	17.5	26.1	34.4
		• 재 고 <sup>2)</sup>	7.1	-8.0	-14.2	-8.0	-0.1	-14.6	-8.0	-4.0
	제 조 업	평균가동률 <sup>3)</sup>	77.5	74.6	78.8	78.4	62.8	78.2	79.7	78.8
	생 산 능 력	5.1	3.1	3.2	4.0	2.6	3.9	4.5	4.5	
	서 비 스 업	전월(기)비	-	-	-0.1	0.8	1.0	-0.1	2.4	-0.8
동월(기)비		3.6	2.0	1.9	3.6	-1.7	4.2	6.9	4.6	
소 비	소 매 판 매	전월(기)비	-	-	0.3	4.1	-0.3	0.5	1.2	-1.3
		동월(기)비	1.1	2.6	2.8	10.8	-2.9	9.7	12.7	6.9
투 자	설 비	설비 전월(기)비	-	-	2.4	13.9	-4.5	5.9	5.9	-9.8
		투자 동월(기)비	-3.0	-8.0	-10.0	10.2	-21.1	10.2	21.1	20.4
	국 내 기 계 수 주	-13.8	-11.8	3.4	20.0	-49.1	56.2	21.2	11.3	
	건 설	건 설 <sup>4)</sup> 전월(기)비	-	-	-6.3	3.4	15.0	-0.7	1.4	12.7
		기 성 동월(기)비	4.9	3.3	-1.2	3.7	-0.5	3.2	12.9	8.9
		건 설 수 주 <sup>4)</sup>	-7.6	3.0	7.6	11.6	0.3	78.8	-19.6	17.1

주: 1) 전기·가스업을 포함  
 2) 기(월, 분기, 연말 기준  
 3) 해당월(기)의 평균가동률  
 4) 경상금액기준

### 경기종합지수

	'09. 9월	10월	11월 <sup>2)</sup>	12월 <sup>2)</sup>	'10.1월 <sup>2)</sup>
동행종합지수(전월비,%)	0.6	0.5	0.6	0.6	0.9
순환변동치	98.9	98.9	99.1	99.1	99.6
• 전월차(p)	0.2	0.0	0.2	0.0	0.5
선행종합지수(전월비, %)	0.6	0.6	1.1	0.7	0.3
전년동월비(%)	9.6	10.3	11.3	11.6	11.3
• 전월차(%p)	0.8	0.7	1.0	0.3	-0.3

# 성실납세하면 혜택도 많습니다

– “세금포인트”에도 이런 혜택이 –

\* 본 자료는 2010년 3월 5일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발표한 「성실납세하면 혜택도 많습니다」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① 국세청은 성실납세자를 최고의 고객으로 섬기겠습니다.

- 국세청은 지난해 8월 「국세행정 변화방안」을 국민에게 약속하고
  - 세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기본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였음
- 이에 고소득 전문직 과세,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 차단 등 공정하고 엄정한 과세로 세법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선진 납세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우대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지원함

②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다양한 우대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 우대혜택을 제공받는 성실납세자는?
  - 납세자의 날(매년 3월 3일)에 정부포상 또는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
- 올해 「납세자의 날」에도 1,583명\*의 모범납세자를 선정하여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하였음

\* 정부포상 ·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 539명, 지방국세청장 · 세무서장 표창 수상 1,044명

- 수출 및 신기술 개발 사업자(지식경제부), 노사문화우수 · 대상기업(노동부)으로 관련부처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선정한 납세자

■ 성실납세자에게는 현재

- 3년(국세청장 표창 이상) 또는 2년간의 세무조사 유예, 징수유예 · 납기연장시 5억원 한도 내에서의 납세담보 제공 면제 등 국세행정상의 우대혜택 이외에
- 금융회사의 대출금리 경감 등 국세청 이외의 타기관에서 제공하는 우대혜택도 함께 제공함
- 또한, 고액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등의 혜택을 제공해 드리고 있음

■ 한편, 올해에는

- 현재 시행중인 성실납세자 우대제도의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그 혜택을 확대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고
- 아울러 국립공원(지리산국립공원 등 23개) 주차장 이용료 면제 등 새로운 우대혜택\*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임

- ▶ 국립공원(지리산국립공원 등 23개) 주차장 이  
용료 면제
- ▶ 대출한도확대 등 금융우대혜택 확대(농협중앙  
회·중소기업은행 등)
  - ※ 상기 우대제도는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가 적용  
받음

**3** 성실납세세금포인트를 누적 관리하여 혜택을 제공  
합니다.

- 누적 세금포인트 100점 이상인 자에게는 포인트에  
따라 납세담보 제공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짐
  -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 신청시 납세담보를  
세금포인트로 대신할 수 있으며(연간 5억원 한  
도)

※ 납세담보면제금액 산정 = 적립된 포인트×100,000원×  
100%(5억원 한도)  
예) 1억원의 납세담보 면제금액 : 1,000점(1억원 세금포인  
트)×100,000원×100%

- 특히, 누적 세금포인트 1,000점 이상인 자에게는  
추가로
  - 세무서 방문 없이 주요 민원증명 6종 발급시 무  
료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 세무서 방문시 민원봉사실 「성실납세자 전용창  
구」를 이용하여 민원증명 우선 발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한편, 제44회 납세자의 날(10. 3. 3)을 맞이하여  
개인납세자의 2008년 소득세 납부액에 대해 세금  
포인트를 추가 부여함
  - 지금까지 세금포인트가 부여된 개인납세자 중 누

적 세금포인트 100점 이상으로 우대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자는 287만여명으로 전년보다 36  
만명(14.6%)이 증가하였음

- 10. 3. 2일부터 개인납세자는 2000년 이후 2008  
년까지의 누적 세금포인트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개인”메뉴 → “조  
회서비스” → “기타내역조회” → “세금포인트조회”에 게시

**4**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올해 국세청은 과세 사각지대에 있는 숨은 세원을  
양성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재정수입을 확보  
하는 국세청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 성실납세자가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선진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성실납세자 우대제도  
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행할 것임
  - 또한, 성실납세자를 최고의 고객으로 섬기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기업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최  
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음

**참고 1**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제도

국세 행정상의 우대

-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해 드립니다.
  - 납세자의 날에 훈장 등 정부포상·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포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국세청  
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
  - 수출 및 신기술개발사업 유공으로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정부포상을 받은 수상자를 지식경제부장  
관으로부터 추천받아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선정한 경우, 선정일로부터 2년간 세무조사를 유  
예

- 노사문화우수기업 인증사업자 또는 노동부장관 상 이상을 받은 노사문화대상기업을 노동부장관 으로부터 추천받아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선정할 경우, 선정일로부터 1년(대통령·국무총리 상을 받은 노사문화대상기업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
-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제공을 면제해 드립니다.
  - 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인한 징수유예·납기연장시 체납이력을 감안하여 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제공을 면제
  - 납세자의 날에 훈장 등 정부포상,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포상일로부터 3년(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2년)간 면제
  - 수출 및 신기술개발사업 유공으로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정부포상 수상자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추천받아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선정할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서는 포상일로부터 3년간 면제
  - 노사문화우수기업 인증사업자 또는 노동부장관 상 이상을 받은 노사문화대상기업을 노동부장관 으로부터 추천받아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선정할 개인 및 법인에 대해서는 인증 또는 포상일로부터 1년(대통령·국무총리상을 받은 노사문화대상기업은 3년)간 면제
- 국세민원증명 발급시 '성실납세자 표창이력'을 표기·발급해 드립니다(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 2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자 1년간 표기).

아래 납세자는 년 월 ○○○○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입니다.

-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설치된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이외의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우대**

※ 모범납세자 중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 납세자에 한함

- 대출금리 경감 등 금융상 우대혜택을 제공합니다.
  - 중소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부산·경남·제주은행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성실납세자의 자금 운용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대구·전북·광주은행(지방국세청장 표창 수상자까지 혜택)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시 신인도 부문에서 가점을 부여합니다.
  - 적격심사 항목 : 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기타 결정사유를 감안하여 심사
-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시 보증한도를 다른 기업보다 확대했습니다.
  - 30억원을 한도로 매출액의 1/3까지 보증합니다 (일반기업은 15억원을 한도로 매출액의 1/4까지 보증).
  - ※ 자기자본 한도 적용배제 (일반기업은 자기자본의 300% 한도)
-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위한 추천심사시 가점을 부여합니다.
  - 기술력, 수출비중, 산학협력참여도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병역지정업체 선정절차**

- 【신청】 성실납세업체 : 매년 6월말
- 【심사·추천】 중소기업청 등: 7월
- 【선정】 병무청: 11월

- 국방부 물품·용역적격심사시 가점을 부여합니다.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의 물품·용역 납품업체 선정시 신인도부문에 가점을 부여합니다.
- 방위사업청 물품·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시 가점을 부여합니다.
- 노동부 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 선정시 가점을 부여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무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장이 배부한 모범납세자 스티커 부착차량은 1년간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고액 성실납세자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및 승무원 전용 보안검색대 이용
  - 전용심사대 이용대상자 중 재정기여도가 높은 납세자는 기업인 전용라운지(CIP라운지, 귀빈실)까지 이용 가능
  - \* 본인과 동반인(2인 이내)까지 전용심사대 이용 가능함

**대상자 선정**

납세자의 날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 세금포인트 점수가 높은 납세자, 일정금액 이상 세금 납부하신 분 중 국세청의 성실도 검증 및 법무부의 적격심사를 거쳐 선정

**참고 2 은행별 대출금리우대 등 우대혜택**

- 은행별 대출금리우대 제공 현황

MOU 체결기관	금융기관	시행일	우대금리	기타우대혜택
국세청	기업은행	'09. 10. 15	0.25%p이내	어음할인 우대 등
	농협	'09. 10. 15	0.3%p이내	
대구지방국세청	대구은행	'09. 04. 15	0.5~1.0%p이내	유망중소기업 선정시 우대 등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은행	'09. 06. 05	0.3%p이내	수수료 면제 등
	제주은행	'09. 06. 05	0.3~0.5%p이내	신용 및 담보조사 수수료 면제 등
	경남은행	'09. 06. 05	영업점장 전결 금리 범위내	수수료 면제 등
광주지방국세청	전북은행	'09. 09. 08	0.5~1.0%p이내	수수료 면제 등
	광주은행	'09. 09. 15	0.3~0.5%p이내	예금금리 0.2% 한도 우대 등

※ 기술보증기금 우대내용('09. 4. 23시행)

- 운전자금 보증금액 사정한도액을 소요자금의 100%로 완화
  - \* 일반기업 80~100%
- 신용도 검토 항목 판단기간을 최근 6개월 이내로 완화
  - \* 일반기업 1년

**참고 3 세금포인트 제도 안내**

- 세금포인트 제도는 개인납세자가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소득세 납부금액에 따라 일정한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제도로 '04. 4.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금년 제44회 납세자의 날('10. 3. 3)을 맞이하여 개인납세자의 2008년 소득세 납부액에 대해 세금포인트를 추가 부여함
  - '10. 3. 2일부터 개인납세자는 2000년 이후 누적 세금포인트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개인"메뉴 → "조회서비스" → "기타내역조회" → "세금포인트조회"

■ 세금포인트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 등 개인납세자를 대상으로 부여됩니다

• 자진납부한 세액 10만원당 1점(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세액은 0.3점)을 부여하되, 환급세액은 그만큼 차감됨

\*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분은 세금포인트를 부여하지 않음  
 예) 자진납부세액별 세금포인트 부여 : -100만원 → 10점, 1,000만원 → 100점, 1억원 → 1,000점

##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 규모별 · 지역별 균형 원칙 규정 -

\* 본 자료는 2010년 3월 5일 국세청 법인세과에서 발표한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국세청은 그동안 내부업무처리규정으로서 공개하지 않던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고,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이를 전면 공개하기로 함
  - 이 규정은 지난 2월 3일부터 2월 23일까지 20일 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3월부터 시행됨
- 특히, 이 규정에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원칙과 기준을 반영함으로써
  -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일관된 기준을 확고히 하는 한편,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 지역별 경제규모, 법인 수(數) 등을 감안하여 조사대상 선정비율을 적용토록 규정하여 규모별 · 지역별 균형 있는 세무조사 운영의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관련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63조(선정기준) ①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 따라 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시 연간 수입금액 5,000억원 이상의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제2호에 따라 4년주기 순환조사를 원칙으로 선정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 외의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성실

도 평가에 의한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연간 수입금액 50억원 미만의 신고성실도 하위그룹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제3호에 따라 무작위 추출방식에 의한 선정을 병행한다.

③ (생략)

제165조(선정할 법인 수) ① (생략)

② 조사대상 선정법인은 지방청별 · 세무서별로 각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법인의 전체 수입금액 규모, 법인 수, 조사인력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게 배분하여야 한다.

- 이와 같은 원칙은 2009년 9월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에도 지켜진 원칙으로서
  - 2008년 3월에 법인세 신고를 마친 2007사업연도의 지방청별 · 세무서별 총매출액 규모, 법인 수, 조사인력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 · 규모별로 합리적이고 균형 있게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한 바 있음
- 먼저 지역별 세무조사 대상 선정현황을 보면,
  - 지방청별 법인 수 대비 정기 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비율은 지역별 경제규모가 반영되어 서울청이 가장 높게 나타남

(단위: 개)

구분	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전체 법인 수	391,196	136,865	106,566	33,444	34,674	29,120	50,527
선정 법인 수	2,943	1,103	819	230	186	207	398
선정비율	0.75%	0.81%	0.77%	0.69%	0.54%	0.71%	0.79%

- 이는 지방청별 총매출액 규모, 법인 수, 조사인력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배분한 결과로서
- 2009년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전체 법인 수 2,943개 중 각 지방청별 선정 법인 수가 차지하는 비율도 서울청이 37.48%로 가장 높음

(단위: 개)

구분	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선정 법인 수	2,943	1,103	819	230	186	207	398
점유비	100%	37.48%	27.83%	7.82%	6.32%	7.03%	13.52%

- 다음으로 기업규모별 정기 법인세 세무조사대상 선정비율도 신고내용의 검증 필요성이 큰 대법인은 높게 하는 한편,
  - 상대적으로 기업의 경영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 법인은 낮게 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효율성과 경제 여건을 반영하였음
  - 그 결과 기업규모별 선정비율이 다음과 같이 다르게 나타남

(단위: 개)

구분	계	50억 이하	50억~300억	300억 이상
전체 법인 수	391,196	344,422	39,454	7,320
선정 법인 수	2,943	1,020	1,040	883
선정비율	0.75%	0.30%	2.64%	12.06%

\* 연간 매출액 300억 이상 법인은 지방국세청 조사국 담당 법인임

- 2010년 정기 법인세 세무조사대상 선정방향
  - 향후 세무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와 국세행정 위원회의 심의와 보고가 이루어져야 구체적인 선정내용이 확정되겠으나,

- 이번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기업규모별·지역별 선정기준과 원칙은
- 그동안 국세행정변화방안의 하나로 추진되어 온 세무조사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차원에서 금년에도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할 방침임

# 2010년 법인세 성실신고를 도와드립니다

\* 본 자료는 2010년 2월 23일 국세청 법인세과에서 발표한 「2010년 법인세 성실신고를 도와드립니다.」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1. 12월 결산법인은 3. 3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 2009. 12월에 사업연도를 종료하는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은 금년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높은 율의 가산세 추가부담

◇ 부당\*(일반)무신고가산세 : 수입금액의 14/10,000(7/10,000)와 산출세액의 40(20)% 중 큰 금액

\* 허위기장, 허위증빙 작성·수취, 장부·기록파기 등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경우

◇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세액의 0.03% × 미납일수

- 다만, 재해 등\*을 입은 경우에는 3월 29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 화재 기타 재해 또는 도난,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된 때 등
- 신고대상 법인은 442천개로 지난해 417천개에 비해 25천개 증가

계	제조	도소매	건설	금융보험	부동산	서비스	기타
442천개	103천개	104천개	79천개	11천개	15천개	74천개	56천개

\* '09.신고기준 : 12월법인이 법인 수의 96.7%, 총부담세액의 89.1% 점유

- 참고로,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도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500만원 한도, 수수료 1.2%), 홈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등 「365일 연중무휴 세금납부 서비스」를 이용하여 공휴일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음.

## 2. 최대한의 신고편의 및 다양한 납세정보 제공

- 홈택스(HTS)의 법인세 전자신고 서비스를 인터넷 익스플로러(IE)외에도 파이어폭스(Firefox), 사파리(Safari) 등 다양한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3. 4부터)

\* '08.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전자신고 비율 : 96.0%(07년 96.1%)

- 매출액이 없는 법인으로서 세무조정을 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간편전자신고시스템\*도 운영(3. 4부터)

\* 인적사항,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 처리)계산서만 입력

-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HTS)의 「법인별 쪽

지함]을 통해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납부자료를 제공하고(3. 4부터)

- 세무대리인이 세무조정된 법인 중 업종별 신고소득률 하위법인 명세 등을 제공하여 성실한 신고 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며
- 조세감면사항, 세정지원제도, 개정세법 내용 등 납세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세무정보\*1를 국세청 홈페이지(법인세)\*2 및 E-mail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 1. 법인세 신고시 유의사항, 신고절차, 법인 유형별 신고안내, 감면사항,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e-book) 등

\* 2.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 - 신고납부 - 법인세

- 또한, 신설법인, 자기조정 신고법인, 휴·폐업법인, 비영리·공익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우편안내문을 발송

- 아울러, 자금경색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법인세 환급금 빠른 지급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하겠음.

**3.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도와드립니다.**

- 정부는 기업의 세부담을 줄여 투자여력을 높이는 등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 법인세 높은 세율(과표 2억원 초과)을 이번 신고분부터 종전 25%에서 22%로 낮추고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중임.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 7% → 10%, 수도권과밀억제권 안 : 0% → 3%
  - 불성실한 신고는 언제든지 적발될 수 있는 것이며 - 그 결과 세부담은 크게 늘어나게 되므로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임.

**불성실하게 신고하고 추후에 추정된 사례**

◇ 법인이 소득금액 10억원을 은닉하여 신고누락하고 5년 뒤 탈세로 추정되는 경우,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한 경우보다 약 3.5배나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됨.

■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한 경우 총 부담 세액 ..... 220백만원

① 법인세 : 10억 × 22% = 220백만원

\* 세율 인하(25% → 22%, 3%p ↓)로 30백만원 절세

■ 5년 후에 탈세로 추정당하는 경우 총 부담세액 ..... 779백만원

① 법인세 : 10억 × 22% = 220백만원

② 가산세 : - 과소신고 : 220백만원 × 40% (부당과소) = 88백만원

- 과소납부 : 220백만원 × 0.03% × 1,826일 = 121백만원

③ 인정상여 소득세 : 10억원 × 35% = 350백만원

-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평소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 변칙적인 회계처리 등으로 조세를 탈루할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한 전산분석 자료를 개별통지하고

- ◇ 접대성 경비를 복리후생비 등으로 분산처리
- ◇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주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손금 계상
- ◇ 법인 신용카드 사적 사용
- ◇ 재고자산 계상누락 등을 통하여 원가 조절하는 경우
- ◇ 세무조사 후 신고소득률 하락 법인 등 → 총 26개 항목 28천개 법인에게 개별통지

- 기업소득 유출, 수입금액 누락, 소득조절, 조세 부당감면 등으로 세금을 탈루할 우려가 있는 대기업 및 자영업법인, 취약·호황업종 등 6천개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개별정밀분석한 자료로 성실신고를 안내하였음.

-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CAF\*에 의해 신고성실도를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법인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엄정하게 사후관리할 예정이다,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람.

\* CAF : 법인 신고성실도 분석시스템(Compliance Analysis Function)

- 이와는 별도로, 세금 신고내용과 CAF에 구축된 「기업·기업주의 소득·재산변동·소비지출 분석자료」를 연계
  - 정밀분석 결과, 기업자금 유출혐의가 큰 법인에 대해서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중점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계획임.

#### 4. 법인의 지방이전 등에 대한 조세지원도 챙겨 보세요.

- 수도권에 집중된 인적·물적자원을 지방으로 분산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각종 특구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액 등을 감면하고 있음.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주요 조세감면	법인세 감면액
공장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공장·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농공단지 입주	4년간 50%
대덕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 또한, 지방이전 등에 따르는 시설투자 등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장 등의 고정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 양도시점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분할 익금산입을 통해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있음.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주요 조세감면	양도차익 상당액 과세이연 방법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공장의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 밖 이전	5년 거치 5년 균등액 이상 익금
공장의 공익사업시행지역 밖 이전	3년 거치 3년 균등액 이상 익금

- 다만, 조세지원은 그 성격상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에서 적용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 추후에 부당감면으로 가산세 등을 추징당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기를 당부드립니다.

#### 5. 공익법인은 출연재산보고서 등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 '09. 12월에 사업연도를 종료하는 공익법인\*은 3월 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결산서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2에 열거되어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예 :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 등)

- ◇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 :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8종)
- ◇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공익법인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7종)
  - \* 외부감사, 감사원의 회사검사를 받는 법인 등 제외
- ◇ 주무관청에 결산서류 제출 공익법인 : 결산서류(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 가장 많이 쓰이는 출연재산보고서 8종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홈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음.

■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는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한편

•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결산서류 공시, 출연재산 사용의무 등 이에 상응하는 여러 의무\*1를 부여하고 있으며, 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증여세 및 가산세\*2 등을 부과하고 있음.

\* 1. 「참고 5. 공익법인의 세무상 주요 의무」 참조

\* 2. 출연재산의 공익 목적 외 사용시 증여세 부과, 출연재산 보고서 미제출 금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1%를 가산세로 부과 등

• 따라서 출연재산 보고서 미제출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각종 의무를 위반하여 가산세 등을 부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아울러, 국세청에서는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반국민이 공시된 재무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 (<http://npoinfo.nts.go.kr>)을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므로

• 공시대상 공익법인은 금년 4월 30일까지 공시시스템을 통해 대차대조표 등 결산서류를 정확히 공시하시기 바람.

\*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공시를 할 경우 공시하여야 할 자산총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

###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 ◇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강화 및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도입
- ◇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결산서류 등을 국세청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함.

### 참고 1 이번 법인세 신고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법개정사항

#### 법인세법 개정사항

##### ① 법인세율 인하(법§55)

• 2009. 1. 1 ~ 2009. 12. 31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율을 22%로 인하

구 분	2008년	2009년	2010~2011년	2012년
높은 세율	25%	22%	22%	20%
낮은 세율	11%	11%	10%	10%

\* '08. 12. 26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 낮은 세율은 13%에서 11%로 이미 인하됨

##### ②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보완(법§13)

- 200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공제기간을 10년으로 연장
- 이월결손금은 법인세의 신고 또는 결정·경정 및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한하여 이후의 사업연도

에 공제가 가능

\* 2010. 1. 1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③ 적격지출증빙 수취·보관의무 완화(영§158②)**

- 기업들의 지출증빙 수취·보관 부담이 과도한 점을 감안하여 적격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의무를 건당 거래금액 1만원에서 3만원(접대비는 1만원으로 현행 유지)으로 상향 조정

\* 2009. 1. 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④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사택의 범위 확대(영§88①)**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의 범위에 법인의 명의로 계산으로 임차한 사택을 포함
- 다만, 임·직원에게 사택을 임차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됨

**⑤ 접대비실명제 폐지 등 지출증빙제도 보완(영§42의2, 영§41①)**

-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이 건당 50만원 이상의 접대비 지출시 접대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를 보관토록 하는 접대비실명제를 폐지

\* 200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경조금에 대한 적격증빙수취의무 제외 범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

\* 2009. 1. 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⑥ 계열사간 근무기간 승계시 퇴직금 손금산입 보완(영§44, 규칙§22)**

- 법인이 임원·사용인에 대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지 않고 계열사간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각 법인의 실제 근무기간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

**⑦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기준액 합리화(영§44)**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에서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제외하도록 개정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 200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임원 퇴직금한도 계산 : 2009. 2. 4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⑧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손비인정(영§44의2)**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연구기관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도 전액 손금으로 인정됨.

\* 2010. 2. 18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⑨ 당좌대출이자율 인하(규칙§43)**

- 국제청장 고시로 운용되던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금급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8.5%로 인하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규정

\* 2009. 1. 1 이후 발생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하며, 당좌대출이자율이 변경될 경우 변경일 이후부터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2009. 3. 30 이후 이자발생 분부터 적용

**⑩ 부당유출금액 회수시 상여처분 사유 명확화(영§106)**

-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상여처분하는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

\*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세무공무원이 과세자

료·민원처리 등을 위해 현장출장·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경우

**11** 소액광고선전비·판매장려금 등 손비 범위 확대 (영§19)

-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의 비용은 연간 3만원 한도 내에서 손비로 인정되며, 이 경우 5,000원 이하의 물품은 3만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음
- 판매장려금·판매수당은 사전 약정에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하도록 명확하게 규정

\* 2009. 1. 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2** 미술품 구입시 즉시 손금산입 범위 확대(영§19)

- 즉시 손금에 산입되는 미술품의 가액을 1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확대하여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시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손금으로 인정

\* 200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3** 공사계약 이행보증채무손실 대손금 인정(법§19의 2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사계약 이행보증을 위해 연대보증인인 법인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손실의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 가능

\* 2009. 2. 4 이후 보증하는 분부터 적용(2008. 12. 31 이전에 채무 보증한 것으로서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분을 포함)

**14**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맹가산세 제도 개선(법§76)

-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소비자 상대 수입금액)에 대해서만 0.5%의 가산세 적용

\* 2009. 1. 1 이후 가맹하는 분부터 적용

**15**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유예(법 §55의2)

- 토지 등을 2009. 3. 16부터 2010. 12. 31까지 양

도하거나, 같은 기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토지 등 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다만, 강남·서초·송파구 소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함

**16** 비영리법인의 기한후신고를 통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 배제(영§99②)

-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을 분리과세를 선택한 후에는 기한후 신고를 통해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이 불가능

**17** 모회사 주식에 대한 stock option(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 보전시 손비 인정(영§19)

- 금융지주회사가 증권거래법에 따라 비상장자회사 임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와 외국모회사가 국내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경우 그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은 손비로 인정

\* 2009. 2. 4 이후 행사비용을 보전하는 분부터 적용

**18** stock award(주식기준보상) 부여 관련 손비 인정 (영§19)

- stock award는 주식기준 장기 성과보상 제도의 일종으로 stock option과 실질이 동일하고 그 대체도로 널리 이용되며 조세회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stock option에 준하는 요건 하에서 손비처리를 인정하도록 명확히 규정

\* stock option : 일정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해당 법인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stock award : 일정 시점에 무상으로 해당 법인 주식(주식 가치에 기초한 현금보상 포함)을 지급

\* 2009. 2. 18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① 최저한세율 인하(법§132)**

-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을 인하

구 분	과세표준	2008년	2009년	2010년
중소기업	-	8%	8%	7%
일반기업	100억 이하	13%	11%	10%
	1천억 이하			11%
	1천억 초과	15%	14%	14%

\* '08. 12. 26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최저한세율은 10%에서 8%로 이미 인하됨

**②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 세액공제 확대(법§10)**

- 중소기업의 당기분 공제방식 공제율을 종전 15%에서 25%로 인상
- 일반기업에 대해 적용하는 당기분 공제방식\* 적용요건을 '매출액 대비 R&D지출비용이 직전연도 이상인 경우' 뿐만 아니라 'R&D지출금액이 직전연도 이상인 경우'에도 허용

\* 당기분방식(6% 한도) = 당해연도 R&D지출액 × (3%+α)  
 α = 각 기업의 매출액 대비 R&D지출 비율 × 0.5

**③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제도 부활(법§9)**

- R&D투자 준비단계에서 미래의 연구·인력개발 투자를 위해 준비금으로 계상한 경우 비용으로 인정하는 준비금 손금산입제도 부활
- 준비금 적립한도는 매출액의 3% 이내이며, 3년 내에 실제 R&D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3년 거치 3년 동안 분할하여 익금산입

**④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 추가(영§23)**

-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종합휴양업, 유원시설업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 추가

- 다만, 전문·종합휴양업이 아닌 음식점 및 골프장 시설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휴양업은 2008. 1. 1, 유원시설업은 2009. 1. 1 이후 투자개시분부터 적용

**⑤ 임시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및 공제방식 개선(법§26, 영§23)**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사업용자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종전 7%에서 10%로 상향 조정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해서도 3% 세액공제

\* 2009. 1. 1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다만, 2000. 7. 1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으로 2009. 1. 1 이후 투자진행분도 적용)

- 2009. 5. 2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투자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투자금액(한도 : '09. 5. 2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투자 개시한 투자금액)의 10% 추가 공제

\* 직전 3년간 연평균투자액이 없는 경우에는 증가분 공제방식 적용불가

\* 2009. 5. 21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투자를 개시한 분부터 적용

**⑥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법§25의3)**

-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환경오염을 줄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종전 7%에서 10%로 상향 조정

\* 2009.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⑦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법§30조의3)**

- 감량경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삭감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일

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해 1인당 연간 임금 총액 감소액의 50%를 소득공제

\* 2009. 5. 21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8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 세액감면 신설(법§85의2)**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의 공장시설 수용에 따른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에 추가하여 이전 후의 소득에 대하여도 최초 소득발생일로부터 4년간 50%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신설

\* 200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9 대학 연구비 등에 대한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법§73)**

- 법인이 대학(고등교육법 §2의 학교)에 기부하는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종전 소득금액의 50%에서 100%로 확대

\* 200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2011년 이후는 50%로 환원)

**10 대학에 지출하는 맞춤형 교육비 등 세액공제 확대(법§104의18)**

- 기업이 대학에 지출하는 맞춤형 교육비용의 R&D세액공제 및 대학에 기부하는 R&D설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지방대학뿐만 아니라 수도권 대학에까지 확대하여 세액공제
- 다만, 수도권 대학에 지출 또는 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2에 대하여 적용

\* 200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참고 2 지방이전 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요약**

근거법령	감면 요건	감면 내용
조특법 §12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덕연구개발특구에 2012. 12. 31까지 입주하여 지정·승인 받은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 기업이 생물산업·정보통신 산업 등 영위하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세액감면</li> </ul>
조특법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2011.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li> <li>*대도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5대 광역시(산업단지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이전비용을 곱한 금액 과세이연 (5년 거치 5년 균등액 이상 익금)</li> </ul>
조특법 §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2011. 12. 31까지 본점의 대지 및 건물 양도하는 경우</li> <li>*권역범위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9</li> </ul>	
조특법 §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공장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공장 전부를 과밀억제권역 밖에 이전하여 2011. 12. 31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전 후의 공장 소득에 대해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세액감면</li> </ul>
조특법 §63의2 ①, 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래 ① 및 ②의 요건을 갖춘 법인</li> <li>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 공장영위 또는 본점을 둔 법인</li> <li>② 공장시설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2011. 12. 31까지)하거나 신축(2014. 12. 31까지)하여 사업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전 후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세액 감면</li> <li>• 공장이전: 공장 소득</li> <li>• 본사이전:(과세표준-부동산양도차익)×이전비율</li> <li>*2010. 1. 1 이후 광역시 및 수도권 연접 시·군 이외 지역 이전시 7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적용</li> </ul>
조특법 §63의2 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이전법인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특법 §60 및 §61 규정 준용</li> </ul>
조특법 §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2. 12. 31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공단지 등에 입주한 기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기업의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li> </ul>
조특법 §85의2 ①, 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 및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을 2012. 12. 31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도차익 상당액 과세이연(5년 거치 5년 균등액 이상 익금)</li> <li>• (양도차익-이월결손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li> <li>■ 이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4년간 50% 세액감면</li> </ul>

근거법령	감면 요건	감면 내용
조특법 §85의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익사업 시행지역에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2012.12.31까지 공장 양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도차익 상당액 과세이연(3년 거치 3년 균등액 이상 익금)</li> <li>(양도차익-이월결손금) × 지방공장 취득비용</li> </ul>
조특법 §85의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2011. 12. 31까지 공장 양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도차익 상당액 과세이연(2년 거치 2년 균등액 이상 익금)</li> <li>(양도차익-이월결손금) × 신규공장 취득비용</li> </ul>
조특법 §121의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조첨단과학기술단지에 2012. 12. 31까지 입주하여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세액감면</li> </ul>
조특법 §121의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2. 12. 31까지 제주투자진흥지구·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세액감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을 위해 일괄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간 50%, 그 후 2년간 25% 세액감면</li> </ul>
조특법 §121의 17 ① 1,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9. 12. 31까지 기업도시 개발구역 등에 입주하여 사업 영위하는 기업</li> </ul> <p>*개정(2010. 1. 1부터 시행) : 2012. 12. 31까지 기업도시 개발구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 신설하는 경우 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세액감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가 영위하는 개발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간 50%, 그 후 2년간 25% 세액감면</li> </ul>
조특법 §121의 17 ① 3,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2. 12. 31까지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 신설 기업</li> </ul> <p>*신설(2010. 1. 1부터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세액감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사업시행자가 영위하는 개발사업</li> </ul> <p>*신설(2010. 1. 1부터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간 50%, 그 후 2년간 25% 세액감면</li> </ul>

※ 과세이연 : 지방이전에 소요되는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장 등의 고정자산 양도차익 등에 대해 즉시 과세하지 않고(익금불산입) 일정기간 경과한 후에 과세(익금산입)하는 제도

참고 3 주요 전산분석 안내 항목

번호	분석항목	분석 방법
1	자료상혐의자 등과 거래내역	- 자료상혐의자, 중개인, 위장가맹점 거래내역 발체, 사전 안내('09. 1 ~ 9월)
2	보험금 수령내역	- 다양한 보험상품의 개발로 익금계상 누락 소지 많은 보험금 수입내역('09년) 수집 분석·안내
3	재평가토지 양도내역	- 재평가토지 양도내역을 검색하여 과세이연 금액을 신고시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안내('09년)
4	세무조사 후 신고소득을 하락 법인	- 세무조사 이후 사업연도에 대한 신고소득을 분석 및 조사사후관리사항 안내(조사 후 3개월) - 조사연도 특별이외 발생법인은 차감하여 비교
5	유보금액 차이 있는 법인	- 자본금과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유보금액 기초금액이 전년 기말잔액과 불일치 법인 분석 안내
6	건설업법인의 가공원가 계상	- 건설업 법인의 경우 수정신고, 경정청구를 이용하여 가공원가를 계상 혐의법인 안내
7	외부조정 미이행	- 외부조정대상자이나 전년도 외부조정을 이행하지 않은 법인에 대하여 안내
8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상 누락	- 가지급금 법인세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적정 여부를 분석하여 안내
9	법인신용카드의 사적사용 혐의	- 신용카드사용액('09. 1 ~ 9월) 중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등 사적사용 개연성이 높은 거래내역 분석안내
10	감면법인 중 감가상각 미계상법인(의제상각)	-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중 감가상각을 계상하지 않은 법인 안내
11	소비성경비 지출비중 높은 법인	- 현금 등의 지출이 수반되는 복리후생비, 접대비, 광고선전비 등 소비성경비 지출의 비중이 높은 법인 안내
12	기업주 가족 인건비 지급법인	- 타소득이 있거나 해외 체류하는 등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인건비 지급혐의 법인 안내
13	재고자산 차이 있는 법인	- 손익계산상상 기초재고액이 전기말 재고액과 차이 있는 법인 안내

번호	분석항목	분석방법
14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 중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없는 법인에 대해 안내
15	건설자금이자 비용 처리 법인	- 건설자금이자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간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을 누락하지 않도록 안내
16	전기오류수정손익 계속 발생 법인	- 최근 3년간 전기오류수정손익이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법인에 대해 변칙 처리하지 않도록 안내
17	자본화비용 세무조정	- 신주발행비 및 신주발행을 위한 직접비용은 자본잉여금에 해당되어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을 안내
18	수입 중고자산 부당감면	- 수입중고자산('09년)은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음을 사전 안내
19	법인전환 후 신고 소득을 하락 법인	- 법인전환 후 신고소득률이 개인사업자에 비해 현저히 하락한 법인에 대해 성실신고 안내
20	접대성 경비 분산 처리 여부	- 접대비용 신용카드 사용액에 비해 접대비를 다른 경비로 분산처리 혐의 있는 법인 분석
21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변칙처리	-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을 기타대여금으로 처리하고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세무조정 누락 법인 분석
22	재고조절을 통한 원가 과다계상	- 제조·도매업 법인으로 기초·기말재고가 없어 원가 부실계상 혐의법인 안내
23	수입이자 과소계상	- 손익계산서상 이자수익과 원천납부세액 명세서의 이자금액을 비교하여 이자수익 과소계상 또는 기납부세액 과다공제 법인 안내
24	수도권 내 중소기업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 수도권 내 중소기업이 소기업으로 잘못 판단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받은 법인 분석
25	조세감면 중복 적용	-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공제·감면을 중복 적용받은 법인 분석
26	과세소득에 대한 부당감면	- 소득구분을 잘못하여 영업외소득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감면받은 법인 분석

**참고 4** 공익법인 보고서 등 제출대상 서식

구분	일반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 공익법인
대상법인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모든 공익법인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 10억 이상 공익 법인
제출대상서식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li> <li>2.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 내역서</li> <li>3.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li> <li>4.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li> <li>5. 운용소득의 사용 명세서</li> <li>6. 주식(출자지분)보유명세서</li> <li>7. 이사 등 선임명세서</li> <li>8.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li> <li>2.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li> <li>3.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li> <li>4. 수혜자 선정 부적정명세서</li> <li>5. 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 내역 부적정명세서</li> <li>6.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li> <li>7. 보유부동산 명세서</li> </ol>
	-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 (수동제출)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 공익법인은 일반공익법인이 제출하는 서식 외에 세무확인서, 세무확인결과 집계표 등을 추가 제출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제외 공익법인도 일반공익법인이 제출하는 보고서 제출	
보고기한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전자제출)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수동제출)
제출제외법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li> <li>2. 총자산가액 10억 미만 공익법인</li> <li>3.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 받은 공익법인(출연자 등이 5%미만 출연)</li> <li>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li> </ol>	

\* 전자제출서식의 신고방식은 작성방식이나 일반 공익법인의 3, 4번서식의 경우 변환방식도 가능함

**참고 5** 공익법인 세법상 주요 의무사항

구분	내용	
보고서 등 제출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산에 관한 서류, 출연재산보고서* 및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서류를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제출</li> <li>*미제출, 불분명분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1%가산세 부과</li> <li>**미이행시 (당해연도수입금액+출연재산가액)×0.07% 가산세 부과</li> </ul>	
결산서류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li> <li>*미공시 및 허위공시시 공시하여야 할 자산총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li> </ul>	
출연재산 등의 사용의무	출연재산 사용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산을 출연받은 때에는 3년 내에 직접공익 목적사업에 사용</li> <li>*목적 외 사용금액, 미사용금액 증여세 과세</li> </ul>
	출연자산 매각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연자산 매각금액은 1년 내 30%, 2년 내 60%, 3년 내 90%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미달 사용금액 증여세 과세)</li> </ul>
	운용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용소득금액의 70%를 1년 이내 직접공익 목적사업 사용</li> <li>*기준금액 미사용시 미사용금액의 10%를 증여세로 과세</li> </ul>
주식취득 보유	출연받거나, 주식 취득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 (성실공익법인 10%) 초과 금지</li> <li>*초과보유분 증여세 과세</li> </ul>
	계열기업의 주식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자산가액 중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이 30%(특수한 경우 50%) 이상 초과 금지</li> <li>*초과보유주식 시가의 5%를 가산세로 부과</li> </ul>
출연자 등의 이사 등 취임시 지켜야 할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자가 이사의 1/5 이상을 초과 또는 임직원 취임금지(경비 전액 가산세 부과)</li> </ul>	
자기내부거래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법인의 재산을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수익</li> <li>*그 제공된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li> </ul>	
기타 상증법상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회계감사를 받을 의무,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특정계좌에만 공익사업 혜택 제공, 해산시 지켜야 할 일</li> </ul>	

**붙임 6** 365일 연중무휴 세금납부 서비스

-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와 신용카드납부전용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휴일 포함 365일 연중무휴(07:00 ~ 22:00) 세금납부 가능

**공휴일 인터넷을 통해 세금납부 가능한 금융회사**

- 농협, 산업,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은행, 우정사업본부, 신한, 상호저축은행(총 16개) 및 신용카드사(13개)

- 홈택스(www.hom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신용카드 납부전용 홈페이지(www.cardrotax.or.kr)에 접속
- 필요한 기본정보(납세자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 또는 입력하여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 방식으로 세금납부

**납부절차**

- 국세납부 → 자진납부와 조회납부 중 선택 → 공인인증서 확인 → 납부정보 입력 또는 조회 → 납부하기 →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 신용카드번호 입력 → 납부확인 → 국세전자납부 확인서 출력

■ 신용카드를 이용한 국세 수납절차

- ① 신용카드 국세납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 | 재정통계 |

■ 지방세 세목별 부과 및 징수

## 1. 지방세 세목별 부과 및 징수

(단위: 천원)

연도	합계		취득세		재산세	
	부과액	징수액	부과액	징수액	부과액	징수액
1966	16,816,176	16,152,012	2,732,717	2,550,839	1,078,491	1,043,636
1967	14,654,778	14,099,212	3,889,500	3,705,598	1,198,420	1,166,812
1968	20,239,885	19,356,762	5,522,237	5,183,913	2,420,880	2,356,171
1969	28,013,180	26,583,966	7,822,230	7,210,908	3,117,076	2,986,298
1970	35,219,246	33,232,340	12,044,977	11,056,747	4,172,610	3,980,115
1971	41,990,608	39,811,485	13,718,108	12,723,719	5,217,059	4,951,170
1972	49,572,589	46,607,778	12,953,686	11,782,615	8,318,934	7,879,503
1973	79,267,758	74,134,228	21,285,919	19,866,903	10,071,202	9,624,928
1974	114,775,555	107,986,372	32,583,665	30,451,349	16,748,718	15,856,961
1975	169,041,969	158,789,733	44,688,358	41,820,047	30,485,936	28,436,022
1976	233,731,211	220,566,252	61,989,265	58,399,121	39,537,387	37,798,207
1977	349,447,660	336,574,614	79,075,701	75,462,833	46,666,700	45,316,023
1978	460,341,378	443,251,369	120,336,211	114,554,884	48,501,328	47,073,244
1979	653,641,059	599,198,728	140,207,708	135,036,868	83,729,116	81,592,822
1980	851,837,946	767,690,562	179,491,339	162,951,659	123,119,917	119,412,203
1981	1,002,016,056	914,372,123	189,019,047	179,768,902	157,685,620	152,678,723
1982	1,224,124,124	1,119,205,919	224,591,792	215,508,078	177,611,412	172,786,893
1983	1,537,032,866	1,397,166,537	321,600,461	307,767,471	201,304,649	194,753,432
1984	1,682,698,526	1,508,354,179	352,605,605	337,526,079	216,711,906	210,419,077
1985	1,862,282,122	1,654,635,329	371,903,418	356,321,794	243,616,879	237,289,644
1986	2,027,983,886	1,809,753,251	392,563,939	371,184,705	273,926,413	265,793,348
*1987	2,437,864,605	2,192,322,692	471,615,410	452,652,110	293,669,683	285,304,054
1988	3,375,778,024	3,099,969,048	682,609,529	661,494,476	308,347,725	301,046,192
1989	5,278,469,144	4,960,844,053	814,230,252	787,215,449	380,021,546	372,425,966
1990	6,745,350,344	6,367,365,752	1,203,145,983	1,164,926,685	230,972,295	227,165,292
1991	8,534,351,559	8,035,143,125	1,598,721,293	1,525,728,689	280,314,276	275,510,680
1992	10,111,336,581	9,462,217,560	1,835,920,941	1,732,592,469	362,323,308	355,290,512
1993	11,830,546,086	11,026,067,251	2,155,084,597	2,042,961,731	416,350,672	406,612,821
1994	14,297,258,392	13,230,911,237	2,489,661,606	2,344,644,232	494,055,073	480,674,871
1995	16,786,970,432	15,315,965,229	2,887,708,640	2,691,021,647	482,405,711	465,921,989
1996	19,169,656,514	17,394,685,245	3,235,987,061	3,041,240,598	549,718,334	532,305,747
1997	20,652,436,355	18,405,680,827	3,589,916,521	3,319,483,688	597,950,401	577,067,935
1998	20,290,289,985	17,149,712,026	2,769,184,363	2,479,829,135	684,637,670	640,660,548
1999	22,191,231,754	18,586,100,844	3,249,652,617	3,065,410,709	710,964,779	669,908,313
2000	24,562,989,843	20,600,603,157	3,381,191,544	3,148,197,277	765,172,560	727,832,715
2001	30,665,622,816	26,669,879,034	3,945,566,203	3,787,506,193	794,232,219	763,190,189
2002	35,402,316,450	31,525,816,239	5,476,181,726	5,278,225,816	848,006,166	817,549,150
2003	37,130,276,352	33,132,942,858	5,695,281,558	5,502,868,163	943,838,250	903,397,386
2004	38,347,012,006	34,201,704,948	5,563,088,574	5,366,060,687	1,068,269,521	1,017,804,830
2005	39,986,764,657	35,977,358,998	6,866,771,491	6,648,964,205	2,697,530,755	2,587,448,711
2006	45,350,938,182	41,293,701,739	7,910,010,246	7,667,481,900	3,225,760,502	3,108,975,315
2007	47,611,782,860	43,524,289,072	7,494,858,134	7,261,465,493	3,883,459,754	3,755,133,474
2008	49,731,657,077	45,479,732,068	7,195,638,204	6,916,038,903	4,577,477,403	4,411,329,536

1. 지방세 세목별 부과 및 징수 (계속)

(단위: 천원)

연 도	면허세		등록세		자동차세	
	부과액	징수액	부과액	징수액	부과액	징수액
1966	595,876	555,101	-	-	1,101,362	1,080,551
1967	717,744	668,364	-	-	1,577,670	1,555,018
1968	908,297	848,048	-	-	2,541,015	2,487,508
1969	1,122,307	1,045,057	-	-	3,977,054	3,869,259
1970	1,334,538	1,228,057	-	-	5,836,702	5,604,762
1971	1,558,200	1,428,551	-	-	6,683,622	6,392,586
1972	1,519,464	1,351,270	-	-	7,191,846	6,879,604
1973	2,790,976	2,520,622	-	-	8,246,012	7,866,027
1974	4,655,385	4,150,403	-	-	12,926,678	12,015,901
1975	5,449,382	4,865,507	-	-	13,111,075	12,353,485
1976	6,276,905	5,555,199	-	-	14,868,551	14,136,608
1977	10,974,807	10,033,123	66,789,310	66,732,739	19,681,586	18,794,823
1978	18,117,570	15,172,215	91,945,064	91,764,320	26,847,009	25,505,007
1979	18,281,254	17,322,041	92,992,553	92,449,918	51,695,657	48,438,716
1980	19,599,671	18,244,129	125,614,781	122,373,011	61,705,068	56,941,875
1981	21,669,636	19,919,513	157,880,888	156,447,962	64,126,941	61,012,593
1982	26,680,745	24,240,654	246,878,299	245,578,782	71,927,392	67,980,513
1983	31,575,564	28,741,193	341,116,027	338,803,793	88,846,791	83,804,530
1984	33,567,803	30,560,630	335,039,118	331,986,683	110,390,853	103,668,706
1985	23,877,385	21,799,677	363,151,893	361,117,598	126,393,299	118,304,698
1986	25,653,456	23,333,668	397,717,043	395,854,995	150,150,125	139,123,478
*1987	28,916,556	26,508,700	552,433,749	550,266,864	182,940,922	167,719,282
1988	34,251,405	31,177,172	797,479,548	794,472,598	236,512,750	218,055,046
1989	41,851,374	37,922,577	1,094,459,747	1,091,125,768	329,207,548	304,680,677
1990	52,953,090	47,999,242	1,381,475,130	1,377,632,152	463,224,723	425,934,259
1991	98,304,927	88,735,645	1,903,169,050	1,894,968,347	688,540,985	634,953,186
1992	120,112,670	108,586,207	2,093,224,140	2,080,451,521	884,564,081	826,234,509
1993	147,574,789	133,997,124	2,560,393,043	2,548,326,715	1,092,673,409	1,027,124,984
1994	182,549,997	168,606,328	3,110,446,356	3,085,663,908	1,385,488,301	1,293,785,738
1995	228,229,290	208,551,158	3,655,019,178	3,632,509,840	1,690,295,073	1,545,231,914
1996	293,322,307	272,303,577	4,077,001,506	4,053,708,647	1,988,110,192	1,818,439,902
1997	239,759,402	224,944,320	4,296,314,259	4,257,327,918	2,280,515,542	2,054,012,317
1998	258,973,874	240,689,915	3,413,783,969	3,388,475,193	2,459,105,586	2,174,871,379
1999	256,835,772	237,393,200	4,346,535,040	4,326,677,196	2,183,304,425	1,936,391,986
2000	259,976,703	241,210,178	4,541,299,156	4,527,575,209	2,258,608,855	2,007,008,077
2001	62,424,387	58,101,202	5,599,588,658	5,586,669,920	2,094,713,435	1,889,419,957
2002	67,444,664	63,302,829	7,523,797,241	7,504,456,328	1,958,000,279	1,750,720,020
2003	69,907,522	64,974,474	7,577,098,783	7,549,975,348	2,022,637,290	1,778,302,609
2004	73,466,915	67,672,062	6,752,980,942	6,715,793,695	2,055,458,001	1,791,985,446
2005	76,578,742	70,468,865	6,820,414,541	6,783,683,411	2,166,004,577	1,902,124,295
2006	81,007,858	75,010,868	8,002,221,472	7,949,523,356	2,416,462,519	2,133,765,120
2007	82,003,173	76,502,400	7,390,019,793	7,253,623,050	2,662,653,415	2,369,911,498
2008	77,529,558	72,610,507	7,276,235,939	7,142,906,232	2,937,848,581	2,610,905,304

1. 지방세 세목별 부과 및 징수 <계속>

(단위: 천원)

연 도	주민세		농지세		농업소득세	
	부과액	징수액	부과액	징수액	부과액	징수액
1966	-	-	5,007,426	4,962,986	-	-
1967	-	-	3,383,781	3,350,208	-	-
1968	-	-	3,492,754	3,449,848	-	-
1969	-	-	4,837,367	4,780,465	-	-
1970	-	-	3,172,920	3,122,580	-	-
1971	-	-	4,569,744	4,522,039	-	-
1972	-	-	5,398,010	5,336,310	-	-
1973	10,776,318	9,337,415	8,155,912	8,086,684	-	-
1974	9,422,116	8,560,064	13,979,682	13,866,309	-	-
1975	16,787,830	15,637,559	21,024,859	20,840,899	-	-
1976	26,826,803	24,548,063	31,785,422	31,636,878	-	-
1977	51,910,161	46,921,283	36,095,946	35,945,398	-	-
1978	64,180,031	59,766,391	44,529,331	44,317,512	-	-
1979	96,462,833	91,001,792	53,911,509	53,644,024	-	-
1980	125,864,685	116,913,289	63,140,610	62,573,402	-	-
1981	137,285,716	127,627,599	78,548,324	78,039,313	-	-
1982	154,666,425	139,478,116	83,360,409	83,027,893	-	-
1983	179,116,564	157,678,687	91,014,469	90,591,843	-	-
1984	196,508,095	176,793,111	93,133,265	92,547,119	-	-
1985	224,282,672	202,003,379	14,385,164	14,215,088	-	-
1986	251,803,205	227,787,435	14,991,276	14,757,477	-	-
*1987	303,429,327	276,037,236	16,857,545	16,661,233	-	-
1988	406,476,239	375,836,476	18,971,649	18,713,540	-	-
1989	509,277,358	469,872,355	7,481,528	7,268,021	-	-
1990	590,334,958	548,744,749	6,175,025	5,988,519	-	-
1991	749,959,090	701,502,146	6,002,641	5,832,252	-	-
1992	1,036,094,890	971,007,511	3,222,644	2,986,892	-	-
1993	1,182,593,767	1,099,895,970	2,317,098	2,248,633	-	-
1994	1,461,179,800	1,360,008,363	2,455,929	2,303,323	-	-
1995	1,844,465,161	1,701,441,650	2,151,905	2,066,209	-	-
1996	2,317,745,677	2,147,928,792	3,946,006	2,639,753	-	-
1997	2,487,193,014	2,259,330,181	2,856,137	2,797,314	-	-
1998	3,016,829,659	2,639,177,345	2,945,446	2,679,326	-	-
1999	2,887,059,528	2,548,180,824	4,538,788	4,343,434	-	-
2000	3,740,013,545	3,426,467,202	3,360,202	3,190,521	-	-
2001	3,958,596,858	3,566,530,607	-	-	1,394,487	1,304,764
2002	4,270,521,443	3,897,535,535	-	-	2,275,011	2,780,439
2003	4,960,552,300	4,558,194,783	-	-	3,728,254	3,668,594
2004	5,383,374,075	4,913,925,489	-	-	4,144,201	4,100,874
2005	5,955,806,941	5,500,346,493	-	-	11,499	11,499
2006	6,681,875,312	6,214,768,765	-	-	141	141
2007	7,821,537,031	7,411,492,043	-	-	355	355
2008	8,623,418,037	8,163,037,106	-	-	126	126

1. 지방세 세목별 부과 및 징수 (계속)

(단위: 천원)

연 도	도축세		사업소세		유흥음식세	
	부과액	징수액	부과액	징수액	부과액	징수액
1966	190,920	190,691	-	-	1,371,406	1,269,631
1967	178,462	178,431	-	-	1,878,197	1,769,905
1968	166,061	166,039	-	-	3,417,294	3,200,154
1969	199,060	199,048	-	-	4,734,439	4,400,921
1970	235,885	235,842	-	-	5,299,146	5,028,927
1971	214,897	214,876	-	-	6,061,868	5,803,749
1972	227,271	227,266	-	-	6,871,248	6,452,741
1973	225,361	225,198	-	-	9,232,268	8,534,560
1974	305,284	305,282	-	-	13,103,348	12,170,623
1975	548,050	546,142	-	-	19,470,645	17,511,559
1976	1,093,811	1,093,432	-	-	28,477,198	25,302,131
1977	1,375,444	1,375,434	9,708,347	9,635,535	2,432,233	2,308,629
1978	1,453,752	1,453,704	16,799,908	16,705,619	11,862	10
1979	3,847,158	3,844,384	25,970,413	25,745,754	-	-
1980	4,684,425	4,680,463	31,150,952	30,748,817	-	-
1981	6,328,806	6,199,929	36,496,182	36,084,180	-	-
1982	7,817,660	7,813,953	43,726,371	43,283,872	-	-
1983	10,629,013	10,628,925	50,120,226	49,533,545	-	-
1984	12,712,686	12,712,567	56,122,303	55,534,342	-	-
1985	16,405,524	15,538,107	61,941,135	61,365,437	-	-
1986	18,600,542	18,590,189	68,717,153	68,047,472	-	-
*1987	19,359,972	19,303,668	83,119,468	82,390,430	-	-
1988	17,825,053	17,821,988	103,015,597	102,343,807	-	-
1989	17,388,530	17,348,290	127,402,906	126,593,925	-	-
1990	17,778,571	17,778,181	146,681,568	145,589,816	-	-
1991	21,812,673	21,764,203	175,067,818	170,785,967	-	-
1992	22,537,472	22,528,846	213,117,147	211,647,609	-	-
1993	26,266,420	26,266,384	228,433,371	226,705,055	-	-
1994	30,004,349	29,878,406	255,398,143	253,059,211	-	-
1995	33,956,112	33,911,426	299,264,819	296,095,526	-	-
1996	38,643,397	37,885,553	357,622,418	354,308,579	-	-
1997	48,177,851	47,203,683	381,673,771	377,306,643	-	-
1998	48,968,894	48,193,947	342,661,938	336,704,244	-	-
1999	45,685,735	45,591,654	351,076,925	346,725,252	-	-
2000	51,998,882	51,241,527	400,748,748	396,262,213	-	-
2001	45,162,534	44,953,307	438,808,012	435,094,245	-	-
2002	49,537,515	48,523,757	476,444,644	473,094,279	-	-
2003	44,969,648	44,074,158	529,717,986	524,750,089	-	-
2004	45,282,415	44,459,841	571,987,849	567,247,092	-	-
2005	48,551,605	46,906,379	625,580,430	620,674,464	-	-
2006	50,563,225	49,328,668	682,926,751	677,362,402	-	-
2007	52,532,778	51,869,805	735,868,924	731,116,067	-	-
2008	53,337,797	52,361,169	804,663,407	799,500,445	-	-

## 1. 지방세 세목별 부과 및 징수 &lt;계속&gt;

(단위: 천원)

연 도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부과액	징수액	부과액	징수액	부과액	징수액
1966	69,545	64,974	143,525	138,722	-	-
1967	219,868	213,952	162,256	157,839	-	-
1968	1,162,739	1,132,376	321,108	313,200	-	-
1969	1,553,138	1,467,476	418,625	405,176	-	-
1970	2,329,454	2,206,295	542,674	519,212	-	-
1971	2,941,236	2,781,217	703,047	670,751	-	-
1972	5,841,072	5,490,877	888,369	844,903	-	-
1973	6,835,017	6,476,075	1,195,275	1,142,318	-	-
1974	8,716,489	8,321,759	1,587,912	1,541,443	-	-
1975	14,010,555	13,404,078	2,931,562	2,840,718	-	-
1976	18,185,517	17,522,398	4,023,283	3,907,146	-	-
1977	18,958,413	18,370,067	4,879,433	4,779,148	-	-
1978	20,649,353	20,064,960	5,457,370	5,360,914	-	-
1979	35,088,553	34,220,600	8,701,955	8,569,906	-	-
1980	52,464,470	50,965,292	13,294,196	13,032,316	-	-
1981	68,277,314	66,609,343	17,183,313	16,790,356	-	-
1982	82,615,820	80,628,450	23,507,342	23,022,500	-	-
1983	94,699,993	92,187,819	27,166,993	26,624,815	-	-
1984	102,863,086	100,443,491	35,353,215	34,533,677	-	-
1985	117,112,828	114,462,582	40,188,277	39,275,886	-	-
1986	126,631,503	123,863,460	45,653,154	44,551,256	-	-
*1987	138,208,661	134,423,511	51,946,554	50,304,451	-	-
1988	152,408,654	149,081,710	60,616,372	59,119,693	-	-
1989	185,065,846	181,382,102	75,000,012	73,242,197	-	-
1990	250,003,716	243,623,924	87,488,408	86,118,046	-	-
1991	314,412,635	307,319,308	107,136,337	105,457,826	-	-
1992	403,265,211	394,490,513	134,452,575	131,757,389	-	-
1993	484,286,708	473,296,721	157,694,465	154,345,268	-	-
1994	582,727,399	563,953,182	188,532,631	182,901,292	-	-
1995	676,870,095	652,729,391	212,222,193	204,272,332	-	-
1996	717,931,035	697,151,775	247,604,652	239,666,292	-	-
1997	756,653,950	731,470,960	277,764,493	267,703,826	-	-
1998	798,266,412	752,324,686	325,188,857	301,355,667	-	-
1999	828,196,992	785,013,238	338,213,939	316,112,084	-	-
2000	852,717,717	815,419,979	360,748,729	341,382,285	-	-
2001	881,382,247	851,003,880	366,056,307	350,865,541	3,557,610,679	3,477,691,781
2002	922,616,242	893,751,448	388,893,632	374,932,207	4,036,296,924	3,956,507,899
2003	1,036,104,693	998,481,964	428,964,671	410,914,593	4,102,597,498	4,009,287,388
2004	1,236,605,771	1,185,276,693	488,492,802	464,795,438	4,191,284,536	4,083,674,037
2005	1,406,083,976	1,352,548,257	471,769,729	446,415,896	3,947,582,862	3,840,690,603
2006	1,659,178,128	1,606,215,227	541,520,907	516,278,520	4,456,653,965	4,338,062,202
2007	1,937,631,380	1,882,828,410	566,256,254	543,293,281	4,650,788,848	4,513,926,680
2008	2,250,967,811	2,182,788,657	614,485,751	588,490,815	5,019,208,788	4,864,443,130

1. 지방세 세목별 부과 및 징수 (계속)

(단위: 천원)

연 도	지역개발세		(경주)마관세		레저세	
	부과액	징수액	부과액	징수액	부과액	징수액
1966	-	-	17,321	13,780	-	-
1967	-	-	23,833	16,742	-	-
1968	-	-	116,636	97,262	-	-
1969	-	-	183,443	183,443	-	-
1970	-	-	248,141	248,141	-	-
1971	-	-	322,827	322,827	-	-
1972	-	-	362,689	362,689	-	-
1973	-	-	453,498	453,498	-	-
1974	-	-	746,278	746,278	-	-
1975	-	-	533,717	533,717	-	-
1976	-	-	667,069	667,069	-	-
1977	-	-	899,579	899,579	-	-
1978	-	-	1,512,589	1,512,589	-	-
1979	-	-	1,902,321	1,902,321	-	-
1980	-	-	2,703,095	2,703,095	-	-
1981	-	-	2,856,731	2,856,731	-	-
1982	-	-	4,052,113	4,052,113	-	-
1983	-	-	7,735,307	4,513,574	-	-
1984	-	-	12,331,373	5,427,741	-	-
1985	-	-	15,957,136	7,068,361	-	-
1986	-	-	9,411,644	9,411,644	-	-
*1987	-	-	11,821,806	11,821,806	-	-
1988	-	-	14,755,251	14,755,251	-	-
1989	-	-	19,532,904	19,532,904	-	-
1990	-	-	56,472,229	56,472,229	-	-
1991	-	-	80,106,314	80,106,314	-	-
1992	41,134,858	41,134,773	96,645,744	96,645,744	-	-
1993	49,935,240	49,858,541	98,422,988	98,422,988	-	-
1994	54,751,047	54,468,772	176,804,507	176,804,507	-	-
1995	61,196,842	61,095,409	216,960,422	216,960,422	-	-
1996	68,105,103	67,897,311	294,651,318	294,651,318	-	-
1997	70,931,859	70,771,041	360,647,554	360,647,554	-	-
1998	70,535,366	70,329,281	329,368,544	329,368,544	-	-
1999	76,292,071	76,040,606	393,596,681	393,596,681	-	-
2000	89,411,083	88,892,815	565,500,526	565,500,526	-	-
2001	86,429,822	86,070,444	-	-	790,850,303	790,850,303
2002	95,378,831	95,144,722	-	-	1,077,663,465	1,077,663,465
2003	103,841,462	103,381,910	-	-	895,907,089	895,907,089
2004	110,526,306	110,196,520	-	-	771,921,717	771,921,717
2005	110,067,927	109,651,274	-	-	691,875,119	691,875,119
2006	175,010,663	174,560,876	-	-	687,825,602	687,825,602
2007	100,346,329	99,952,436	-	-	864,331,930	864,331,930
2008	92,865,361	92,560,764	-	-	989,019,545	989,019,545

## 1. 지방세 세목별 부과 및 징수 &lt;계속&gt;

(단위: 천원)

연 도	토지과다보유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부과액	징수액	부과액	징수액	부과액	징수액
1966	-	-	-	-	-	-
1967	-	-	-	-	-	-
1968	-	-	-	-	-	-
1969	-	-	-	-	-	-
1970	-	-	-	-	-	-
1971	-	-	-	-	-	-
1972	-	-	-	-	-	-
1973	-	-	-	-	-	-
1974	-	-	-	-	-	-
1975	-	-	-	-	-	-
1976	-	-	-	-	-	-
1977	-	-	-	-	-	-
1978	-	-	-	-	-	-
1979	-	-	-	-	-	-
1980	-	-	-	-	-	-
1981	-	-	-	-	-	-
1982	-	-	-	-	-	-
1983	-	-	-	-	-	-
1984	-	-	-	-	-	-
1985	-	-	-	-	-	-
1986	-	-	-	-	-	-
*1987	-	-	-	-	-	-
1988	16,654,314	14,733,837	-	-	-	-
1989	27,327,058	24,433,884	-	-	-	-
1990	1,612,040	1,140,141	415,514,193	399,871,471	-	-
1991	-	-	533,290,316	518,178,872	-	-
1992	-	-	696,354,151	675,123,429	-	-
1993	-	-	870,991,580	842,396,380	-	-
1994	-	-	1,072,280,392	1,026,186,714	-	-
1995	-	-	1,318,894,324	1,254,267,442	-	-
1996	-	-	1,302,548,900	1,252,549,529	-	-
1997	-	-	1,346,450,242	1,279,424,774	-	-
1998	-	-	1,299,867,963	1,199,291,470	-	-
1999	-	-	1,330,224,685	1,242,088,227	-	-
2000	-	-	1,364,908,783	1,281,702,503	253,836,000	253,836,000
2001	-	-	1,425,023,468	1,364,985,787	541,996,724	541,996,724
2002	-	-	1,457,716,680	1,405,679,961	1,063,385,505	1,063,385,505
2003	-	-	1,665,008,816	1,602,613,332	1,265,787,682	1,265,787,657
2004	-	-	2,114,417,486	2,031,605,790	1,750,477,492	1,750,327,160
2005	-	-	4,431,551	1,934,049	2,292,532,452	2,292,514,722
2006	-	-	16,061,308	13,732,551	2,709,847,565	2,709,543,723
2007	-	-	6,310,160	5,250,484	3,270,322,832	3,270,163,325
2008	-	-	77,991	-70,792	3,081,364,446	3,081,150,058

1. 지방세 세목별 부과 및 징수

(단위: 천원)

연 도	담배소비(판매)세		국세부가세 및 기타		과년도수입	
	부과액	징수액	부과액	징수액	부과액	징수액
1966	-	-	4,507,587	4,281,101	-	-
1967	-	-	1,425,047	1,316,343	-	-
1968	-	-	170,864	122,243	-	-
1969	-	-	48,441	35,915	-	-
1970	-	-	2,199	1,662	-	-
1971	-	-	-	-	-	-
1972	-	-	-	-	-	-
1973	-	-	-	-	-	-
1974	-	-	-	-	-	-
1975	-	-	-	-	-	-
1976	-	-	-	-	-	-
1977	-	-	-	-	-	-
1978	-	-	-	-	-	-
1979	-	-	-	-	40,850,029	5,429,582
1980	-	-	-	-	49,004,737	6,151,011
1981	-	-	-	-	64,657,538	10,336,979
1982	-	-	-	-	76,688,344	11,804,102
1983	-	-	-	-	92,106,809	11,536,910
1984	-	-	-	-	125,359,218	16,200,956
1985	85,348,127	86,208,377	-	-	157,718,385	19,664,701
1986	89,292,413	89,292,413	-	-	162,872,020	18,149,772
*1987	93,861,182	93,861,182	-	-	189,683,770	25,068,165
1988	309,600,206	309,600,206	-	-	216,253,732	31,717,056
1989	1,412,994,438	1,412,994,438	-	-	237,228,097	34,805,500
1990	1,571,811,741	1,571,811,741	-	-	269,706,674	46,569,305
1991	1,646,865,340	1,646,865,340	-	-	330,647,864	57,434,350
1992	1,727,289,035	1,727,289,035	-	-	441,077,714	84,450,601
1993	1,745,427,007	1,745,426,655	-	-	612,100,932	148,181,281
1994	2,044,974,386	2,044,974,386	-	-	765,948,476	162,998,004
1995	2,151,851,491	2,151,851,437	-	-	1,025,479,176	198,037,437
1996	2,254,841,272	2,254,841,096	-	-	1,421,870,966	327,166,876
1997	2,236,489,334	2,236,489,334	-	-	1,679,142,025	339,699,339
1998	2,267,576,344	2,267,576,344	-	-	2,202,395,100	278,185,002
1999	2,088,244,397	2,088,244,397	-	-	3,100,886,673	504,383,043
2000	2,250,511,161	2,250,511,161	-	-	3,422,985,649	474,372,969
2001	2,508,559,931	2,508,559,931	-	-	3,567,226,542	565,084,259
2002	2,237,805,532	2,237,805,532	-	-	3,450,350,950	584,757,347
2003	2,384,360,737	2,384,360,737	-	-	3,399,972,113	532,002,584
2004	2,722,356,593	2,722,318,076	-	-	3,442,876,810	592,539,501
2005	2,447,918,552	2,447,918,377	-	-	3,357,251,908	633,182,379
2006	2,705,116,197	2,702,686,011	-	-	3,348,895,821	668,580,492
2007	2,761,177,077	2,761,009,669	-	-	3,331,684,693	672,418,672
2008	2,922,972,632	2,920,402,140	-	-	3,214,545,700	592,258,423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징연감』, 각 연도



각 언론매체에 보도된 한국조세연구원 관련 주요 기사내용입니다.

- 편집자 주 -

### “고용친화적 세제개편 절실”

조세연구원 “고용 늘리면 투자세액 공제혜택 줘야”

고용을 늘리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세 부담을 덜어주거나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 하자는 제안이 국책 연구기관에서 제시됐다.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2년의 조세정책 성과와 정책 과제’ 심포지엄에서 참석해 “(기업의) 고용 증가에 따라 세액 혹은 사회보장 기여금 부담을 경감”해주자는 방안을 내놓았다.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들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방안은 도입돼 있지만, 사회보장 기여금을 감면해주자는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전 실장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과 함께 고용능력 확충을 위한 기업경쟁력 강화 세제 개편이 중요한 과제”라며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연구원 쪽의 제안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도 고용친화적 세제를 만들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며 “올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이날 또 지난해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일종의 ‘근로장려금’인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 적용하자는 방안도 아울러 제시했다. 전 실장은 “서민지원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근로장려세제의 기능 확대 혹은 유사한 기능의 단기적 제도 신설 등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단기적인 방안과 아울러 장기적인 고용 확대 방안을 제시하며 “기업들의 노동 수요가 많은 부문으로 인력 공급을 높일 수 있도록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사회보장기여금 등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2010년 03월10일자〉

### 힘있는 ‘양도세 감면’ 연장 논리

전문가들 “효과 미미”... 미분양도 감소세  
 尹 장관 “아직 생각없는 편”... 연장 부정적

‘전국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택업계의 논리가 최근 빠르게 힘을 잃고 있다.

경제 수장이 연장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 데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감면 연장 효과가 미미하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계속 불어나던 미분양 아파트 수마저 올 들어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한국조세연구원 등에 따르면 주택업계가 지난해부터 연장을 촉구해온 양도세 감면을 놓고 정책효과에 대한 회의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미분양 해소 없이 세수 손실만 야기하고 조세원칙에 위배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최근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활하는 문제와 관련해 “아직은 생각이 없는 편”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윤 장관은 지난달에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발언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운 바 있지만, 당시에 “도움이 될지 의구스럽지만...”이란 단서를 달아 검토가 말 그대로 ‘검토’에 그칠 것이라는 의미를 담았었다.

양도세 감면 혜택이란 작년 2월12일부터 올해 2월11일 사이 계약된 신규 분양주택을 취득(입주) 후 5년 내에 되팔 때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양도세를 60% 감면해주고,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과 지방은 100% 면제해 주는 정책이다. 양도세 감면은 이전에도 1998년 5월22일~1999년 6월30일(1차), 2000년 11월1일~2001년 12월31일(2차), 2001년 5월23일~2002년 12월31일(3차) 등 세 번에 걸쳐 실시된 적이 있다.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양도세 감면 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1차 양도세 감면 기간 동안 전체 미분양 물량의 28%인 3만289가구가 감소한 것은 단지 주택 건설 인허가 감소에 따른 효과가 컸기 때문”이라며 “2, 3차 감면도 지방보다는 수도권 미분양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을 뿐이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2, 3차 감면 때 미분양 해소 물량은 지방이 1만5888가구에 그쳤고 수도권이 1만7439가구였다.

박 연구위원은 “현행 미분양 문제에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한계를 지닌 정부의 지원정책뿐 아니라 분양가 인하 등 주택사업자의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미분양 문제는 2006년부터 심각해졌으며 단기 대책으로는 효과가 미약하다”면서 “재정 건전성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효과도 크지 않은 조세 대책은 정부에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말했다.

특히 업계의 양도세 감면 혜택 연장 요구에 결정적으

로 힘이 빠진 계기는 올 들어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 수는 총 11만9039가구로 지난해 12월 말(12만3297가구) 대비 3.5%(4258가구) 줄었다.

(세계일보 경제 2010년 3월8일자)

### [사실] SOC에 핫돈 마구 쏟아붓는 한국

우리나라가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한 재정의 효율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많은 국민이 이 같은 조사결과에 공감할 것 같다.

조세연구원이 그제 내놓은 ‘재정의 효율성 측정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SOC와 환경보호, 공공질서와 안전, 보건, 복지, 교육, 공공행정, 연구개발 등 8개 분야 재정투자 효율성을 따져본 결과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보건 분야 효율성이 28개국 중 1위에 올랐다. 역시 우리나라가 가장 성공적인 공공의료 서비스제도를 갖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복지(2위)와 교육(3위), 공공행정(5위)에 들어간 나랏돈의 효율성도 상위권에 랭크됐다.

반면 SOC 분야는 26위에 머물렀다. 우리나라보다 점수가 낮은 곳은 헝가리와 폴란드 등 동유럽 2개국뿐이고 최근 재정위기에 빠진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등도 우리를 앞섰다.

조사 대상기간인 2000~2007년 정부가 SOC, 즉 도로 철도 항만 해운 산업단지 등에 퍼부은 돈은 국내총생산(GDP)의 5.6%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국민 1인당 SOC 지출 금액은 1086달러로 OECD 평균보다 258달러나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꼴찌 수준이니 SOC가 재정을 거덜낸다는 소리가 나올 만하다.

SOC 투자효율성이 낮은 이유는 주변을 둘러보면 알 수

있다. 비행기가 뜨지 않는 지방공항, 기계소리가 들리지 않는 산업단지, 차량 통행이 뜸한 지방도로, 특하면 교체하는 보도블록 등. 효율성보다 정치적 목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 이면에는 나랏돈을 공돈으로 여기는 관료들의 무신경이 자리하고 있는 탓이다. 사업 전의 타당성조사와 사업 집행 후의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국회에도 있다. 눈에 불을 켜고 나랏돈의 쓰임새를 따져야 할 국회가 당리당락에 치우쳐 싸움만 하고 예산심의는 뒷전으로 하다 보니 재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리가 없다.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부터 당장 상시기구로 바뀌어야 한다.

〈국민일보 경제 2010년 3월5일자〉

## 재정건전성 높이자 머리맞댄 정부·학계·전문가

### 정부…稅감면 연장 않는게 원칙, 민간…공기업 민영화 서둘러야

글로벌 금융위기에 맞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위기를 넘기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후유증은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재정적자(관리대상 수지 기준)는 국내총생산 대비 5%를 기록했다. 국가채무도 빠르게 늘어나 GDP 대비 35.6%로 늘었다. 5% 이상 성장을 이뤄내지 못하는 한 세입은 크게 늘어나기 어려운 여건이다. 이에 따라 세출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매일경제는 2일 윤경호 경제부장의 사회로 정부, 학계, 연구소 전문가들과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계실장은 “앞으로 시행 시한이 있는 비과세 감면 규정은 원칙적으로 일몰(시행 종료)시키

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향후 비과세·감면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세법개정안을 7월 말에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서 각종 비과세 감면 규정에 대한 일몰 연장여부가 결정된다.

윤 실장은 “지난해까지는 경기 부양 정책 때문에 비과세 감면 규정을 축소하는 데 제한이 많았지만 이제 정부 정책의 주안점은 재정건전성 확보”라고 강조했다. 윤 실장은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을 지난달 11일 예정대로 종료한 것과 노후차 교체 세제 지원을 지난해 말로 끝낸 것도 이런 정책적 목표 아래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고용 회복을 위해 도입한 고용증대 세액 공제 외에는 인적 세액 공제도 확대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재정적자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지적에 대해 윤 실장은 “지난해에는 경기 부양을 위한 특수한 요인이 있었기 때문이며 앞으로 3~4년간 차분히 시간을 갖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기준을 선진국에 두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전주성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선진국들의 국가채무 수준이 매우 안 좋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비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고 말하는 것은 준거 기준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이어 “재정 지출은 교과서식으로 쪼갬다가 줄이기 힘들다”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맞지만 그 사이 재정규율들이 약해진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재정 안정을 위한 공기업 개혁은 더욱 강조됐다. 임주영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공기업 선진화”라며 “감세를 강하게 추진하는 만큼 공공부분 구조개혁도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도 “불필요한 공공기관은 민영화해야 한다”며 “이렇게 해야 세외 수입도 생기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재정적자를

GDP 대비 2.7%로 억제한다고 하지만 공기업의 보증채무, 잠재채무까지 있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재정지출 총량제가 효과적인 방안으로 논의됐다.

원윤희 조세연구원장은 "스웨덴에서는 연초 경제 상황을 고려해 세출 총량을 정하고 20여 개 그룹별로 총량까지 정해서 세출 내용을 관리하며 이 기준은 국회에까지 구속력을 가진다"며 "총액배분 자율편성(톱 다운) 방식을 철저히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예산안 공식 서류로 제출되는 조세지출예산서에 정부의 기본 계획을 담겠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예산서는 비과세·감면·공제 등 원칙적으로 내야 하지만 정책적 감면조치에 따라 내지 않는 세금이나 직접적 예산지출과 같은 효과를 거두는 내역을 예산 서류에 첨부하는 것이다.

윤 실장은 "향후 세출 구조조정의 초점을 복지 전달 체계, 교육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서구 수준의 복지 수준의 재정 지원을 요구하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며 "복지 지출도 조세부담률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성장 잠재력 높이며 면일관된 감세정책 필요

'저출산·고령화 예산, 일자리 창출 예산, 교육 개혁 예산 등등...' 이명박 정부가 최근 들어 중점적으로 예산을 늘리기 시작한 분야다. 감세 기초를 내세운 정부로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이같이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예산까지 꾸려가야 하는 상황이다.

집권 3년차를 맞은 감세 철학이 전환점을 맞은 것이다.

임주영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난해까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이 닥치면서 기존 조세정책을 바꾸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면서도 "점차 재정압박이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감세를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이냐가 이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이어 "감세는 단기적인 재정적자를 각오하고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는 계속 밀고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무엇보다도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전주성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산권이기에 조세 개혁은 힘들므로 합리적인 청사진이 있어야 한다"며 "감세의 큰 틀은 나왔지만 이에 상응하는 조세구조와 지출구조의 조정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감세 기초가 궁극적으로 세수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감세 정책은 일정 시차를 두고 소비·투자 제고를 통해 경제 회복을 앞당기고 세입 여건을 개선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윤희 조세연구원장은 "그동안 (높은) 세율이 근로의욕이나 투자의욕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비과세 감면을 늘리는 등 왜곡시킨 부분이 있다"며 "감세는 전체적인 조세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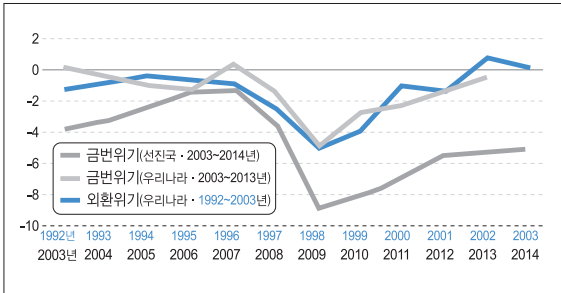
(매일경제신문 2010년 3월2일자)

## 다음번 글로벌위기 재정적자서 터지나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

### 외환위기와 재정수지 추이 비교

(단위: GDP 대비 재정수지, %)



2월 초 터진 그리스 재정적자 문제가 세계 경제에 복병으로 자리 잡으면서 금융시장에 계속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일부에서는 향후 금융위기는 과도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누적 등 정부 부문 부실 때문에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1월 14일 발표한 2010 글로벌리스크 보고서에서도 세계 경제에 또 한 차례 충격을 줄 수 있는 가장 시급한 위험 요소로 각국의 과도한 재정적자를 꼽은 바 있다.

#### ◆ 재정적자란

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 차이를 의미한다. 고대 중국에서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 수지가 마이너스, 즉 음수이면 회계장부에 붉은색으로 기록한 전통에 따라 재정지출이 재정수입을 초과하면 재정적자(赤字)가 발생했다고 말한다. 유의할 점은 재정 운영을 위해 모자라는 금액은 국채 발행을 통해 차입하게 된다.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재정적자 개념도 현실 경제에서 그 크기를 측정하고 이를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는 매우 주의해야 한다. 우선 재정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재정수지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 국내에서 재정수지라

고 하면 통상 중앙정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재정수지를 의미하는데, 외국에서는 지방정부까지를 포함한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 재정수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재정적자 규모를 외국과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재정수지를 추가로 감안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소폭 재정흑자를 보이고 있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 ◆ 한국 '안전지대'?

2009년 우리나라 통합재정수지는 22조원 적자, 관리대상수지는 51조원(GDP 대비 5.0%) 적자로 추정된다. 2008년 관리대상수지가 15조6000억원(GDP 대비 1.5%) 적자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1년 사이에 재정적자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GDP 대비 5.0%에 달하는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1998년 5.1%를 제외하고는 가장 큰 규모다.

최근 세계 각국 정부가 모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재정 악화를 겪고 있다. 2008년 9월 발생한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본격화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와 더불어 경기 부양과 금융 부문 지원을 위해 재정지출을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은 8.2%, 주요 20개국(G20) 평균은 7.9%, 이번에 문제가 된 그리스는 무려 12.7%에 달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5.0%에 그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재정적자가 일시적으로 급증한 것은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해 우리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성과도 있었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다만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한 지금부터라도 재정적자 규모를 대폭 줄여 나가야 한다. 우리 정부는 이미 2010년 예산안 편성 때부터 경기 회복 지원 외에 재정건전성 관리를 재정정책 목표로 설정하여 올해 관리대상수지 적자 규모를 지난해 절반 수준인 GDP 대비 2.7%로 대폭 줄인 바 있다. 이에 따라 OECD 국가 올해 평균인 8.3%나 G20 국

가 6.9%와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 재정적자의 양면성

어느 정도 재정적자를 용인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조세 수입은 감소하고 실업보험급여 등 정부 지출은 증가한다.

둘째, 세율을 인상하면 노동 공급이나 투자 등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사회에 비용을 발생시키는데 재정적자를 용인하면 이런 조세로 인한 경제왜곡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일시적인 재정 소요를 조달하기 위해 세율을 그때그때 인상하는 것보다는 국채를 발행해 세율을 상대적으로 안정화시킬 때 조세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를 경제학자들은 조세평준화(tax smoothing)라 부른다. 세율을 평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 재정적자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대규모 적자나 재정적자 장기 지속은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경기 침체나 전신과 같은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재정적자가 불가피하겠지만 경기가 회복되고 정쟁이 종료되면 재정수지를 흑자기조로 전환시켜야 한다. 국가부채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재정적자는 총저축 감소, 투자 감소, 무역적자로 이어진다. 장기적으로 이는 국민경제의 감소한 자본량과 증가된 대외부채를 의미한다.

반면 재정적자는 단지 현재 조세에 대한 미래 조세의 대체를 의미할 뿐이므로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주장도 있다.

◆ 전망

각국 정부가 이미 재정 부문 출구전략, 세출 조정과 세입 확충을 포함한 재정건전화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번 금융위기로 인한 재정적자 문제가 워낙 심각하여 이러한 정책들이 모두 성공을 거둔다고 하더라도 적자 규모를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리는 데는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이러한 고비를 넘더라도 재정과 관련한 진짜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GDP 대비 인구 고령화 관련 재정지출 규모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60년께 유럽연합(EU) 국가는 약 5%, 미국도 약 4~6%나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중장기적으로 예상되는 저출산·고령화로 지속적인 재정 소요 증가나 남북 통일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재정건전화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아야 한다.

〈매일경제신문 2010년 2월26일자〉

조세연구 “한국 적자성 채무 5년간 124조 증가”

정부가 국가채무를 적자성과 금융성 채무로 구분해 항목별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적자성 채무는 국민이 세금을 내서 실질적으로 갚아야 하는 부문이고, 금융성 채무는 외화자산 등 대외자산이 있어 상환 부담이 작은 항목이다.

이와 관련해 조세연구원은 2009~2013년 적자성 국가채무가 124조4000억원 늘어나기에 이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제출한 업무 보고 자료에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지출을 억제하고 세입 기반을 확충해 2013~2014년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면서 “국가채무도 항목별 특성에 맞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관리 방안은 국가재정전략회의 등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검토된다.

또 재정부는 공공기관별로 중장기 투자계획과 재무 전망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채무관리에 나선다.

특히 공기업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예산·경영평가 등 직·간접 관리 방안을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또 연내 국가채무통계 개편 작업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2012년부터 새롭게 사용할 계획이다.

한편 조세연구원은 2013년 국가채무는 493조4000억 원으로 2008년보다 184조4000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같은 기간 국가채무 가운데 적자성 부문은 124조 4000억원 증가해 2013년 257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매일경제 2010년 2월 17일〉

탄소세를 도입한다면 현행 세금과 별도로 세목(稅目)을 신설할 수도 있고 소득세 법인세 등 기존 세제의 세율을 조정해 도입할 수도 있다. 기존 세제를 손댄다면 현행 세법 체계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조세연구원은 지난해 5월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세 도입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유럽식 탄소세 체계를 도입하면 2007년 기준 9조1442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아일보 2010년 2월17일자〉

## 정부, 탄소세 도입 검토

정부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물질에 탄소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6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하지만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중장기 과제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근 조세연구원에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 세제 강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맡겼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문가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탄소세는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1990년 핀란드에서 처음 도입한 이후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이 비슷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10위권인 한국도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 감축하기로 정부가 방침을 정하면서 탄소세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 재정포럼

2010년 3월호 통권 제165호

-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발행인 /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 김승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김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원종학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전병힐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조명환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허경선 (한국조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장)  
최윤용 (한국조세연구원 주임연구위원)

## ■ 월간 재정포럼

2010년 3월 15일 발행 / 제15권 제3호(통권 제165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송파라00035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죽말길 28  
TEL : 02)2186-2130 · 3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선 디자인 02)2269-2234
- 인쇄 / 고려문화사 02)2277-1509

##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시 두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해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 (02)2186-2133
- FAX : (02)2186-2139
- E-mail : pub@kipf.re.kr
- 주소 :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죽말길 28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

###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 441-05-000011  
· 예금주 : 한국조세연구원